

발 간 등 록 번 호

ISBN 979-11-86957-04-2

K o r e a F o u n d a t i o n f o r P e r s o n s w i t h D i s a b i l i t i e s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주최:  한국장애인재단

후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와 장애개념의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서 숙지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강의 스킬과 강의 시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통합교재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장애는 다름이며, 다름은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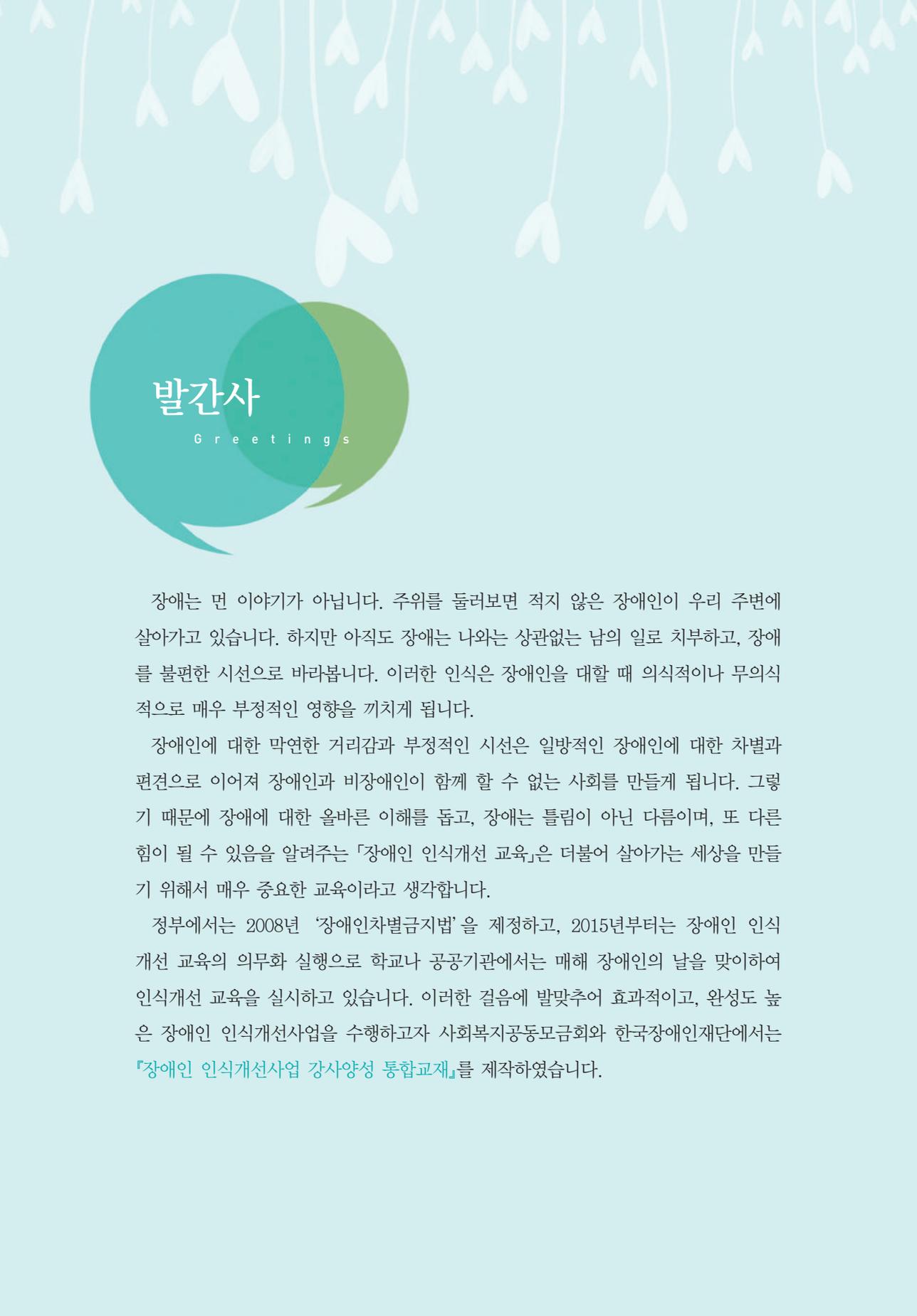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주최:  한국장애인재단

후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발간사

G r e e t i n g s

장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적지 않은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장애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대할 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과 부정적인 시선은 일방적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이며,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 실행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는 매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음에 발맞추어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장애인재단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장애가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와 장애개념의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서 숙지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강의 스킬과 강의 시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통합교재가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개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교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통합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편찬위원분들과 감수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 성 규

# CONTENTS



## 역량강화

- |        |                 |   |
|--------|-----------------|---|
| 009_1장 | 오리엔테이션          | <b>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인권의 중요성</b><br>/ 권선진(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 027_2장 | 장애 바로알기 I       | <b>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 및 올바른 매너</b><br>/ 최혜영(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
| 049_3장 | 장애 바로알기 II      | <b>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b><br>/ 성명진(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 067_4장 | 장애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 | <b>자기결정권, 소비자주의, 자립생활 등에 대하여</b><br>/ 이채식(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 105_5장 | 장애인 관련 법률 바로 알기 | <b>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b><br>/ 윤삼호(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
| 125_6장 | 편견과 차별          | <b>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b><br>/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 155_7장 |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 <b>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에 대하여</b><br>/ 이석규(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



## 자질함양

- |        |            |   |
|--------|------------|---|
| 173_8장 | 자질 함양 소양교육 | <b>장애인 인권 강사의 자질과 자세</b><br>/ 서인환(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
|--------|------------|---|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강의 스킬 및 강의 시연

191_9장	교육 방법의 이해 I	<b>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대상별 교육활동 계획하기</b> / 황정현(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211_10장	교육 방법의 이해 II	<b>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제</b> / 황정현(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227_11장	이미지 메이킹	<b>강사로서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 방법</b> / 최미영(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243_12장	스피치 교육	<b>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b> / 최미영(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257_13장	프레젠테이션 구성방법 I	<b>파워포인트 활용방법 습득(기초)</b> / 김성남((주)샘스토리 대표이사)
277_14장	프레젠테이션 구성방법 II	<b>파워포인트 활용방법 습득(심화)</b> / 김성남((주)샘스토리 대표이사)
301_15장	총정리	<b>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을 위한 통합교재 이해와 자기평가 및 자기성찰</b> / 성명진(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313_부록	교안샘플	<b>직접 교안을 제작해 시연 및 피드백</b> / 황정현(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강의평가지	<b>평가위원단을 통한 강의 실습 및 평가</b> / 최혜영(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한국장애인재단 소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편찬에 힘써주신 분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 단체 소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장  
오리엔테이션

#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인권의 중요성

권 선 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제1장\_오리엔테이션

#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인권의 중요성

권 선 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

### 01 / 장애인과 인식개선

장애차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동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국가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복지 대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차별해소와 인식개선이지만 이 과제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장애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인식의 전환이 없이 복지, 고용, 교육 등의 시책만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통합 사회로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유무 등에 따라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이다. 장애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이들의 교육과 사회통합 및 직업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학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내용 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장애를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막연한 거리감 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직장, 사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례 학습으로 현장감과 사실감 부여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은 장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여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김성희 외 2015).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주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 02 /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대상에서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시행령 제16조)에서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 있는 용어의 변경과 인식개선 교육 의무실시 대상기관을 정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결과제출 방법을 정하여 인식개선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유엔에서 개최된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통과되었다. 장애차별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장애차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편견의 제거를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awareness-raising)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sup>1)</sup>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제1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의 a). 또한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을 근절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의 b).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명시하였다(제1항의 c).

이와 함께 당사국들이 앞서 언급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적 인식개선 증진,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의 a). 또한 당사국에 대하여 유아기를 포함한 모든 아동을 망라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고(제2항의 b)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묘사하

1)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에서 인식제고 조치(measures to raise awareness)란 당사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방송매체, 신문, 인쇄매체 등을 통한 인식제고 홍보 등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고등과정 단계까지의 교육 과정, 일반 대중 및 장애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를 위한 인식개선훈련 등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도록 모든 대중매체에 권장하도록 하였다(제2항의 c). 아울러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관련프로그램의 장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제2항의 d).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법적 실효성 확보,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교육콘텐츠 차별화는 핵심적인 방안들이 될 수 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청소년, 중·장년 등과 직업에 따라서도 공무원과 민간 등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개선의 방법에 있어서도 집합교육, 장애체험, 영화나 방송 등 언론과 같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결국 대상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에 있어 인식개선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이해 교육이나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이 ‘불쌍하다,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보다는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할 공동의 책임임을 알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즉, 장애가 부각되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인식개선 교육과 체험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동에게는 인형, 극, 동화책 등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보조기기 체험을 통해 주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거나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캠프나 문화공연도 효과적일 수 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식교육도 필요하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사례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목적 및 대상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는 인식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거나 인식개선의 결과들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애인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방송 등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 동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등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인식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인식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기관 간에 연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단체, 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남용현 외, 2011). 실제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사업은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로 연계와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의 양성과 교재나 매뉴얼도 다양화되어 있다.

결국 장애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편견은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 공공기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나 따돌림이 행해지는 학교,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조건의 입장을 거부하는 극장이나 공연장 등의 상황도 결국 근본적 원인은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를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달라지고는 있으나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사회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들이 인식개선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인권에 대한 이해

### 01 /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은 봉건사회의 몰락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측면과 17~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천부적 권리라는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최고선으로만 기술되는 정태적 개념이 아니며, 시대 상황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고 진화하는 역동적 개념이다(Ife, 2000). 그러므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매우 다양하며,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인권 개념에 차이가 있다.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천부적 권리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평등할 권리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고 시대와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인권의 내용과 실천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김중섭, 2001; 이봉철, 2001; Sweet, 2003; 이창수 외, 2005). 또 다른 인권에 대한 관점은 자연법적 전통에 따른 천부적 권리로써의 인권 개념이 지니는 모호함을 비판하면서, 인권관련 헌장, 선언, 국제규약, 헌법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로만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Sweet, 2003). 이와 같이 인권 개념은 학자마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인간이 지닌 권리’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을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

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센터(2005)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인권을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 02 / 인권의 역사

인권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인류는 험난한 여정을 겪었다. 노예제와 신분제가 존재하던 고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개념은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사상은 오래전부터 싹터왔지만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된 역사는 18세기 말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시민'은 일정한 재산을 갖고 세금을 납부하는 남성에 한정되었다. 여성과 장애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 아닌 그저 '인간'이었다. 이들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투표권과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인권이 한층 구체적인 보편적 권리로 격상된 시기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유럽에서 500만 명의 무고한 희생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5,500만 명의 희생을 가져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등 홀로코스트와 인종청소(제노사이드)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전쟁의 참상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목격한 인류는 1945년 국제연합(UN)을 결성하고 이

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 결과 1948년 인류가 맺은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작성된 국제인권문서와 규약, 그 정신을 수용한 각국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인권의 기초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b).

이와 같은 인권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인권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확장되었다. 노예제, 신분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새로운 평등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꿈꿀 때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인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당시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결국은 이뤄졌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민혁명, 노예제 폐지, 여성차별 철폐 등 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 한계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수없이 좌절했지만 결국엔 긍정적 변화를 일궈냈다. 장애인 탈시설화,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일도 결국엔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의 역사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려는 우리 한 사람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 써나간 이야기이며,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4b).

### 03 / 인권의 원칙

인권은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사회적 개념이다. 오늘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모든 인권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국가와 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권의 이상과 현실에는 큰 간격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필연적으로 현실 비판적일 수 있고 사회변화

를 이끌어가는 힘과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인권은 수많은 사람이 존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인류가 힘겹게 싸워서 얻어낸 열매다.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류 모두가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연대와 같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의 권리가 부딪치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혼란과 긴장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면 나침반 역할을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이러한 나침반 역할을 할 인권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박숙경 외, 2011).

### 1) 보편성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주인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각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인종,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편성이란 모든 사람이 비슷해 져야 한다거나 동일한 존재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처우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과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기본성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인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행동을 한 경우 처벌을 받기’로 시설 이용인과 사전 동의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처벌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대우할 권리는 개인이 양도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3) 상호 불가분성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은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열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

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유와 빵, 즉 자유권과 사회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불가분(indivisibility)의 권리이다.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되, 선별적으로 어떤 인권을 부인하거나,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서열을 매겨 특정 영역의 인권을 보다 더 중요하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 4) 법 우선성의 원칙

인권은 법률 및 관습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인권에 위배되는 법률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 법률에 의한 권력의 횡포를 막고 독립성을 유지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준을 높이려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속성이다. 즉, 인권은 도덕적 권리로서 실정법상의 권리 이상의 것이다. 즉, 인권은 도덕적 특성이 갖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현행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와 법을 초월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사회 제도와 법 제도는 정당화되는 반면 인권 기준에 반하는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인권이 제공해준다.

#### 5) 상호 의존성의 원칙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는 한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다. 존재가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기에 당연히 여러 권리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가 무너질 때 침묵해서도 안 된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표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에 침묵한다면 다른 집단을 겨누었던 화살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오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 04 / 인권의 영역과 내용

인권은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갖는 것으로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과 법률로 정한 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 1) 국제인권장전과 인권 목록

다음은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인권 관련 문서와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 목록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4b).

### 인권 관련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

- 마그나카르타(1215)
- 권리청원(1628)
- 인신보호법(1679)
- 미국의 독립선언(1776)
-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인권선언, 1789)
- 바이마르헌법(1919)
- 유엔헌장(1945)
- 세계인권선언(1948)
-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1948)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

이 중 현대 인권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문서는 ‘국제인권장전’이다. 국제인권장전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48개 국제인권장전 초안’을 근거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두 개의 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국제인권장전을 토대로 여성, 아동, 이주민, 장애인등의 권리를 담은 국제권리협약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 예를 들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인권장전에 담긴 권리 목록을 장애인의 상황에 맞도록 더 구체화하고 상세화한 것이다.

인권 개념의 포괄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인권의 영역과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야만 인권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살펴본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근거로 보면, 인권의 영역은 인간의 존엄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라는 영역과 이러한 영역의 인권이 침해받을 경우 이를 회복,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법 절차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제인권장전에 나타난 인권의 영역과 항목

영역	하위영역	세부항목
인간의 존엄에 관한 권리	인간의 존엄권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노예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 권리	시민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명예·명성·정보통신·통신·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 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정치적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 정보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안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 포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권리	사회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 향유권,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적 권리	가족형성권,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함)
	문화적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 포함), 인권 질서 추구권
법 절차적 권리	법 절차적 권리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자료: 이창수 외 (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 인권의 발달

인권의 개념은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억압에 저항한다는 소극적 단계, 인간의 욕구충족과 자원의 생산에 관한 배분의 권리를 긍정하는 적극적 단계, 그리고 전체 인류를 위한 합법적이며 보편적 욕구인 평화와 발전에 대한 권리와 파괴로부터 보호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의 집합적 권리의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개념의 발달과정은 제1

세대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은 연대권으로 정리된다(이창수 외, 2005; 김미옥 외, 2006; Ife, 2000; Wronka, 1992).

### (1) 1세대 인권: 시민권과 정치권

1세대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항목이 주로 해당된다. 1세대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들을 살펴보면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노예나 비자발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12조),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의견·표현의 자유(19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구체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체결되어 있다. 1세대 인권은 소극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즉, 1세대 인권은 인권침해의 예방과 권리의 보호 또는 방어에 중점을 둔다.

### (2) 2세대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세대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항목이 해당된다. 2세대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23조),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27조) 등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체결되어 있다.

1세대 인권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바꾸려하지는 않았으며, 그 결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아동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인권상황이 지속되었다. 즉, 자유는 확보했지만,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물

질적 토대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 개념과 이에 대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2세대 인권은 국가가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로 불린다. 국가는 1세대 인권처럼 단지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며, 사회·경제·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Ife, 2000;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 (3) 3세대 인권: 연대의 권리

3세대 인권은 개인과 국가가 함께 연대하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는 집합적 권리로서 현재 형성단계에 있는 권리이다. 제3세계 국가들과 중심부 국가들 간에 양극화하고 있는 국가 간 빈부격차, 국제 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위기 등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간과 지구 공동체 간의 관계 안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다. 발전의 권리, 평화적 생존권, 선주민의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3세대 인권은 1세대와 2세대 인권이 개인적 수준의 권리라고 한다면 3세대 인권은 집단적 수준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Ife, 2000). 이런 점에서 집단권 또는 연대권으로 불리는 3세대 인권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으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자결권,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주 자원·과학·기술·정보의 발전 결과와 문화적 전통·유적·기념물 등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김미옥 외, 2006).

## 05 / 인권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

인권이 실현되려면 인권을 존중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의무 주체가 없는 인권은 단순한 권리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인권 실현의 일차

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 더불어 인권을 가진 모든 '개인' 역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b).

## 1)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국가가 각 권리의 구성 요소를 입법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으로 드러내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런 국가의 의무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최소 핵심의무는 국가의 가용 자원의 양 혹은 다른 어떤 요소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식량, 기초 의료, 기본적인 주거와 초등교육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거권의 경우에는 강제 철거로부터의 보호 등이 해당된다(류은숙, 2012).

둘째,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직접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누리는 데 방해요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사상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고문을 행하는 등 직접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를 꾀하는 법을 만들어 노동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데 방해 요소를 만드는 행위 등도 고의적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셋째, 보호의 의무는 국가가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 고리대금업자가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일,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제도와 장애인인권센터 구축 등은 이러한 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다.

넷째, 실현의 의무는 국가가 인권의 실현과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급여와 보험 제도를 통해 필수적인 기초 건강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주거 취약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를

제공하는 등 입법, 행정, 사법 조치를 통해 인권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인권 실현을 위한 개인의 책임

### (1) 인권의 학습

자신의 인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흔히 인권은 그저 느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인권의 의미와 속성, 인간의 고유성과 평등함을 부정하는 이데올로기의 폐해, 피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 대안적인 접근들에 대한 탐구 없이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면 인권을 오해할 소지가 높다.

### (2) 인권감수성의 제고

인권감수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인간관계와 관행, 제도 등을 인권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감성을 의미한다. 일상과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상대적 약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슴으로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

### (3) 실천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인간관계와 관행, 제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인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권은 그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의 결과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 얻어낸 역사적 성과이다.



##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4).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 국가인권위원회 (2014a). **노인 인권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 (2014b). **장애인 인권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김미옥 · 정진경 · 김희성 · 최영식 · 윤덕찬 (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성희 · 이연희 · 황주희 · 오미애 · 이민경 · 이난희 · 강동욱 · 권선진 · 오혜경 · 윤상용 · 이선우 (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중섭 (2001).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서울: 오름.
- 남용현 · 윤경인 · 홍자영 · 정광진 (201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류은숙(2009). "인권의 이해"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참고교재( 1 )**. 9-33.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 류은숙 (2012).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 **인권오름** 2012.9.12.
- 박숙경 (2005). "장애와 인권" . 인권법. 인권법편집위원회.
- 박숙경 · 류은숙 · 이형남 (2011). **장애인인권향상가이드북**. 서울복지재단.
- 박승희 · 우충완 · 박지연 · 김원영 역 (2016). **장애란 무엇인가? 학지사**.
- 안효철 (2011).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이창수 외 (2005). **인권관련 정부 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3). **하반기 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자료집**.
- 한국DPI · 대구DPI (2014). **2014년 대구경북센터 장애인인권강사 양성교육자료집**.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3). **2013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기본) 워크숍 자료집**.
- Ife, J. (2000).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fe, J. (2006). *Human rights and human servic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 · 확산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3-43.
- Sweet, W. (2003). *Philosophical theory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v. of Ottawa Press.
- UN Center for Human Rights (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혜원 역)**. 서울: 학지사
- Wronka, J. (1992).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in the 21th century*. Md.: Univ Press of America.

제2장  
장애 바로알기 I

# 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 및 올바른 매너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 제2장\_장애 바로알기 I

# 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 및 올바른 매너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전 세계에는 피부색, 생김새,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약 5,000만 명 중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이 다르고 각각의 문화, 개성과 특성을 가진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이 넘는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 있고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 것처럼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와 편견, 서로간의 이해 부족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가 힘들고 불편하며 장애 때문에 능력까지 무시하는 시선에서 장애를 그냥 사람들마다 가지는 특징이 있는 사람, 예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은 걷는 방법이 다른 사람, 시각장애인은 보는 방법이 다른 사람, 청각장애인은 듣는 방법이 다른 사람처럼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시선을 바꾼다면 장애가 아닌 또 다른 개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3)<sup>1)</sup>을 수정 보완하여 장애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매너를 알아보려고 한다.

1)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 2013년 안전행정부 지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기관의 승인 후 본 교육 자료를 제작 함.



## 장애유형의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을 규정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표1>과 같이 15가지 유형의 장애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애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며, 신체적 장애는 다시 겉으로 보이는 외부신체적 기능장애와 내부신체적 기능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표1> 장애복지법상 장애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적 기능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신체적 기능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 III

# 장애유형별 이해

## 01 / 지체장애인의 이해



### 1) 정의

팔, 다리와 몸통에 생긴 큰 상처나 변형, 절단,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운동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장애를 말한다.

지체장애인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관절장애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지체장애의 유형으로는 소아마비, 척수마비, 절단, 관절염, 근육병 등이 있다. 현재 소아마비 장애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2) 특성

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 운동기능장애와 감각장애 증세가 나타나며, 운동장애는 근육이나 관절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마비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부분 근력이 약해지거나 위축,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체장애 원인은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며 선천적 보다는 후천적 원인이 95%를 차지한다.

### 3) 매너

(1)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조기기는 항상 장애인 옆에 나누세요.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목발, 의족, 의수 등의 보조기기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이다.)

(2) 지체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저신장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는 자세를 낮추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

(장애인주차장,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4) 지체장애인과 식사를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할 때는 꼭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을 확인한다.

(경사도가 없거나 식탁이 없는 음식점은 지체장애인에게는 너무 힘들다.)

(5) 지체장애인이 도움을 요청 할 때는 요청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동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보다 요청자의 도움 방법을 물어 의견을 존중한다.)



## 02 /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

### 1) 정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이다.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능력 평가로 이루어진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뇌병변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

### 2) 특성

뇌졸중은 편마비,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뇌성마비는 마비의 특성에 따라 경련형, 불수의 운동형, 경직형, 운동실조형, 진전형 등으로 분류한다.<sup>2)</sup>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즉, 미성숙한 뇌에 출생 시 또는 출생 후의 여러 원인인자에 의해 비진행성 병변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게 되는 임상군을 말하며, 일부 임상적 유형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게 된다.

2) 이채식 외(2013),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뇌성마비의 원인은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하나 이상의 원인인자를 가진 다인성으로 나타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0%가량이나 된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산전 인자(prenatal factors), 아기가 태어날 때 발생하는 주산기 인자(perinatal factors), 산후 인자(postnatal factors)가 있으며, 이중 약 3분의 2는 산전 인자와 주산기 인자가 원인인 경우이다. 이 중 조산에 의한 미숙아가 뇌성마비 발생 원인의 단일 인자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전 인자는 태어나기 전에 모체 태내에서 아기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이로 인해 조산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숙아에서 흔히 보이는 허혈성 뇌병증은 뇌실 주변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을 초래하기 쉬워 뇌실 주변의 하지를 지배하는 피질척수로의 손상으로 하지에 경직성 양측마비가 올 수가 있다. 주산기 인자로는 핵 황달, 저산소증 등이 있다. 산후 인자는 대략 원인의 7% 가량을 차지하며, 황달, 독성 물질에 의한 노출, 두부 외상, 감염(뇌염, 뇌막염), 뇌종양 등이 있다.<sup>3)</sup>

### 3) 매너<sup>4)</sup>

- (1)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에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고 다시 물어 상대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질문으로 상대의 의사를 파악하거나 필답이 가능할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 (2) 어떤 장애인인 휠체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작은 흔들림에도 미끄러워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받이 쪽으로 수시로 몸을 끌어당겨 주거나 허리 조임 벨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휠체어에 앉는 자세는 장애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 본다.
- (3)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뇌성마비인 중에서 옆에서 부축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되거나, 승·하차를 하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부축해서 걷게 할 경우, 어느 쪽 발을 먼저 내딛는지를 물어 본다. 남성이 여성 장애인을 부축할 경우 겨드랑이에 끼운 손이 가슴 부위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

3) 네이버 지식백과(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4)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의 뇌성마비인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야 한다. 대부분의 뇌성마비인은 피부 감각이나 신체 감각에 이상이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4) 손의 흔들림 때문에 혼자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숟가락을 잡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리 허락을 받아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다. 손 근육의 경련으로 인해 음식을 흘리거나 입가에 묻히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무시하듯 바라보지 않도록 하고 휴지 등을 사용하여 닦아준다.(휴지를 미리 탁자에 준비해 두거나 접시를 받쳐 준다).
- (5)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흔히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발음에 곤란을 느끼고, 목, 사지, 안면근육의 경직이 심해진다. 친절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첫 대면 시에는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 (6) 안면근육의 경직 등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이 미진하고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때문에도 어리게 느낄 수가 있다. 이 또한 뇌성마비인들이 남모르게 겪는 괴로움이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존중하는 태도로서 반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 >> 지체, 뇌병변장애인의 보조기기



목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03 / 시각장애인의 이해

### 1) 정의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된 것을 말한다.

### 2) 특성

시각장애인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기구를 사용하여도 물체, 색깔, 형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책이나 신문을 코앞에 두고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형광등이나 전구 불빛에 아주 민감하여 주위 물체나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다. 한 겨울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안경에 김이 서려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사람이면 누구나 오감이라 불리는 다섯 가지 신체감각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중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네 가지 감각이 발달한 경우가 많다.

청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귀로 작은 소리, 세밀한 소리, 특정 소리 등을 잘 듣고 청각 능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들 중 다수가 가수, 연주자, 작곡가 등으로 일하고 있다.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은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면 눈으로 보는 것만큼 물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울룩불룩 튀어나온 점자를 읽을 수도 있다.



촉각을 이용하여 점자 점역사 혹은 안마사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 3) 매너

-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흰지팡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 (2)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때 갑자기 흰지팡이나 옷자락을 잡아끌거나 어깨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깜작 놀라서 넘어질 수 있다.

(3) 안내견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거나 쓰다듬고 과자 같은 음식물을 주면 안 된다.

(4)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지팡이나 안내견은 눈과 같은 거라서 함부로 남의 눈을 만지면 안 된다.

(5)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다. 음성보조기구가 많아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점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6) 시각장애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시각장애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



#### 4) 보조기기

흰지팡이:

- 지팡이는 고대부터 시각장애인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보조기구이다.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지체장애인이거나 노인의 보행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와 구별되고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흰지팡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안내견:

-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똑똑한 개이다.
- 아무런 개나, 강아지가 안내견이 될 수는 없고 고도로 훈련을 받은 개만 안내견이 될 수 있다.



화면독서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독서프로그램이 화면을 읽어준다.
- 학교나 회사에서 자주하는 문서작업, 인터넷검색, 전자메일 교환 등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보조프로그램이다.

**전자문서변환 프로그램:**

- PDF와 같은 전자문서는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화면독서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읽는 것이 어렵다. 문서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런 이미지화된 문서를 읽을 수 있다.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점자로 읽는다.
- 과거에 종이를 사용하여 점자를 읽을 때보다 훨씬 편리하게 점자를 읽을 수 있다.



**04 / 청각·언어장애인의 이해**

**1) 정의**

청각장애는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로 연결되어지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8만명의 농인(청각·언어장애인, 이하 농인)이 등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음성언어만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인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농인은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사회 환경이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수용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교육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청각장애인은 개개인의 청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어느 정도 청취가 가능한 사람도 있고 단순히 소리만 인지할 뿐 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농인과 대화를 할 때는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청각적 정보수용이 개인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습득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농인은 한국어를 듣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에 대한 이해력이나 문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법적용어는 청각장애인으로 표기하며, 농인들은 음성언어 사용자를 청인이라고 표현한다.

## 2) 특성

농인은 농문화라고 하는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청인은 박수를 치지만 농인은 손을 들어 반짝이는 것으로 상대를 환영하거나 축하의 의미를 전달한다. 청인은 소리나는 박수, 농인은 반짝이는 박수, 이것이 양문화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농문화를 향유하며 삶을 풍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농인은 두 개의 이름이 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농인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수어이름이다. 농인들은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게 되므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개성 등을 활용하여 수어이름을 짓는다. 농인이 아니어도 농인과 함께 하는 수어통역사나 유명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맨 등 농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사람들도 수어이름이 있다.

언어는 환경에 의해 지배당한다. 스쿠버를 하는 청인들이 바다 밑에서 수신호를 통해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농인은 자유롭게 수어로 소통할 수 있다. 장애를 규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인식'이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수어는 농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듣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언어와 달리 보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시각적인 경험으로 이 세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농인의 삶의 양식과 문화 그리고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수어는 시각적인 언어이므로 손동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대화하게 된다.

수어는 한국어 어순에 따라 수어로 변환하는 형식이 절대 아니며 독자적인 언어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에 대한 이해는 문화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수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농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수어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역사적, 지리적 연관성 등으로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매너

(1) 수어를 모르는 농인은 대부분 글로 대화를 나누거나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입모양을 보고 정확한 대화가 가능한 농아인은 소수다. 입모양을 보고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표준어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 (2) 글로 대화를 나눌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
- (3) 농인이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동안 청인과의 소통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 농인이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그 농인이 사용하는 가장 명확한 소통방법으로 대화해야 한다.
- (4) 간혹 어떤 분들은 악의적이지는 않으나 농인이 듣지 못한다고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이다.
- (5) 농인과 함께 일을 할 때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전달사항을 농인에게 잘 전달 해주어야 한다.
- (6) 농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청인들끼리 대화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다.

#### 4) 보조기기

보청기		소리를 증폭하여 손실된 청력을 보조해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기구.
시각신호 표시기		초인종이나 전화소리 등 기존의 청각정보를 시각정보로 변환해주는 장치 벨을 누르거나 전화가 오면 시각신호 표시기가 반짝거린다.
진동 알람시계		소리의 활용이 어려운 농인에게 알람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시계

## 05 /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 1) 정의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대사 장애, 두뇌의 손상, 유행물질 및 약물 오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염색체 이상은 다운증후군, 프래더윌리 증후군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016.2.3.), 시행(2016.6.23.)」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특성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기본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가진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주의력에 많은 결함을 보이는데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자극들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억력에도 어려움이 보이는데 장기기억은 비장애인들과 비슷하나 단기기억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언어발달 면에서는 언어발달 속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된다.

#### ■ 지적장애인의 오해와 편견

-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장애는 대부분 지능지수(Q)가 낮다. 그러나 IQ라고 하는 것은 지적능력, 쉽게 말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데는 이용될 수는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IQ가 높다고 해서 운동도 잘 할 것이고, 노래도 잘 할 것이며, 예외범절도 깰듯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지적장애가 정신장애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장애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정신장애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 지적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체적 능력이나 감정, 창의력, 도덕성 등도 반드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지적장애인의 성적(性的)발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지적장애는 모두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유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대체로 2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장애 발생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지적장애는 유전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오해이기도 하다.
- 지적장애인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완화될 수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저절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 특히 발달 초기에는 뇌기능이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달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렵다. 가족 중 지적장애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곳저곳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 지적장애아동들도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장애아동들도 사회에 나아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서의 교육과 훈련단계에서 부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는 '차이' 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 지적장애 부분 인용문

### 3) 매너

- (1) 지적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이다. 이웃을 대하듯이 거리낌 없이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한다.
- (2) 지적장애인은 괴상한 사람이나 정신 분열증 환자가 아니다.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흘깃흘깃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3) 한자리에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있는 아동, 혼자서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정한 표현으로 아동에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그들이 가정이나 학교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 (4) 지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의 능력에 맞게 단순화시키거나 세

분하여 반복 연습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지지한다.

- (5)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도록 한다.

## 06 / 자폐성장장애인의 이해

### 1) 정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주로 출생 전, 출생 중, 출생 후에 야기되는 두뇌의 역기능이나 생화학적 역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 2) 특성

자폐성장장애인은 일차적으로 정서, 지각, 언어, 인지 및 정신적 영역에서 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폐성장장애인은 기능적인 언어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들의 언어적 특성은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를 사용한다. 사람과의 눈 맞춤의 결여, 주위 사람들과의 빈약한 애착형성, 특정한 사물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기보다는 고립된 행동을 하며 혼자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 ■ 자폐성장장애인의 오해와 편견

- 자폐성장장애는 정신 질환의 일종이 아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자폐증과 정신 분열증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면, 자폐증은 출생 시 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 분열증은 정상적인 발달 중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은 변화를 싫어하고 동일성을 고집하지만, 정신분열증은 그렇지 않다. 이 밖에도 정신분열증은 가끔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폐성장장애인은 그렇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자폐증을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자폐성장애인 중 기계적인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자폐성장애인들 가운데는 오래 전의 것이나 과거의 특정한 날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이들이 있다. 또한 어떤 자폐성장애인은 처음 들은 곡을 곧바로 정확히 연주하는 등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자폐성장애인이 그렇지는 않다.
- 자폐성장애인은 유전이 아니다.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자폐증이 유전이라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 보다는 환경의 문제나 중추신경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폐증은 생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 그래서 흔히 선천적 장애로 여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천적 장애라는 말이 곧 유전적 장애를 뜻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해 중의 하나이다.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이해사이트 지적장애 부분 인용문

### 3) 매너

아래의 행동들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자폐성장애의 특징으로 이해 하며 나쁜 시선으로 보서는 안 된다.

- (1) 자폐성장애인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변화를 매우 싫어하는, 동일성(同一性)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다.
- (2) 자폐성장애인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맨손으로 혹은 병뚜껑 따위의 하찮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돌리는 행동에 몰두하기도 한다.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머리카락을 뽑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는 등 위험한 자해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 III

## 다름의 힘을 보여준 사람들

### 소아마비 장애 :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은 1882년 미국의 뉴욕 주에서 태어났다. 대부분의 소아마비장애인들이 어린 시절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예외로 삼십대 후반에 수영을 하다가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다. 이후 뉴욕주지사에 당선되고 이후 제32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후 4선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1945년 뇌출혈로 사망했고,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 정책으로 미국인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다.



### 척수장애 : 이상목교수



1962년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와 미국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서울대 학생들과 미국 지질조사를 갔다가 차량전복사고가 일어났다.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가 되었으나 이후 6개월 만에 강단으로 돌아왔다. 다리와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입김으로 작동하는 마우스를 쓰고 턱과 뺨으로 동작하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 하며, 음성인식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 척수장애 : 김규대선수

1984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2004년 해군특수부대 지원 합격하여 멋진 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해 낙하산 강화훈련 중 낙하산이 퍼지지 않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척수장애인



이 되었다. 병원 입원 중에 TV를 보다 손으로 만 휠체어를 밀고 마라톤 하는 것을 보면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퇴원 하자마자 장애인육상연맹에 연락하여 휠체어 육상을 배웠고, 피나는 훈련과 노력 끝에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육상휠체어 400m 계주 동메달, 런던 장애인올림픽 1500m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3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역사상 한국인 최초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써냈다.



### 신체변형장애 : 닉 부이치치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태어나 출생당시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며, 양팔과 다리가 없었고, 두 개의 작은 발이 달려 있었는데 한쪽 발만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공립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던 중 법이 바뀌면서 닉은 신 체장애를 가진 첫 번째의 공립학교 학생이 되었으며, 재활보조공학기기를 이용 왼쪽 발에 있는 두발가락을 이용해 글씨를 쓸 수 있고, 발뒷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서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사람들에게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행복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 시각장애 : 이창훈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 훼손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시력을 잃은 대신 청각과 기억력이 발달, 언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 최초 장애인 뉴스앵커로 발탁되었다. ‘장애인이 아닌 열정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시청자들에게 옆집 사는 청년 같은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의 앵커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뉴스진행을 하였다.



### 시각장애 : 스티비 윈더

스티비 윈더는 미국의 흑인 시각장애 음악가로서 많은 히트곡을 작사, 작곡 하였다. 스티비 윈더는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 곡을 써준 유능한 작곡가였고, 거의 모든 악기의 연주를



직접 말을 정도로 재능 있는 멀티플레이어이다.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다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시력을 잃었으나 시력이 없기에 더더욱 발달된 청각을 토대로 음악을 만드는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

### 시각장애 : 김국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겪어 현재 1급 시각장애인이 된 김국환은 지체장애인 아버지와 시각장애인 어머니, 형 사이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꿈은 항상 가수였다고 한다. 19세 때는 장애인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고, 가수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환상적인 목소리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40명안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힘입어 감동과 희망을 주는 가수, 장애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가수 김국환으로 활동하고 있다.



### 청각장애 : 윤보 김기창



한국의 화가. 7세 때 앓은 장티푸스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상으로 보는 만 원 권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린 인물로 서구의 현대적인 양식이 아닌 우리 고유의 전통화인 민화를 바탕으로 해학과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또한 농복지 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으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1-4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 청각장애 : 키릴 악셀로드 신부

시청각장애인 신부인 키릴 악셀로드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흑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와 복지 시설을 세우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1980년 미국에서 선교하던 중, 키릴 신부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시각과 청각장애를 모두 갖는 어서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마카오의 청각장애인 교육과 직업 훈련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운영



하고, 자율적이며 비영리적이고 비교파적인 '마카오 청각장애인 협회'를 설립했다.



### 청각장애 : 애블린 글래니 연주자

50여개의 타악기를 한꺼번에 다루고 1년에 120여회의 연주회를 갖는 타악기 연주자이다. 갖가지 타악기로 작은 빗방울 소리부터 천둥소리까지 소화해내며, 자신의 연주를 들을 수는 없지만 발과 손끝에 있는 온갖 신경을 동원하여 소리들을 감지한다고 한다.

여덟 살 때 귀에 이상이 생겨 열두 살 때에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중학교에서 음악공부를 하던 중 친구의 북치는 모습에 반해 타악기를 시작했다는 그녀는 청력문제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솔로 연주자로 데뷔하여 수많은 콘서트를 영국 및,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필하모니와 협연 연주회도 가졌었고, 이제는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음악치료법을 지원해주는 '런던 베토벤 기금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냐는 주위의 질문에 그녀는 "저는 청각장애인 음악인이 아니에요. 다만 청각에 조금 문제가 생긴 음악가일 뿐이죠"라고 대답했다.

### 청각장애인 : 박남희 수화무용가

박남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입이 아닌 수어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소속으로 현대무용과 수화를 접목시켜 새로운 예술로 탄생시킨 작품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멋진 아티스트이다.



### 다운증후군 : 영화배우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를 졸업하고 영화 '사랑해, 말순씨'에서 열연한 강민휘씨, 영화 '제8요일'을 통해 1996년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벨기에 출신 파스칼 뒤켄, 영화 <미 투>(Me Too)의 주인공으로 제57회(2009)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파블로 피네다 등이 있다.

## 자폐성장애

1. 아주 특별한 우편분류의 달인(sbs 생활의 달인 2012. 4. 16 방송) 자폐성장애인 류승윤, 강주영씨 : ‘강동구에는 특별하게 배달되는 우편들이 있다는데~! 일 할 때의 모습은 영락 없이 달인, 하지만 알고 보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류승윤(30세), 강주영(25세) 달인! 비장애인의 수 백 배의 노력으로 우편분류를 할 때만큼은 전혀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두 달인은 빠른 스피드는 기본! 오류가 없기로도 유명하다는데~ 이 뿐만이 아니다! 각 구역의 담당 집배원의 이름을 술술 외우고, 다른 친구들이 실수한 작업들까지 도맡아서 척척 해결!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게 지하철을 타는데도 꼬박 3년이 걸렸다는 류승윤, 강주영 달인의 무한도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보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류승윤, 강주영 달인의 눈물과 웃음의 감동 스토리!’

2. 하트하트 오케스트라(Heart to Heart Orchestra) : 하트하트재단에서 설립한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2006년 창단 당시에는 관악기로만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로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된 완전한 관현악단의 규모를 갖춘 심포니오케스트라로 확대 편성되었다. 2012년에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모델로서 음악 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인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하트미라콜로앙상블을 창단하였으며,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해피스쿨’의 예술강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오프닝 셀러브레이션 초청공연, 예술의 전당 ‘11시콘서트’ 초청공연, 2012년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D-100 성공기원 기념음악회 초청공연(예술의 전당),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우리동네음악회 특별공연, KBS교향악단 합동연주회(KBS홀) 등 많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연주하면서, 자폐성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평을 넓히고 있다.

3. 마라토너 배형진 : 배형진은 대한민국의 자폐성장애인 마라토너. 2001년 자폐를 딛고 춘천마라톤을 완주하였으며, 2002년 8월에는 비장애인을 통틀어서도 대한민국에서 최연소로 철인3종경기를 완주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말아톤으로 제작되었다.



4. 템플 그랜딘(Temple Grandin) : 미국 보스턴 출신 동물학자. 비학대적인 가축시설의 설계자이며, 콜로라도 주립대학 준교수. 1947년 8월 29일 자폐증이 아직 사회에 인지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난 그랜딘은 2살 때, 뇌에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고 성인이 되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았다. 1970년 프랭클린 피어스 컬리지에서 심리학 학사, 1975년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동물학 석사, 1989년 일리노이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 자폐성 장애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던 템플 그랜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바로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을 살려 자폐성 장애를 가졌지만 자신의 다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결국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다.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3장  
장애 바로알기 II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제3장\_장애 바로알기 II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sup>1)</sup>

성 명 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제2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유형별 이해안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 대한 간략한 의미와 특성, 올바른 매너 등을 살펴보았지만 이번 장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에서 시작될 수 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거나 지원을 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정보를 먼저 탐색해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

### 위키백과

### 지적장애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 유전적 원인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하여 청년기 전에 지능발달이 저지되어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자폐(중)

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내면세계에 틀어박히는 정신적인 질환.

현실 세계는 꿈과 같이 보이며, 대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국어대사전

1) 본 장은 서울시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의 원고에 기초하여 작성됨.

국립국어원은 한 국가의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의사소통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적 조직이다. 현대 ‘지적장애’, ‘자폐’라는 단어는 위와 같은 의미로 설명한다.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사전에 제시된 것처럼 뒤져 있고, 고립되어 있으며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장애는 과거에 “정신박약아”, “정신지체”라 불리웠다. 이는 정신적 비정상성과 뒤쳐져 있다는 의미로 과거에 발달장애인은 비속어의 대상이었다. 또한 법적으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존중받기 어려운 존재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의식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며 오해와 실수를 범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인권에 대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도,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인권적 접근이 대두되었다. 인권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은 최근에서야 존엄한 존재임을 알리게 되었고, 세상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였다. 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등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인권에 기반하여 제공자와 이용자를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인권적 이해를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원칙이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권리주체자로서의 발달장애인과 의무이행자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맺기를 통한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의 장애 특성에 대한 오해와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의 임상적 의미인 사회적 인식,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당사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을 고치려 하거나 이미지화 하지 않아야 한다. 신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을 개인의 문제로 여겨 좋고 나쁨을 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인지적 특성,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사회적 분리와 배제의 기준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 특성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 기준은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근거이자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모두 다르기에 인권에 대한 정의는 UN에서조차 내리지 못한다. 다만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연관성, 비차별, 평등, 통합 등과 같은 원칙이나 속성을 통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 이해를 통해 장애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원칙이나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





##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단이나 장애특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낙인을 부여하거나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장애특성에 대한 오해, 낙인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원하는 사람들의 성찰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옹호의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는 장애진단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지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사용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장애 특성을 기술해 두었기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향후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 특성에 근거하여 장애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고유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진단 자체는 당사자에게 낙인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952년에 DSM- I 이 출간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2013년에 개정된 DSM-5를 통해 발달장애에 관련된 항목을 알아보고 보고자 한다. DSM-5는 진단 기준을 제시하며 기본적으로 의학적 모델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설명한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의학적으로 제시된 기준은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표면적 특성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기도 하다. 발달장애인이라 칭하는 대상은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규정된다. DSM-5에서 설명하는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DSM-5: 지적장애/지적 발달장애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	
진단기준	
지적장애는 발달 시기에 시작되며,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의 3가지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임상적 평가와 개별적으로 실시된 표준화된 지능 검사로 확인된 지적 기능(추론, 문제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 경험학습)의 결함이 있다.	
B.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에 필요한 발달학적, 사회문화적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적응 결함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가정, 학교, 일터, 공동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상활동(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독립적 생활) 기능에 제한을 받는다.	
C.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의 결함은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된다.	
주요점: 지적장애라는 진단명은 ICD-11의 지적발달장애와 동의어다. 이 편람에서는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진단 체계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목에는 2가지 용어 모두 기재하였다. 더욱이 미연방 법령(공법 111-256)에서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학술지에서도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의학, 교육 및 기타 전문직 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시민 단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심각도를 명시할 것(표2 참조)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지적장애는 위와 같은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4개 유형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1급, 2급, 3급을 나누는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지능점수에 따른 DSM-IV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장애등급은 지능점수(IQ)에 기인하지만, 본래 DSM-5에서 하위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지능점수가 아니라 적응 기능에 기초한다. 지능점수가 아니라 적응기능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정의되는 이유는 필요한 지원의 정도가 적응 기능에 의해 달라지고, 하위 지능 범위에서는 IQ점수의 측정 타당도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지적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향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의 정도인 적응 행동 수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DSM-5에서 적응행동에 따른 심각도 수준(severity level)은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영역으로 나뉜다. 사람을 범주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격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적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적응행동의 수준에 따라 계획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적응행동에 따른 기본적인 특성과 지원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구성할 수 있기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DSM-5: 지적장애의 심각도 수준

수준	개념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실행적 영역
경도 (mild)	읽기, 쓰기, 계산, 시간이나 돈에 대한 개념과 같은 학업 기술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습 기술의 기능적 사용(예, 읽기, 금전 관리)뿐만 아니라 추상적 사고, 집행기능(예, 계획, 전략 수립, 우선순위 정하기, 인지적 유연성), 단기 기억도 손상되어 있다. 문제나 해결에 대한 접근에서도 다소 융통성이 부족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사소통, 대화, 언어가 구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미숙하다.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함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를 한다. 사회적 판단이 연령에 비해 미숙하여 다른 이들에게 속거나 조종당할 위험이 있다.	자기관리는 연령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또래에 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인에서는 장보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가사 및 아이 돌보기, 영양을 갖춘 음식 준비, 은행업무와 금전관리와 같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여가 기술은 또래와 유사하나 웰빙과 여가 계획과 관련된 판단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성인기에는 개념적 기술이 강조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기도 한다. 건강관리나 법률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직업활동을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중등도 (moderate)	성인기에 학습기술은 초등 학습 수준에 머무르며 개인 생활이나 직업에서 학습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개념적 업무를 오나 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행동이 동년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표현언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지만 단어나 문장이 또래에 비해 단순롭다. 대인관계는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가지며, 성공적으로 우정을 나눌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거나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적 판단과 결정 능력에 제한이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의사소통이나 사회성의 제약이 동년배와의 우정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직업 영역에서도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식사, 옷 입기, 배설, 위생관리는 가능하다. 이러한 영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며, 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집안일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대체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된 개념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는 독립적 취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대, 업무의 복잡성 및 일정 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의료보험, 금전 관리와 같은 부수적인 책임을 해내기 위해서는 동료나 감독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가 활용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부수적인 도움과 기회가 필요하다. 극히 일부에서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고도 (severe)	개념적 기술을 제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글, 수, 양, 시간, 금전에 대한 개념 이해가 거의 어렵다. 보호자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에 광범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말 표현이 어휘나 문법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한 단어나 구로 말을 하거나 다른 보완적 방법으로 내용을 보충하게 된다. 말이나 의사소통은 현재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중심이고, 언어는 설명이나 해석보다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한다. 간단한 말이나 몸짓을 이해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과 관계나 친밀한 이들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얻고 도움을 받는다.	식사, 옷 입기, 목욕, 배설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 전반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항시 필요하다. 자니나 타인의 안녕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가사, 여가 활동이나 직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며, 모든 영역의 기술 습득을 위해 장기간의 교육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소수의 경우에는 자해와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고도 (profound)	개념적 기술은 주로 상징적 과정보다는 물리적 세계와 연관된다. 자기관리, 작업, 여가를 위해 목표 지향적 방식으로 사물을 이용할 수 있다. 짝 짓기, 분류하기와 같은 단순한 시각-공간적 기능을 습득할 수도 있으나 운동, 감각 손상이 사물의 기능적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말이나 몸짓의 상징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 간단한 지시나 몸짓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은 주로 비언어적, 비상징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표현한다. 친숙한 가족 구성원이나 보호자와의 관계를 즐기며, 몸짓이나 감정적 신호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을 맺는다. 동반된 감각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일상 활동에는 참여할 수도 있으나, 일상적인 신체관리, 건강, 안전의 전 영역에 걸쳐 타인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릇 치우기와 같은 간단한 가사를 보조할 수 있다. 고도의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물건을 이용한 간단한 활동을 함으로써 일부 직업적 활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하에 오락 듣기, 영화 보기, 산책하기, 물놀이와 같은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동반된 신체적, 감각적 어려움이 집안일, 여가,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데 종종 방해가 된다. 소수의 경우에서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지능점수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 추상적 사고와 같은 영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적응 기능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인 각 영역에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 영역을 큰 틀을 계획할 수 있다. 진단기준이나 심각도 수준에 따른 내용은 발달장애인에게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계획한 지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신체장애인도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도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3〉 DSM-5: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진단기준	
A.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으로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예시는 실례로 증상을 총망라한 것이 아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감정적 상호관계 형성의 결함(안면표정, 눈맞춤, 정서, 기분을 공유하기 어려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 및 반응이 어려움)</li> <li>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눈맞춤과 몸짓 언어,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어려움, 얼굴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전체적으로 어려움)</li> <li>3. 관계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적절한 적응행동의 어려움, 상상 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 사귀기가 어려움, 동료에 대한 관심 부족)</li> </ol>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이상 나타난다(예시들은 실례이며 증상을 총망라한 것이 아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단순 반복 행동, 장난감 정렬하기, 물체 툽기, 반향어, 독특한 말)</li> <li>2.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의례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양상(직접은 변화에 극심한 고통, 변화의 어려움, 완고한 사고방식, 의례적인 인사, 같은 길로만 다니거나 매일 같은 음식 먹기)</li> <li>3.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특이한 물체에 대한 강한 애착 또는 집착, 과도하거나 국한된 흥미)</li> <li>4. 감각 정보에 대한 과민 또는 과소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통증/온도에 있어서 무감각, 특정 소리나 감촉에 대한 이상 반응, 물건의 냄새나 촉감에 예민함, 빛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강하게 흥미를 보임)</li> </ol>
C.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오나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다.
D.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현재의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한다.
E.	이러한 장애는 지적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지적장애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저하되어야 한다.

**주의점:** DSM-IV의 진단기준상, 자폐성장애, 아스퍼거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뚜렷한 결함이 있으나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다른 진단 항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로 평가해야 한다.

DSM-IV에서는 광범위성 발달장애라 명명하고, 그 하위 영역에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저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분류하였다. DSM-5에서 모든 하위 영역을 총괄하여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하위 영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100인 100색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범주화된 접근(categorical approach)에서 스펙트럼이라는 차원적 접근(dimentional approach)으로 바뀌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욕구가 수 많은 빛의 띠인 스펙트럼의 다양한 지점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DSM-5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행동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입주인(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제한되거나 반복적이거나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행동임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감각정보에 대한 과잉/과소 반응에 대한 특성은 자기 조절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도전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 중에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적으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중복장애로 진단된다. DSM-5 진단기준 E.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저하될 경우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중복으로 진단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적 장애를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추후 이러한 기준이 반영된다면 지적, 자폐성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복하여 언급하면 장애특성에 대한 설명이나 기준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체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은 다르다는 것이다. 신체장애인은 단기적으로 권리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 편의제공, 활동지원과 같은 경험을 통해 자립을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권리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 편의 제

공,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지원, 상호작용 지원, 의사결정 지원, 자기 조절에 대한 지원, 위험감수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폐성 장애를 스펙트럼 장애라 명명하는 것처럼 지원도 스펙트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심각도 수준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원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폐성 장애에 대한 심각도 수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지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의학적 모델 안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틀이라 결함, 손상, 제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필요한 지원의 차이로 활용할 수 있다. 자폐성 장애 등급에 따른 자격기준을 넘어서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DSM-5: 자폐성 장애의 심각도 수준

구분	사회적 의사소통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3단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Level 3: Requiring very substantial support)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이 야기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데 극도로 제한적이며, 사회적 접근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극소수의 단어뿐인 사람으로서, 좀처럼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않으며, 만일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오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매우 직접적인 사회적 접근에만 반응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든 분야에서 기능을 하는데 뚜렷한 방해로 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2단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Level 4: Requiring substantial support)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뚜렷한 결함, 지원을 해도 명백한 사회적 손상이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의 시작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감소된 혹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장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이 편협한 특정 관심사에만 제한되어 있고, 기이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우연히 관찰한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타나며,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방해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1단계 지원이 필요한 수준 (Level 10: Requiring support)	지원이 없을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분명한 손상을 야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이나 성공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으며, 친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과상하고 대개 실패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분야의 기능을 확연히 방해한다. 활동 전환이 어렵다. 조직력과 계획력의 문제는 독립을 방해한다.

심각도에 따른 기준은 표면적으로 자폐성 장애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있는 자폐성 장애인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영역의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있는 자폐성 장애인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뚜렷하기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심을 매개로 하여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 있는 자폐성 장애인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기에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 받거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이해는 장애 특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의 방향성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사정과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서비스 자격기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독립성에 대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제시하였다(김용득, 2013).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적용되거나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국외 문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서비스 제공 판단 기준: 독립성에 대한 위험 수준 평가 기준

구분	기준(각 항목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심각한 수준 (Critical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을 위협받고 있거나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현재 생활환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선택이나 통제가 전혀 또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심각한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li> <li>- 중대한 영역의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치명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핵심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중대한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ul>

<p>중대한 수준 (Substantial lev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생활환경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선택이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학대나 방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li> <li>- 많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많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ul>
<p>통상적인 수준 (Moderate lev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몇 가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몇 가지 부분에서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몇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몇 가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ul>
<p>낮은 수준 (Low lev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두 가지 부분에서 신변관리나 일상 가정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한두 가지 부분에서 노동, 교육, 학습 등에 대한 참여가 유지될 수 없거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한두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마련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li>- 한두 가지 부분에서 가족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li> </ul>

출처: 김용득 · 변경희 · 임성만 · 강희설 · 이정호 · 장기성 · 전권일 · 조순주(2007).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보건복지부 ·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또한 임상적으로, 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기준을 알아보는 이유는 필요한 자립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표 6>과 같이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점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소통해 나갈 수 있다. 즉,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내용, 기간, 정도는 모두 다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6> 지적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접근방식의 차이**

구분	점검항목	의사소통시 고려할 점
Level 1 (Serio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답은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짐.</li> <li>- 신호 또는 한두마디 말로만 대답</li> <li>- 때대로 '무엇' 또는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 가능</li> <li>- 한 두 단어로 된 문장 따라하기 가능</li> <li>-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하려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질문하게 할 것</li> <li>- 당사자로 하여금 두 가지 선택중에 고르도록 할 것</li> <li>- 그림, 사진, 표식 그리고 상징을 보여주면서 질문할 것</li> <li>-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대답하도록 독려할 것. 그리고 주위가 산만하지 않은 곳에서 질문할 것</li> <li>-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을 재구성할 것</li> </ul>
Level 2 (Mode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때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질문에 가상적으로 대답가능</li> <li>- 후치 보조용어가 담긴 질문 이해가능</li> <li>- 후치 보조용어를 사용하여 대답</li> <li>-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li> <li>- 3단어 이상 담긴 질문 따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천히 말할 것</li> <li>-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질문을 반복할 것</li> <li>- 의성 또는 의태어를 쓰면서 질문할 것</li> <li>- 인상깊었던 것을 묘사하려고 할 때 사진, 표식, 상징 그리고 단어를 사용</li> <li>- 당사자에게 세 개 이상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제일 좋으니?" 라고 물어보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표현하게 할 것</li> <li>- 한참 뒤에(30분 뒤, 하루, 1주일 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li> </ul>
Level 3 (M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제나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가능</li> <li>- 4~5단어 문장 따라하기 가능</li> <li>- 회상하여 대답 가능</li> <li>- "어떻게?" 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가능</li> <li>- 도덕적 가치에 대해 이해가능</li> <li>-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행동가능</li> <li>-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li> <li>- 해당 주의 시간과 요일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li> <li>- "만약에 ~~~ 어떻게"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에 대해서 대답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써서 질문을 보여줄 것</li> <li>- 다중 선택과 말로 하는 질문을 선택할 것</li> <li>-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경험의 샘플을 제시할 것</li> <li>- 시계와 함께 과거에 대해 질문할 것</li> <li>-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질문</li> <li>- 한참 뒤에(30분, 하루, 1주일 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li> </ul>

출처: 김진우 · 송남영 · 권미영(2009).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을 해야 하는 강사는 발달장애에 대한 특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언어에 숨겨진 이면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인지적, 언어적 손상, 적응 행동의 어려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제한되고 반복된 행동은 어떻게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발달장애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제한으로 인하여 개념적, 사회적, 실행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행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비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비발달장애인의 기준에 따른 설명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말하는 발달장애의 특성에 대하여도 알아보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자기옹호의 방향으로 다양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대리옹호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히가시다 나오키, 2006/2010; 히가시다 나오키, 2013/2015; Jolliffe, Lansdown & Robinson, 1992; Grandin, 1995/2005).

진솔함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황금율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대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바라는 대우와 발달장애인이 바라는 대우는 다를 수 있다. 황금율을 넘어서서 사회가 보는 틀에 발달장애인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던 만큼 나 역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도 오래 걸렸다.

내가 비록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를지라도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 물건들 속에서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건들은 무서웠다. 움직이는 물건에 대처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소리내면서 움직이는 물건에 대처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는 문제에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대하지 않을 때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감각적 정보에 대한 과잉/과소 반응이라 표현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관점일 수 있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한다. 또 어느 정도의 강박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불편감을 느낀다. 사람마다 감각의 역치가 달라서 신체적인 반응이 달라지기도 한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서로 지지체계가 되어 사랑과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이 갑작스런 행동이나 반응은 이전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감각의 세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폐성 장애인으로 성장하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템플 그랜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나의 감각적 문제가 성품이 나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 정말 큰 안도감을 느꼈다. 청소년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시각적 사고방식과 지나치게 민감한 감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게 힘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많은 자폐인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른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하는 과정과 감각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고 난 다음에야 내가 어떻게 다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더 많은 교육자와 의사들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많은 자폐아들이 좀더 어린 나이에 그 끔찍스러운 고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부모가 냉담한 양육을 할 경우(냉장고형 부모) 자녀가 자폐성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현재는 신경심리학적 문제로 보고 있다. 향후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학문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어려움으로 마음맹(mind-blindness)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하면서 비장애인과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황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각적 다름에 대하여 사람이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반응을 보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생각이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발달장애인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나누기 보다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험이 많았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주장했던 경험보다 ‘지시 따르기’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의 축적은 자기표현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의사소통을 나누기보다 자신의 세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

히가다시 나오키는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웃음’을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가 난 사람 앞에서 화를 내지 말고 말로 설명해달라는 요구 대신에 자신의 세상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표정에 반응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자폐증인 사람은 혼나면서도 웃는다고 주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웃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혼나고 있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는 경우와 화가 난 상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탓에 웃음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을 내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상대에게 전할 목적으로 무서운 표정을 짓겠지요. 그러나 내 경우, 화가 났다면 말로 설명하면 될텐데 왜 굳이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을 보면서 반성하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 기억에 강력하게 새겨지고, 다시 한 번 그 표정을 보고 싶어질 뿐입니다. 비디오의 재생 버튼을 눌러 좋아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보는 식이죠. 그래서 상대가 화를 낼 만한 행동을 일부러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결과, 또 혼이 나게 되면 나는 그때야 ‘아차’ 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뇌가 한 번 기억한 놀이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화가 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를 관찰하는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관찰하고 있을 때, 상대도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관찰합니다. 관찰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진 순간부터, 먼저 상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제한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은 불편하거나 초조할 때 볼펜을 돌리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을 한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순서화된 행동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는 사회적으로 통용된 상동행동과 강박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반복된 행동을 보이거나

순서화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정감을 갖기 위한 행동으로 다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불편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일 때에는 안정감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찾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물을 정렬하거나 물건을 돌리는 행동,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닫는 자신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모두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파워스톤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전조가 불길하다느니 어둡다느니 하면서 마음을 쓰는 것이겠지요.  
 나는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레인지의 문을 살짝 열었다가 바로 탁 다는 일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인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전,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을 꺼내고 문을 닫으려는데 잘 닫히지 않아 다시 닫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때 정확하게 꼭 닫힌 감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보다 후련해집니다.  
 한 가지 일을 끝냈을 대처럼 안도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일은 자신에게만 효과가 있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위와 같은 몇몇 사례로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다름을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은 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바라는 삶은 모두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필요함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독특한 행동과 태도를 오해하여 무섭거나 두려운 사람, 착하거나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개인 간(interpersonal) 특성에 따른 기존 서비스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intrapersonal) 특성에 따라 스펙트럼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삶의

과정에서 통합보다는 분리된 경험이 많기에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권적 접근은 발달장애인 자신이 권리주체자로서 행동하지만 동시에 의무이행자인 것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 장애특성을 오해 없이 인식하고,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변별과 선택의 기준, 함께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의무만 이행하면 소진이나 이타적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와 발달장애인은 평등한 협력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동등한 위치성을 갖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은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인권적 접근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권리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적 변화가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김용득 · 변경희 · 임성만 · 강희실 · 이정호 · 장기성 · 전권일 · 조순주(2007).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 보건복지부 ·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김진우 · 송남영 · 권미영(2009).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 매뉴얼 2: 지적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가다시 나오키(2010). 나는 왜 팔짝팔짝 떨까?  
(박재국 · 김혜리 · 고등역 공역).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7). 허가다시 나오키(2015). 나는 괜찮은 사람  
입니다 (김난주 역). 흐름출판 (원서출판 201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Grandin, T. (2005).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 (홍한별 역). 양철북. (원서출판 1995).
- Jolliffe, T., Lansdown, R., & Robinson, C. (1992). Autism: a Personal Account. *Communication*, 26, 3, 12-19.

제4장  
장애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

# 자기결정권, 소비자주의, 자립생활 등에 대하여

이 채 식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제4장\_장애개념 및 패러다임의 변화

# 자기결정권, 소비자주의, 자립생활 등에 대하여

이채식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 장애개념에 대한 이해

장애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즉 장애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정일교·김만호, 2007).

결국 장애의 의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장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장애로 취급되는 문제가 그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기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구선진국 등에서는 희귀 난치, 당뇨, 만성적인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적용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청년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상황이 같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장애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 안경을 착용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처럼 보조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는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혹은 사회의 수용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범주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의학적 개념에 의한 분류보다는 직업능력,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 따라 더 많이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권선진, 2007).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장애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개념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장애분류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 01 / 장애에 대한 이론적 틀

이 장<sup>1)</sup>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개념과 국제적 동향의 장애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장애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정의·분류·측정이 근거를 두고 있는 이론적 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Bernell(2003)이 정의한 장애개념의 세 가지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의학적 접근법

의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의학적 질환의 특정 목록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이라고 여겨진다. 이 접근법은 노동 시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종종 사용되어 왔다(Bernell, 2003). 언뜻 보아 의학적 접근법은 손상을 가지고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학적 질환의 평가만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근법은 쇠퇴의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Bernell,

1)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조한진·강민희·정은·조원일·곽정란·전지혜·정희경(2013)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2003). 첫째, 그것은 ‘공인된’ 질환의 특정 목록으로부터 어찌면 중요한 많은 질환을 빠뜨리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것은 그 질병이 이 목록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급부의 거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 의학적 접근법은 제한의 결과보다는 제한의 근원을 강조하며, 따라서 개인의 신체 상태 및 기능하는 능력 사이에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을 영구화한다. 셋째, 많은 상황에서 의사가 의학적 질환을 증명해야 하는데, 결과(기회비용)가 있게 된다. 넷째, 의학에 기반을 둔 정의는 대개 질환의 삼각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2) 기능적 제한 접근법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많은 정의·분류·측정이 Nagi(1965, 1969)에 의하여 서술된 기능적 제한 접근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Nagi에 따르면 장애로 이어지는 상황은 ‘활동성 병리’(active pathology)상태에 있는 질환에서 시작된다. 활동성 병리는 정상적 과정의 중단 및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려는 유기체의 동시적 노력을 포함하는, 질병의 시작을 말한다. 일부 상황에서 그 질환은 병리의 활동 단계가 감소되거나 제거된 후에도 남아 있는 지속적 ‘손상’(impairment)을 개인에게 남긴다. Nagi는 생리적이거나 해부학적인 유실이나 기타 이상 또는 양쪽 손상을 정의하였다. Nagi에 따르면 손상의 본질은 생애 주기 중 발생 시점(선천성, 유아기, 근로 연령 또는 만년), 발생 유형(진행이 느리거나 진행성), 받은 치료(약물치료, 수술)를 포함한 다수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어떤 상황 하에서 손상은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을 야기한다. 정신적 손상은 개인을 동료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또 제한은 몇 가지 신체계통 중 어느 하나에서의 손상으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다. Nagi의 기능적 제한 접근법의 중요한 측면은 모든 기능적 제한이 손상에서 기인하지만 모든 손상이 기능적 제한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Nagi는 특정 환경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과업(task)과 역할(role)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이나 제한을 서술하기 위하여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과업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특성의 신체적·정신적 활동을 말하며, 역할은 사회 제도에서 어떻게 개인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조직된다. 장애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과업·역할이 정신적·신체적 제한 때문에 어떻

게 변화하는지에 관련된다.

Nagi가 인식하였듯이 장애의 평가는 신체적 질환, 손상, 또는 기능적 제한의 평가보다 훨씬 더 어렵다. 신체적 질환, 손상, 또는 기능적 제한은 검사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장애 상태의 결정은 기능적 제한이, 평상시 과업·역할의 요건 및 타인(예: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고용주, 서비스·급부를 제공하는 기관)의 반응·기대와 같은, 그 사람의 주위 환경에서의 다른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기능적 제한의 측정은 활동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그리고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제한되지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하는가에 따라 넓거나 좁을 수 있다. 폭넓은 장애인 정의의 예는 ‘평상시의 활동 중 어느 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한되는 사람’ 일 수 있다. 더 좁은 정의로서 특정 역할(예: 상근 직장에서의 업무)을 수행할 수 없다면 개인을 장애인으로 특징지을 수도 있다. 몇몇 도구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활동)이나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적 일상생활활동)과 같은 특정 활동을 목록으로 그 정의를 제한시킨다. 매우 좁은 정의에서는 개인이 도움없이 최소한 세 가지의 ADL이나 IADL을 수행할 수 없다면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정의들이 유일한 활동으로서 고용만을 포함하는, 활동제한의 좁은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Bernell, 2003).

### 3) 사회정치적 접근법

Nagi에 의하여 옹호된 병리로부터 장애까지의 과정이 장애를 정의하는 근거로서 많은 연구자와 정부 공무원에 의해서 채택되어 오긴 했지만, 이것은 장애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보고 신체적 능력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변화 또는 다른 재능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인해 비판받아 왔다. 이에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개인으로부터 초점을 바꾸어 더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환경으로 그 초점을 이동한다. 이 접근법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의학 및 기능적 제한 위주의 정의는 (1) 인간 기능의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2)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특이한’ 신념에 대부분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정치적 접근법 하에서,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는 환경을 고치는 정책 변화를 통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틀 하에서 책임의 대부분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프로그램에 있게 된다(Bernell, 2003).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제한만큼이나, 오히려 그 제한보다도 더욱, 사회에서의 차별과 억압에 의해 불리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사회정치적 접근법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 02 / 우리나라 장애개념에 대한 정의

앞에서 살펴본 Bernell의 세 가지 장애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장애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2000년 1월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2)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②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는 기능적 제한 접근법에 초점을 둔 정의로서 장애종류와 기준을 언급하고 있어 의학적 접근법에 따른 장애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는 의료적 관점에서 좁은 범위에서 장애를 범주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조한진·강민희 외(2013)의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에서 발췌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데,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개정(2016.2.3.), 시행(2016.6.23.)」
- (4) 지체장애
- (5) 정서·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진단 및 평가할 때 의학적 질환 내지 손상의 특정 목록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선정기준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개념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신체상이나 정신상의 장애로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를 정의함에 있어서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따르면 장애와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어 의학적 관점보다는 일정정도의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이 인권법인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 제1항과 매우 유사한 장애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법으로서의 법의 위상을 생각할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다.

동 법은 의학적 질환 내지 손상의 특정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질

환 및 손상에서 기인하는 기능의 제한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이동, 시설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장애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그 불편이 개인의 의학적 질환과 손상 또는 기능의 제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리적 장벽에서 온다고 정의하고 있어 한국의 장애 관련 법 중에서는 드물게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따라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03 /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적 분류 정의

장애개념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장애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면서 장애개념을 채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ICIDH(1980), ICIDH-2(1997), ICF(2001)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ICIDH(1980)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년에 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라고 하는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고 이 분류 기준을 세계 각국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의 국제장애분류 제1판(ICIDH)의 장애개념에서 장애의 정의를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ICIDH(1980)

자료: 島美都子 외(2001)에서 재정리

우선, 손상 (기능장애(Impairments))는 생물학적 장애로 기능의 감소를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능력장애(Disabilities)는 기능장애에서 야기된 것

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말한다. 이것은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 결과를 뜻하기도 한다. 사회적 불리(Handicaps)는 선천적 또는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그 결과 독립생활, 교육, 취업 등이 저해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차적 기능장애, 2차적 능력장애, 3차적 사회적 장애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지침도 예방, 재활, 기회의 균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兒島美都子 外, 2001). 이와 같은 ICIDH 장애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권선진, 2007).

<표 1> ICIDH의 장애 개념

개념	의미	차원
건강조건 (health condition)	병리학적인 변화로서 증상이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하였다.	개인적 차원
손상(기능) (impairment)	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	개인적 차원
능력 (Disability)	활동상의 능력제한이 발생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수행능력이 감소되었다.	개인적 차원
사회적 불리 (Handicap)	개인의 활동상의 능력제한에 대해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사회적 차원

자료: 권선진(2007)에서 재정리

그러나 1980년의 국제장애분류(ICIDH)는 질병과 손상(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 사이에 명확하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질병이나 부상, 기능장애 이외에도 능력장애와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1997년에 국제장애분류(ICIDH-2)가 제안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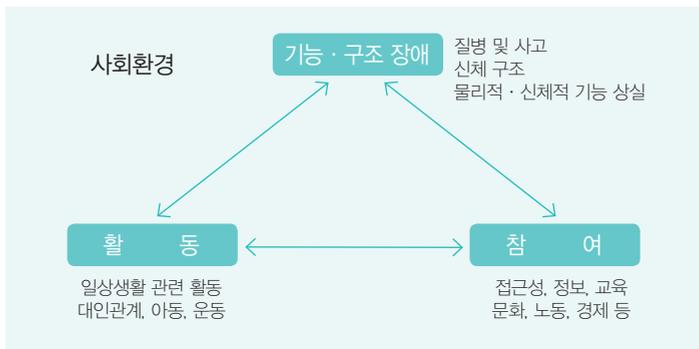
## 2) ICIDH-2(1997)

1997년의 국제장애분류 제2판(ICIDH-2)은 장애의 개념과 범주를 개별적, 사회적 모델

개념<sup>3)</sup>의 차이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중양, 건강조건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Individual)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개별적 모델로서, 개인의 장애문제에 그 핵심을 두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장애가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기인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회모델은 장애현상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장애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야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결함 혹은 손상(Impairments)은 신체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 혹은 신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른 불능을 말한다. 활동(activities)은 개인적 수준에서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을 다룬다. 참여(participation)는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생활요인과 관련한 생활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한다. 따라서, 참여의 차원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며 개인의 참여정도,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裴村多加志, 2002; 손광훈, 2004). 이와 같은 ICIDH-2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ICIDH-2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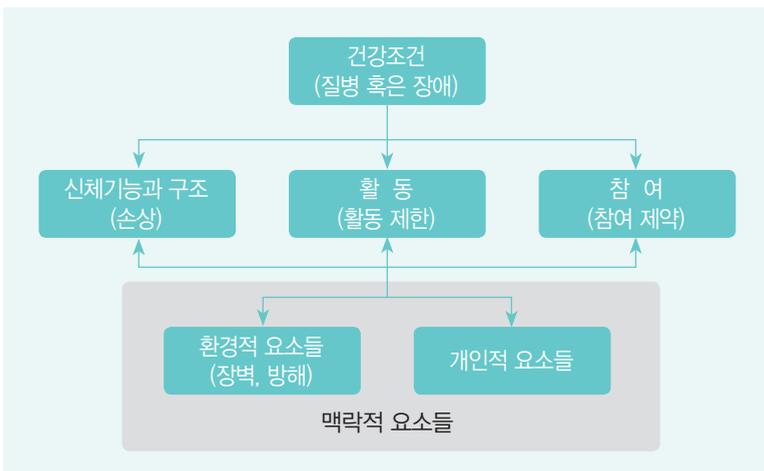
자료: 정일교 외(2007)에서 재정리

### 3) ICF(200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1년에 국제장애분류 제2판(ICIDH-2)의 장애개념을 ICF

3) 개별적, 사회적 모델 개념에 대한 설명은 후술하는 「II. 장애패러다임의 변화」를 참조하기 바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확정하여 장애분류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ICF는 ICIDH-2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장애분류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지향적인 맥락에서 수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F에서는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즉,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기능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裴村多加志, 2002). 이와 같은 ICF의 장애개념을 다음의 <그림 1-3>과 같이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ICF의 목적과 범위, 적용방법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ICF의 구성

자료 : 裴村多加志(2002)에서 재구성

### (1) ICF의 목적

ICF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류로 전문분야와 영역에 기여한다. ICF는 첫째, 건강 상태와 건강관련 상태, 건강관련 결과, 결정 요소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둘째, 건강 상태와 건강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공용어를 제공하고, 셋째, 장애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종사자, 연구자, 정책 입안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의 개선, 넷째, 국가간 전문 보건 분야 간, 각종 서비스 시기와 관계

없는 데이터의 비교, 다섯째, 건강정보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코드화된 분류 리스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2) ICF의 범위

ICF를 이용해 모든 건강조건과 관련된 건강 및 건강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CF는 전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이다. ICF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과 장애측면과 배경요인에서 정보를 조직화한다. 즉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① 기능과 장애의 구성요소

기능과 장애의 구성요소는 두가지 분류 즉 신체계통의 기능적 분류와 신체계통의 구조적 분류로 구성된다. 활동과 참여요소는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기능측면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 ② 배경요인

배경요인은 개인생활의 총체적 배경을 대변한다. 배경요인은 개인의 건강여건과 건강 또는 건강관련 상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두 가지 구성요소 즉,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으로 이루어진다.

### ③ 환경요인

환경요인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물리적·사회적·태도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에게는 외적 요소. 즉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수행에 있어서는 일상행위나 임무를 이행하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ICF의 적용

ICF는 건강 분류 및 건강관련 분류이지만 보험, 사회보장, 노동, 교육, 경제, 사회정책, 입법, 환경 정비와 같은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ICF는 UN의 사회분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 규칙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ICF는 국내 법령뿐 아니라 공식적인 국제인권에 관한 제 규칙과 방침과 각국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 (4) ICF의 「참여」와 「활동」의 관계

大川弥生(2015)는 참여와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그림 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참여는 활동의 목적이자 할 수 있으며, 활동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의 개념을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다’ 라고 가정했을때에 이에 대한 ‘활동’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일을 가지기 위한 작업활동, 출퇴근활동, 작업장 등에서의 의복탈착활동,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참여와 활동과의 관계

자료: 大川弥生(2015). 「일본 ICF 활용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인용하여 수정하고 보완함 적임  
 (\* 이미지 그림은 다음(<http://www.daum.net>)사이트 이미지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둠).

### (5) ICF의 개관

ICF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경요인은 개인의 생활, 인생에 관한 배경 전체를 구성하는 요인을 말하며 특히 ICF 분류시 건강 상태의 배경을 나타낸다. 환경요인은 사람이 만든 물적 세계, 다양한 관계와 역할, 태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 서비스·정책·규칙 법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한다. 개인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사회적 상황, 인생체험 등의 개인과 관련된 배경요인을 말한다.

〈표 2〉 ICF의 개관

구분	영역1: 생활 기능과 장애		영역2: 배경요인		
	구성요소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영역	신체기능과 구조	생활과 인생영역 (과제, 행위)	생활기능과 장애로의 외적 영향	생활기능과 장애로의 내적 영향	
구성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기능의 변화 (생리적)</li> <li>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력: 표준적 환경에 있어서 과제의 수행</li> <li>실행상황: 현재의 환경에 있어 과제의 수행</li> </ul>	물적환경과 사회적 환경,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형성된 환경적 특징을 가진 촉진적 혹은 저해적 영향력	개인적 특징의 영향력	
긍정적 측면	가능적·구조적 통합성	활동과 참여	촉진요인	해당없음	
	생활기능				
부정적 측면	기능장애 (구조장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제한</li> <li>참여제한</li> </ul>	저해요인	해당없음	
	장애				

자료: 정일교 외(2007)에서 재정리



## 장애패러다임의 변화 - 이념 및 이론적 관점-

패러다임(paradigm)이란 동시대의 과학자나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이론과 법칙, 지식과 가치, 심지어 믿음이나 습관 같은 것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방법들의 원천이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기본이 된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장애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패러다임 또한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어떻게 재활시키는가에 있었다. 어떠한 의료, 교육, 직업 및 사회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을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능력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가 장애인복지와 사회보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즉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에서 회복되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재활의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일반적인 사회적 역할수행을 그 목적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이 의료, 교육, 직업 및 사회재활을 통하여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사회적 성찰이 요구된다(최윤영 · 이경준, 2010).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보면 장애인은 장애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장애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나 병적 측면으로 간주하여 재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여러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재활의 개념에 따르면 의료적인 치료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장애가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하고 증가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위 말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소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장애를 의료적 모델로 바라보았을때는 재활전문가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의료적 모델에 대한 반론과 함께 장애의 탈의료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재활전문가의 역할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자립생활운동이 대두됨에 따라 재활전문가의 역할과 권한의 축소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의 실천에서도 역량강화 개념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장애인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장애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계속하여 변해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최근의 장애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념적 변화와 실천적 변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01 / 이념적 접근의 패러다임의 변화

### 1) 정상화 이념

장애인 이념 가운데 최근에 특히 강조되는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이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회의 실현을 꾀하려는 생각이며,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장애인이라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리적 환경을 이루어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일반사회 속에 아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통합화(integration)의 생각과 직결되어진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정상화나 비장애인 속에 통합적으로 처우한다는 통합화는 현재 장애인 재활의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정상화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으로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비슷한 시기에 북미에서 유행하여 울펜스버그(Wolfensberger) 등에 의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정교화되었다. 이러한 정상

화의 이념은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반대하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이 이념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하루 일과에서의 정상적인 리듬, 일주일에 낮 시간의 6일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일주일의 밤 시간과 주말은 휴식을 취하는 일주일의 정상적인 리듬, 연중 특정 시기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는 등의 일년 동안의 리듬 등을 서비스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한다(이채식 · 이은영 · 이형열 · 김재익 · 전영록, 2013 재인용).

정상화는 또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시설 집중화에 대하여 반대한다. 정상화는 지역사회로 이전한다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탈시설화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지향점은 다르다. 탈시설화는 시설수용의 비인도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시설의 비용 측면을 보다 강조한 흐름이다. 즉, 탈시설화는 시설유지에 비합리적인 재정 투입에 반대하여 복지예산 삭감의 정치적 이유를 제공하였다. 반면에 정상화는 시설수용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재정 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수용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상화 이념이라는 가치는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확산되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정상화이념과 개념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서비스의 질 개선의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김용득 · 유동철, 2001).

이와 같은 정상화 원리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Nirje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사생활보호, 다양한 활동 및 상호 책임이 요구되는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리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통학과 통근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가질 여유가 있는 일주일의 일상적인 리듬, 가정생활양식의 변화와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년 동안의 일상적인 생활리듬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것
- ② 인생의 각 단계에 맞는 성장 경험의 기회를 가질 것
- ③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표현에 대해 존중할 것
- ④ 이성간의 관계는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협력하는 관계일 것
- ⑤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될 것

- 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수준이 보장될 것
- ⑦ 부모나 직원의 환경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일 것

또한 Nirje는 정상화의 원리에서 자기결정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은 다음과 같은 통합을 의미한다.

- ① 물리적 통합 : 지역사회에 있는 그룹홈에서의 생활. 다른 모든 시민과 같은 리듬을 경험하는 생활
- ② 기능적 통합 : 물리적 통합이 확대되는 것. 예를 들면 식당, 수영장, 교통수단 등을 보통 시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
- ③ 사회적 통합 : 지역사회 이웃, 학교, 직장 등에서 개인적, 상호적 사회관계, 일반적인 사회관계, 존경과 평가 등이 있는 것
- ④ 개인적 통합 : 생활상의 다양한 욕구가 가장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 중에서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
- ⑤ 사회체계적 통합 :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 성장과 성숙에의 기회, 자기결정을 통한 자아실현 등을 성취할 수 있는 것
- ⑥ 조직적 통합 : 행정기구나 서비스의 형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정상화에 대해 Nirje가 강조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정상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관점으로 흔히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같은 완벽한 상태를 정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정상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는 정상의 근사치 또는 닮은 꼴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정상은 항상 유토피아로 존재한다.

둘째, 정상에 대한 의학적 관점으로 정상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며,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나 이상 상태는 이러한 정상 범위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며, 중요한 것은 의학적 정상의 개념을 신체가 아닌 사회에 적용할 경우 많은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계적 관점으로 정상을 분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현상들은 정상곡선의 중앙으로 수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특이한 사례는 곡선의 극단에 위치하여 중앙으로부터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항상 수적인 명세서의 소수가 일방적으로 비정상에 속하며, 다수의 일방적인 횡포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넷째, 정상에 대한 규범적 관점은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적 전통과 규범의 관점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규범이 설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의식과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중요한 점은 규범이 변하고 있으며 사회마다 서로 다른 규범을 갖고 있을 때 정상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진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농아인이 다수 살고 있는 섬 지역에서는 비장애인이 수화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최소한 그 섬 내에서는 수화가 공용어이고 수화를 사용해야 정상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권선진, 2007).

## 2) 자립생활이념

자립생활이념은 최근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권한 자체가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에서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큰 흐름이다. 자립생활의 개념에 대해서 영국의 장애운동가인 Brisenden(1989)은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아무런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필요한 지원을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하여 제공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Oliver(1991)는 자립생활의 개념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설명하면서 ‘자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과 자조적(self-help, self-supporting)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능적, 심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거나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를 의존적이라고 말하고, 기능적 손상이나 심리적 장애의 수용과정, 혹은 자신감의 회복과정을 자립과정 또는 Independent Living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기능손상이 현존(現存)할지라도 자의(自意)에 의한 회복과정이 이루어지면 자립생활로 보고 있다. 또한 Ratzka(1992)는 자립생활은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며, 동등한 기회와 자존감(self-respect)을 가지려는 장애인들의 운동이자 이념임을 전제하며, 장애인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갖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Jones(1993) 또한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자신

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모든 일상의 활동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결정, 금전관리, 거주지 결정까지 모두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자립생활"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다른 사람에의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NCIL(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sup>4)</sup>)은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다. 즉, 미국의 개념정의에서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권을 최대한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생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립생활이란 한마디로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탈피를 통하여 주체자로서의 나를 되찾아가는 운동인 동시에 사회개혁과정인 것이며,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의 목표는 사회참여와 평등한 인권의 보장이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위험을 동반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자신이 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창조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 Independent Living이란 기존의 신체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립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가 당사자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정중화, 2003).

이와 같이 결국 장애인자립생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본인이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장애인당사자가 선택하고 결정된 권리에 대하여 위험요소(risk fact)를 동반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부여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립생활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립생활의 원칙으로는 다음의 여덟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양희택 · 정무성 · 노승현, 2007).

4) 전미국가립생활협의회 약자로 1982년에 조직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매년 조직적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자립생활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에 대한 종합적 정책건의도 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참여한다는 것

둘째, 장애인도 공평한 고용기회를 가질 것

셋째, 모든 장애영역의 장애인들에게 주택, 이동, 공동시설에 접근성을 보장할 것

넷째, 취업과 직업유지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다섯째, 적절한 무상 통합교육의 실시

여섯째, 임신과 육아, 그리고 입양의 권리보장

일곱째, 지역사회 내 경제, 사회, 문화, 놀이 등에 완전한 참여 보장

여덟째, 지역사회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이 보장된 상태로 자립적인 삶 보장

결국,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점과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점, 어떠한 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eJong(1979)은 자립생활의 이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다. 아무리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선택은 물론, 장애인을 대신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의 자기선택권(self-determination)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신뢰(self-reliance)로,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그들 자신의 자원이나 재능을 신뢰하는 것과 함께 권리와 이익도 스스로 쟁취한다.

세 번째는 정치·경제적 권리(political and economic rights)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활동에 완전하게, 자유롭게 참여하고,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자립생활 이념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와 자기선택권 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의 실현은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천이 동반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소비자주의 이념

본래 소비자주의는 경제학적 용어로 '소비자의 불만족에 대한 천명과 소비자 불만족의 개선책에 대한 조장' 또는 '판매자와의 관계에서의 구매자의 권리와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비자 주권이며, 이는 소비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제 서비스분야에서 소비의 주체로서 소비자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에서도 소비자를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배순영 · 이기준, 2000).

장애인복지에서 소비자주의는 미국의 자립생활(Independant Living)과 영국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모델의 등장과 함께 주요 패러다임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즉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모델은 사회적모델이 이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실현된 것으로 장애 당사자가 서비스의 주도권을 갖고 소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실천모델이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에서도 지역사회보호 원칙, 소비자 선택 원칙, 자립생활 원칙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라는 용어도 종래의 클라이언트라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낙인 되어온 용어의 한계를 지적한 것 일뿐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시혜적 차원을 넘어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으로서의 인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소비자 주권에 기반한 소비자주의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수혜적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이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개념은 지난 30여년 동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종래의 전문화 및 시설화, 임상기반의 서비스로부터 더욱 통합적이며 가정과 학교, 직장과 같은 지역사회중심 세팅으로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주도로부터 개인이나 가족주도로, 치료접근으로부터 완전통합 등 사회적 모델 접근으로 서비스 변화를 추동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회권적 권리로서의 소비자주의 개념은 아직 일반화된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경험에 따른 실천적 담론 형태에 머물러 있다(박경수, 2006).

#### 4) 장애학 담론 형성

장애학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장애학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여성운동 흑인운동, 환경운동, 반전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로 장애인 대중운동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장애학은 장애인 대중운동의 발전과 함께 장애인 대중운동이 만들어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장애학은 장애에 관한 학문이며, 장애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기존 장애를 주제로 한 학문영역은 의학, 재활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들 기존의 학문과 장애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 영역에서는 장애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애학은 '사회적 장애모형'에 기초한 사회적 장애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장애학 과정이 대학에 개설되고 있고, 장애학 전문저널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3년 장해학회가 구성되어 '장해학 연구'라는 학회지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5년 한국장애학회가 창립되어 세미나, 학회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장애학은 학제적 연구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하나의 분과학문이라기보다는 여러 학문영역들 간의 경계를 드나들며 사회학, 정치경제학, 사회정책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등의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들 중 장애학과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사회학을 꼽을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학의 핵심적 성격으로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권리확보를 위한 실천 지향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이는 장애학이라는 학문의 성립자체가 장애운동의 등장 및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石部元雄·柳本雄次,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장애인의 문제는 의학적·특수교육학적·사회복지학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장애문제의 확대와 재생산에 관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속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의

학적 접근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합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특수교육적, 사회복지적 접근은 의학적 접근보다 원인 규명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후적인 방법론의 개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들에 의한다면, 장애의 근본적인 규명에 의거한 문제해결은 요원해 보이며, 대중적인 문제 대처의 접근이 주를 이루게 된다(이준우·정지웅, 2014).

따라서 장애학은 기본적으로 실천적인 학문이며, 장애학의 성립자체가 장애운동의 발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론적 내용도 당연히 장애인 대중의 삶과 장애운동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학적 접근은 자립생활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장애모형을 대중화시키는데 실천적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石部元雄 외, 2000).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은 장애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인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중 사회적 모델의 입장에 가깝지만 그에 더해 장애문제에 대해 인류학적·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추가한다. 즉, 장애학은 장애에 대한 사회와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은 시대와 문화와 정치경제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령, 장애인-비장애인의 의학적 인 사실 구별이 비정상인-정상인의 사회와 국가적인 규범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국가나 대중의 암묵적인 승인이나 비장애인 위주의 이익관계 등이 개입되어 ‘장애인은 사회와 국가의 유지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부담을 안겨 주는 비정상인이다’라는 담론이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집단이나 제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의 행위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명제들을 ‘장애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이데올로기는 장애학 연구의 진전, 장애당사자의 인권의식 향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재활공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한 장애의 점진적 극복 등으로 점차 약화될 것이며, 이는 다시 장애학 담론의 확산으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이 희박하게 되며, 장애인의 심리적 사회통합까지 성취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리라 판단된다.

장애학 담론의 확산은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즉시적인 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복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의 정책 및 실천도 그에 따라 변화되어 설정되어 간다. 향후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사회적으로 왜곡된 인식으로 고통받고 차별받았던 장애인의 사회적 위상과 권익을 또 다른 차원에서 확보해 줄수 있는 문화적 담론의 확장과 재생산이 필요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장애학이라고 판단된다(이준우 외, 2014).

## 02 / 실천적 접근의 패러다임의 변화

### 1) 의료적·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장애는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으로부터 도출해 낸 다수의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큰 범주에서 기본적으로는 의료적·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로 장애를 개념화하는 의료적·개별적 모델과 주위 환경의 맥락에서 장애를 보는 사회적 모델이다(조한진·정은 외, 2013).

우선 의료적·개별적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적·개별적 모델은 의료재활, 심리재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애인문제는 본질을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의지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자립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의식한다. 무능력한 이들의 존재는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와 혜택도 거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무기력하고 의타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따라서 이 모델이 추구하는 지향은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기능의 회복, 심리적 문제의 치유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에 집중할 뿐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의료적 모델은 전문가와 장애인의 일방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즉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인은 순종하거나 순응함으로써 장애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의료재활과 심리재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재활은 전문가와 장애인의 관계를 전문적 관계로 보면서 전문가의 권위를 강조하는 반면 장애인은 전문가의 처방과 지시에 순종하는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전문가가 제시한

치료체계에 따라 장애인이 순응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인 장애를 치료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접근 방향은 질병으로 인식된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평가하여 직업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장벽을 개인적으로 극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정일교 외, 2007).

따라서 개별적 ·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문제의 접근이 신체기능의 치유에 역점을 두고 재활의학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활동에 의존한다.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과 처방, 그리고 보조용구 등을 통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결국 신체 기능의 손상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의료적 · 개별적 모델과는 달리 사회적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시각이 개인의 내면적 부적응에서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궁극적 문제가 개인의 역기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결여, 물리적 장벽, 제도화된 억압 등의 사회환경적 차별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개인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보다는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환경, 편견, 근거 없는 차별 등이 더욱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신체 기능의 손상은 사회가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환경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상의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은 장애인 자신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차별철폐를 위한 권익옹호의 주체로 활동하며, 자조적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모델은 다소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이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평등한 제도와 정책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사회정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사회행동적 모델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궁극적 이념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근본적으로 박탈되어 억압과 차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억압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 분리된 생활공간의 해체, 차별적 정책의 전환 등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적 요소를 구비하고 지원하는 접근 방법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임파워먼트 등의 방법이 있다(오혜경, 1999).

이와 같이 의료적·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지향하는 관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조한진 외, 2013).

〈표 3〉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구분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핵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비극 이론</li> <li>• 장애는 개인안에 존재하는 개인적 문제임</li> <li>• 의료전문가의 역할은 신체적 혹은 지적 손상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키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억압 이론</li> <li>• 장애인은 장애를 초래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li> <li>• 장애인은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부정적 사회적 태도 등 현대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음</li> </ul>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구조에 맞추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li> <li>•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질 높은 재활을 받기를 희망함</li> <li>• 서비스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비장애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관계의 성격임</li> <li>• 전문가의 기술과 지식을 강조하며 장애인은 소위 비장애인 세상의 요구에 적으라고 그 요구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정책의 목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li> <li>• 장애인은 사회내에서 조직적인 사회적배제에 부딪침</li> <li>• 사회변화는 장애인에게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통하여 일어남</li> <li>• 억압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의해 연합된 장애인의 개인적·집단적 책임을 강조함</li> <li>• 장애는 억압과 개인의 권리와 선택, 사회변화, 권한부여, 정치와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음</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는 순전히 의료적 현상으로 인식되며, 장애인이 살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인정하지 않음</li> <li>•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역사적으로 의료·준의료 전문가에게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이 부여되어 왔고, 전문가들은 변함없이 본질상 의료적인 아닌 순전히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을 억압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의해 연합된 집단적·동질적 존재로 가정함</li> <li>• 장애인 개인이 작용을 할수 있고, 또 그 때문에 유사한 결과를 얻기까지 다른 전략을 고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않음</li> <li>• 장애운동이 보는 방식처럼 억압되고 있다고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님</li> <li>• 어떻게 사회적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로 장애를 초래하는지 인과적 관련성이 불분명하게 남아 있으며, 쉽게 측정될 수도 없음</li> <li>• 지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li> </ul>

자료: 조한진·정은 외(2013)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적·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의 장애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의 변화는 의료적·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즉 사회는 비장애인이 주류가 되는 가치, 신념, 제도 등으로 유지 존속되어 왔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장애인은 개인적으로 신체적 손상에 의하여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할 뿐 사회가 그들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당당하게 사회의 주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존의 관점이 장애인의 생산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옴으로써 장애인의 존재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문제가 그들의 능력 손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주어진 편견과 차별, 무관심과 냉대, 사회적 장벽 등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장벽은 삶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부정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그들이 적응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에서 보듯이 장애인도 자기결정과 선택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활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며,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강화하고 개발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손광훈 외, 2004).

## 2) 권익옹호

우선 권익옹호<sup>5)</sup>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권익옹호는 변호,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영어의 권익옹호(advocacy)는 프랑스어 ‘voco’에서 유래하는 말로, ‘voco’라는 것은 영어로 ‘to call’이며 「목소리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권익옹호(advocacy)는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speak up for)을 의미한다. 조금 더 확장하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활동은 예전부터 존재했겠지만,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옹호서비

5)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김용득·윤재영·이동석·이호선·김재훈(2013)의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에서 발췌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스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3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영국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익옹호 활동은 모호한 것으로 남아있다. 또한 권익옹호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언을 확인하는 등의 재판과 관련된 활동에서 수행하는 전문가의 의무, 법적 책임, 기술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나 보건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취약한 이용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옹호는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주는 관점으로,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언급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아동의 교육욕구 주장, 취약한 피용자의 고용주로부터의 권익 찾기, 국가에 대한 복지서비스 요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권익옹호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옹호는 모든 사람은 존경되고 경청되어질 권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권리, 동일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회와 기여의 가능성을 가질 권리 등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취약해졌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활동 및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옹호의 개념은 장애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과 그들이 접근하는 서비스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Oliver, 1990, 1996).

따라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격려된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에 도전할 수 있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도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Monach & Spriggs, 1994). 또한 옹호는 참여, 이용자 역량강화, 자문(consultation)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옹호는 그들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얻고 지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싸워왔던 과정의 일부이었다. 또한 옹호는 전문가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옹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수준과 동일한 존엄성을 갖고 장애인을 대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Garbutt, 2012).

이와 같은 권익옹호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기초적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권익옹호를 상당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권익옹호는 지적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권익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권익옹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보호 중인 아동,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고령자 등을 포함한다. 권익옹호는 여성, 소수인종, 다른 문화 집단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권익옹호는 옹호 서비스 이용자가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하게 발맞추어 그들의 견해, 선호, 결정 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권익옹호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단 그들의 선택을 표현하면 그것이 실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넷째, 권익옹호는 동등한 권리를 수호하고,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와 반차별에 대한 투쟁은 권익옹호 개념의 주요부분이다. 권익옹호의 주요 목적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권익옹호는 홀로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와 그들의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는 것이다.

여섯째, 권익옹호에 정답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일곱째,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만 옹호할 수 있고, 또는 이용자 집단을 대신하여 옹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여덟째,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옹호인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 된다.

아홉째, 옹호인은 옹호 관계 내에서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 옹호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를 따라야 한다. 옹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이용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권익옹호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 4> 유형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표 4>는

옹호 유형들의 특성을 요약한 것인데, 자신 스스로의 권익옹호에는 자기옹호와 집단옹호가 해당되며, 외부로부터의 권익옹호에는 시민 옹호, 동료 옹호, 독립적인 전문가 옹호, 단기 옹호, 법률 옹호, 비지시적 옹호, 전자 옹호 등이 포함된다. 옹호 방법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옹호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외에도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국과 미국 등에서 명명되어진 옹호의 유형은 대부분 이 구분에 포함되어 있다.

〈표 4〉 권익옹호의 유형

구분	옹호 유형	주요 특징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와 체계적 옹호에 따른 구분
스스로 옹호 (Do-it-yourself advocacy)	자기옹호 self-advo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li> <li>개인 또는 집단</li> </ul>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 individual issue-based advocacy
	집단 옹호 collective advocacy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집단	일반적으로 원인/체계적 옹호(cause/systemic advocacy)
외부 옹호 (Outsider advocacy)	시민 옹호 citizen advocacy	장애인과 옹호인간의 장기적인 관계	장애인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을 다루는 개별적 옹호
	동료 옹호 peer advo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옹호인이 지원받는 장애인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li> <li>개인 또는 집단</li> </ul>	개별적, 종종 문제 중심 옹호 또한 집단적 체계적 옹호일 수도 있다.
	전문가 옹호 professional advocacy	훈련받고 급여를 받는 옹호인단기 옹호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문제중심 옹호
	법률 옹호 legal advocacy	옹호인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 및 재정적 관계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
	비지시적 옹호 non-directed advocacy	옹호인은 의사소통의 형태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사소통 역량이 부족한 장애인을 지원한다.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
	전자 옹호 e-advocacy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다른 유형의 옹호를 보완한다.	개별적 문제 중심 옹호 또는 체계적 옹호

(Boyland & Dalrymple, 2009)

###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강화, 역량강화, 세력화 등의 다양한 용어로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장애인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힘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파워먼트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내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같은 외부의 억압에 기초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의 억압에 직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문제를 정치사회적 거시 관점에서 이해하며 장애인과 사회환경 간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중의 하위 목표를 가진다. 최근에는 사회구조적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이다(김종일, 2003).

임파워먼트는 미래 지향적 관점을 가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인간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누구보다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과 해결책을 가장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은 맥락 안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는 사회적 환경 간의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도전과 기회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강조한다(정일교 외, 2007).

이와 같은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의 의식과 인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중심으로 임파워먼트의 실천적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문제인식과 자각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본질적 문제이기보다 사회적으로 강제된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권이 사회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각이 역량을 강화는 기본 과제가 된다.

둘째, 참여와 협력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 차별로 부각된 것이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참여는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화하는 필수 과정이다. 참여의 형태는 단순 참여에서부터 정책 입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쟁점을 다양화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셋째, 자원 및 지지 세력 확보이다. 사회복지에서 자원의 동원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기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을 비롯하여 장애인 문제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힘의 정도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달라질수 있으며, 사회적 힘의 정도에 따라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넷째, 역량강화이다. 인식과 참여, 자원동원 등의 과정을 거치며 클라이언트의 적극성으로 다양한 경험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문제 해결에 이르는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기술, 다양한 자원의 확보를 위한 조직화 등을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조휘일·강정숙 외, 2005).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것은 임파워먼트가 개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에서 임파워먼트가 가지는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먼트에서 장애인은 문제 해결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참여자이며 파트너이다. 장애인은 강점, 경험, 역량을 가진 원조 과정의 파트너로서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임파워먼트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강조한다. 사회환경에 의하여 주어진 일방적 불이익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차별로 인지하고 스스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사고를 조직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의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이 강화된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관계에서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나 억압을 해소하고 임파워먼트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나 억압을 해소하고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삶의 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입의 범주는 장애인 본인에게 제한하

지 않고, 가족,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장애인정책이나 제도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엄명용 · 노충래 외, 2008).

#### 4) 자기결정권

자기결정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항상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최선이라 생각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원소연, 2010). 이와 같은 자기결정은 사회사업 전문직 형성에서부터 핵심적인 가치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가 사회복지영역에서 구체화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이며, 이는 클라이언트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욕구와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줄 윤리적 의무가 부과된다(이영미, 2004).

자기결정이란 인간이 자기자신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행동이나 목적을 선택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둘째,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자유. 셋째, 다른 국가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국민 스스로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 등이다. 즉 자기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율성’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것은 의지적인 행동과 독립성, 자유 등으로 묘사되는 것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다 (김만지, 1993).

이와 같은 자기결정권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의 개념화의 변화로 한 사회 안에서 장애가 개념화 되는 방식은 그 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장애인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하는 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개념화는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장애인 스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정상화의 원칙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상화 원칙에서 말하듯이 장애인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장애인 본인의 자기결정력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선택과 위험의 존엄성의 이슈가 표면화되었고 논쟁거리가 되었다. 결국 법률적 보호를 통해서 선택하고 조절하는 주요한 사람이 되었다. 정상화의 원칙으로 인하여 자기결정은 중요한 교육적 성과로 여겨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생활, 자조, 그리고 자기옹호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이후 장애인관련 운동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한다. 즉, 독립적인 생활 운동, 소비자 조직, 그리고 자립단체이다. 1990년대 미국에는 500개 이상의 자기 옹호단체가 전국적으로 있으며 장애인의 옹호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로는 시민권리 보호에 의한 영향이다. 1976년 재활법, 1990년 ADA법 제정으로 장애인은 시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고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었다(김명실, 2008).

또한, 자기결정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오직 자신만의 의지로 선택하여 결정 할수 있음과 타인의 봉사적인 도움이나 어떠한 지도감독도 없이 긍정적인 의미의 발전 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직접적으로 행동 할 수 있음을 포함한 권리'를 말하는 자기결정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성은 자율적 행동으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타인 또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행동을 수행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기통제적 행동으로서 한 개인이 자신 및 환경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역량강화된 태도를 가지고 사건을 시작하고 반응하는 것으로써 한 개인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권위, 영향력을 끼치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적 태도를 가지고 행동인데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이 지향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미래상과 가까워질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성은 한 개인이 자기결정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준다(임지선, 2008).

## 참고 문헌

- 김명실(2008). 성인발달장애인의 부모태도와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지(1993). 사회사업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득 ·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김용득 · 윤재영 · 이동석 · 이호선 · 김재훈(2013).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 EM커뮤니티.
- 권선진(2007).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 박경수(2006). 장애인복지 소비자주의 관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유형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순영 · 이기춘(2000). 소비자의 지역사회공공서비스 소비와 관련변수. 한국소비자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pp189-225.
- 손광훈(2004). 『장애인복지론』. 현학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1).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 정일교 · 김만호(2007).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조한진 · 강민희 · 정은 · 조원일 · 광정란 · 전지혜 · 정희경(2013).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학지사.
- 조휘일 · 강정숙 · 권순미 · 권현진 · 김경희 · 양인순 · 윤정혜 · 이시연 · 이효선 · 원미순 · 전선영 · 최희수(200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현사.
- 양희택 · 정무성 · 노승현(2007).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 정중화(200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생활의 이론과 실제”. 장애인자립생활학교 강의 자료집.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영미(2004). 장애인의 자기결정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채식 · 이은영 · 이형렬 · 김재익 · 전영록(2013).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 이준우 · 정지웅(2014).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신정.
- 오혜경(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임지선(2008).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 · 뇌병변장애인의 자기결정권행사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명용 · 노총래 · 김용석(2008).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 원소연(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pp.267-289.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5).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최윤영 · 이경준(2010).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 Adolf D. Ratzka(1992). “Independent Living and Our Organizations”, Resource Kit for Independent Living, *Tools for Power*(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Independent Living Committee, April 1992).
- Brisenden, S.(1989). “A charter for personal care, in Progress”, 16. Disablenment Income Group.
- DeJong, G.(1979). *The movement for independent living: origins, ideology and implications for disability research*,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Jones, D.(1993). Informal cares and their elderly dependents: a community based longitudinal study, in Diana Rob-ins, Community Care: findings form Department of Health Funded research 1988-1992, London, HMSO.
- Oliver, M. (ed.)(1991). Social Work: “Disabled People and Disabling Environment” (London: Kingsley press).
- 蔦村多加志(2002). 『障害者福祉論』. 中央法規出版.
- 兒島美都子 · 成清美治 · 村井龍治(2001). 『障害者福祉概論』. 學文社.
- 大川弥生(2015). 일본 ICF 활용.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石部元雄 · 柳本雄次(2000). 『障害學入門』. 村福出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5장  
장애인 관련 법률  
바로 알기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 제5장\_장애인 관련 법률 바로 알기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윤 삼 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 시작하는 말

인간은 누구나 다르다. 못생긴 사람과 잘생긴 사람, 키가 작은 사람과 키가 큰 사람, 성  
마른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과 공부 잘하는 사람 등등.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이쁜이겠는가?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은 문화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다른 경험을 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 다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  
식될 뿐이다. 특히, 그 차이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집단의 중요 특성과 다를 경우 더  
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차이가 곧잘 차별로 이어지곤 한다.

차별은 '왕따' 처럼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방 차별' 처럼 지역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흑인 차별' 처럼 인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성 차별' 처럼 성별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차별은 힘 있는 다수가 힘 없는 소수에 가하는 폭력이다. 그 폭력  
의 정점에 '장애인 차별'이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보편적인 시련이다. 장애인은 집안에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노골적인 혹은 은밀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UN은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을 선포하고 「장애인권리협약」(2006년)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1998년 12월9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을 발표하였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는다. 특히,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 글의 목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법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및 과정

### 01 / 국내 배경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당시,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를테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에 실시한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실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한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20.9%)’ 이고 그 다음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18.5%)’ 이었다.

또 한국여성개발원이 2004년에 연구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우리 국민은 15가지 영역의 차별 가운데 장애인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7.6%)이고 그 다음으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 (21.6%)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3년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였다. 또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응답은 95.4%나 차지하는 등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조사들을 종합할 때,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별로 없던 시기였지만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차별을 받는 계층이라는 사실을 대중들은 잘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장애인 차별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생존, 고용, 교육,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 행정, 참정권, 가정, 건강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이 당하는 차별과 비교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당시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선연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뿐 실효성이 없었고 일반적인 차별과 다른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지만 기능과 역할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구제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 더해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다. 이후 전국의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약 이행을 압박하였고, 결국 2007년에 법률이 제정되었다.

## 02 / 국제 배경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1980년대 초부터 장애 문제 접근 방식을 시혜 및 온정 차원에서 권리 및 참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특히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내에 형성되었고, 국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 03 / 제정 과정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였다.

2002년 2월 부산의 장애인단체 열린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토순례대행진을 벌였고, 같은 해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청원을 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전국 50여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결성되었다. 2005년 9월 장추련은 민주노동당과의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작성하여 당시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6년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입법 추진중이던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그해 7월 정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였다.

한편,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6년 8월 관계부처, 장애인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였다.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안을 기초로 논의를 거듭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열린우리당에 제안하였고, 그 결과물이 12월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안도 제출되었다.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병합 심리하여 상임위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안이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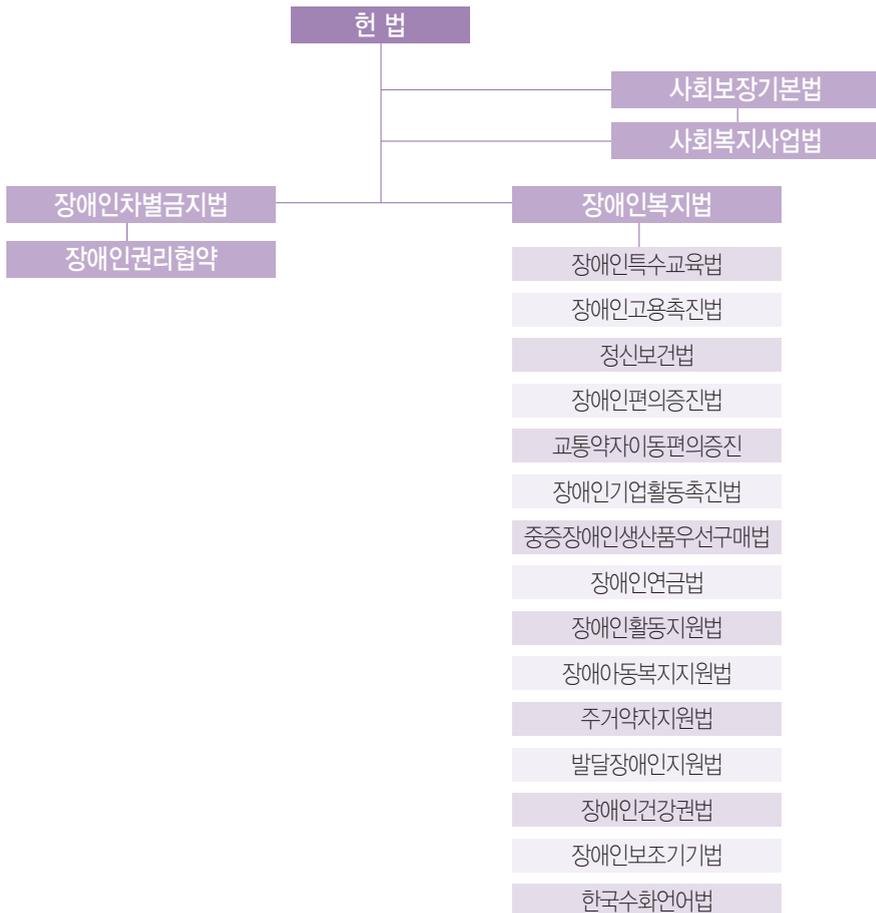
마침내 2007년 3월 6일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재적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1명 기권). 그리고 4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4월 10일 관보에 공포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면서 우리나라 장애 관련 법제는 '인권법'과 '서비스법' 이원체제가 확립되었다.

## 04 / 한국의 장애 관련 법제

한국의 장애 관련 법률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전부 개정) 제정을 시작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5년 <정신보건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8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2010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2013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등 17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됨으로써 실제로 장애 관련 법 규범은 모두 18개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고)

<표 1> 우리나라 장애 관련 법제



따라서 한국의 경우 법률의 종류와 숫자만 놓고 보면 복지일반, 교육, 고용, 인권, 접근성, 소득보장, 주거, 건강, 보조기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적어도 법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와 인권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 관련 법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서비스법과 인권법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 까닭은 국가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의 불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동적, 방어적으로 제정된 탓일 것이다. 즉, 그 때그때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 왔기 때문에 법률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 01 / 법률 구성

최초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6장 벌칙 등 모두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법의 체계와 조문의 수는 그대로이다.

### 02 / 주요 내용 및 해석

#### 제1장 총칙

##### 1) 장애 정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제1항)다.

이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과 거의 동일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과 비교할 때 매우 협소하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제2조 제7호)로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적 요인”이 추가된 것은 장애를 정의할 때 의료모형과 사회모형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 장애차별법(DDA)는 장애를 “실질적,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 활동 수행능력을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한다. 또 미국 장애인법(ADA)은 장애를 통상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때문에 주요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외에도 “현재 손상이 없지만 과거에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차별, “과거나 현재에 손상이 없음에도 손상을 가진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받는 차별까지 장애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호주 장애차별법(DDA)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전체나 일부의 상실, 신체 한 부분의 전체나 일부 상실, 신체에 손상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기관의 존재, 신체에 손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신체 일부분의 기능상실이나 용모 손상, 학습장애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상실, 사고 과정, 현실인식, 감정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결합이 있는 행동을 야기하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폭넓고 세세하게 규정한다.

## 2) 차별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의 종류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 4가지다.

①직접차별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이다. ②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③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고 ④광고를 통한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4호)를 말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조치의 경우는 차별의 예외로 한다.(제4조)

## 3) 정당한 편의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는 않고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당한 편의” 대신 “합리적 편의(resonable accommod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뜻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제2조)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앞서 제정된 스페인의 2003년 「장애인 기회평등·비차별·보편적 접근성법」은 “합리적 조정(Ajuste razonable)”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이고 실천적으로 물리적·사회적·태도적 환경을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부합시키는 조치”(제7.c조)로 정의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합리적인” 대신 “정당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장애인 편의제공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합리적/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른 소수자의 차별금지법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흑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주류 사회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대부분 해소되지만, 장애인 차별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편의 즉 접근권’을 보장해야 비로소 해결된다. 이처럼 합리적/정당한 편의제공은 모든 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개념이다.

#### 4) 적극적 조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제8조)

여기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란 소수인종,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우대조치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64년 미국 시민권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적극적 조치’는 단순히 소수자에게 특정한 우대조치나 혜택을 주어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 억압에 대한 ‘역사적 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제2장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의 영역은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6가지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보다 적용 영역이 넓다. 하지만 다소 선언적인 조항이 많아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실제로 법적 구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 1) 고용

사용자는 고용의 모든 단계, 즉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제2항) 노동조합에 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은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만 있는 독특한 조항이다.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영역은 ①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④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보조기구 설치, 그리고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 보조인 배치 등이다.(제11조)

또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 2) 교육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 또는 거절할 수 없다.(제13조 제1항) 또 특정 수업, 실험과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제13조 제4항)

오늘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교육책임자는 거의 없어졌으나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아직도 왕왕 있다. 일례를 들자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장애 학생들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숨지지 않았다. 수행여행지인 제주도로 가는 교통편이 비장애 학생들은 여객선이었고 장애 학생들은 비행기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런 방식은 장애 학생들을 수학여행에서 ‘제한’ 하는 것이다.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영역은 ①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교육보조인력의 배치 ③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단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④한국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등이다.(제14조)

### 3)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3절은 재화와 용역 제공에서의 차별금지(제15조),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에서의 차별금지(제16조),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제17조), 시설물 접근·이용에 대한 차별금지(제18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차별금지(제19조), 전자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0조),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금지(제24조), 체육활동에서 차별금지(제25조) 등 광범위한 차별 영역을 규정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영역은 ①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한국수어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②방송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③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등)가 있다. 그리고 ④출판물 및 영상물 생산, 제작, 또는 배급업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제21조)

하지만 오늘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서 점차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조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 수행 또는 권한 행사를 할 때 ①허가, 신고, 인가 등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②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제26조 제3항)

또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조 제6항) 또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6조 제7항)

여기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정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고 규정한다.

## 5) 모 · 부성권 · 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 부성권 차별 금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양 자격 제한의 금지, 임신 · 출산 · 양육 등에서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규정한다.(제28조) 또 성적자기결정권, 가정이나 시설에 의한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이나 박탈의 금지를 규정한다.(제29조)

이처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 6)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게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 박탈하면 안 된다. 특히, 복지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 생활인의 면접권과 외부소통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제30조)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31조 제2항)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는 ‘괴롭힘’, ‘집단따돌림’, ‘모욕적 언어’ 따위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가령,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항)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5항)

‘괴롭힘’ 과 ‘집단따돌림’ 등을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 역시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장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제33조)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제35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장애인 중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제37조)를 다룬다.

원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칙은 성별, 연령별, 장애 유형별로 분리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장애 여성들이 ‘이중차별’ 논리를 강하게 주장한 결과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역시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 중 하나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1)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시정기구(권고기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 다만,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사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내세워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시정기구로 결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38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진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진정은 각하된다.

#### 2) 법무부 : 시정명령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42조) 법무부장관은 ①차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②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이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인 경우로서 ③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다’.(제43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진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매우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설령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장관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실제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권을 발동한 경우는 거의 없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1) 손해배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장애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제46조 제1항) 하지만 같은 조항 후단에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사실상 손해배상을 어렵게 만든다. 피의자가 자신의 차별행위를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적극 항변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다행스러운 것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제46조 제2항)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같은 ‘상대방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차별 피해자가 입증할 부담을 줄여준다.

### 2) 입증책임 배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이른바 ‘입증책임 배분 원리’를 규정한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법률가와 장애인 사회는 ‘입증책임 배분’ 대신 ‘입증책임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법률에 그런 사례가 전문한 상황이어서 관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30조에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른바 우리나라 최초의 ‘입증책임 전환 원리’가 명문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

례를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를 개정할 책무가 장애인 사회에 생겼다.

### 3) 법원의 구제조치

한편, 법원은 ①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이나 중에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②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을 할 수 있고, ③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8조)

## 제6장 벌칙

### 1)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그런데 문제는 ‘악의적임’을 판단할 때 법원은 ①차별의 고의성 ②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해야 한다. (제49조 제2항)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에 관한 단서 조항처럼, 제49조 제2항은 차별을 가해자에 대한 벌칙 부과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보복성, 피해 내용과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차별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과연 얼마나 될까?

### 2) 과태료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0조)

장애인 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이행강제금제도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로 대체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만족해야 했다.



##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이 강한 법률이다. 15년 전 선구적인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이 법률이 처음 국내에서 쟁점이 되었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직접 만든 초안을 들고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치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설득하여 마침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모두를 흥분시켰다. 전체 장애인 사회가 하나의 쟁점을 중심으로 대동하고 단결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소수자 인권법 입법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훌륭한 법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과업이 장애인 사회에 놓여 있다.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고, 나아가 사회 변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재활과 온정 패러다임을 밀어내고 지역사회 패러다임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 권리와 파워가 없다면 복지의 확대도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 모든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 조항들을 차츰 개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 법률은 개념이 협소하거나 모호하고,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입증책임 전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법률 제정 때 보여준 그 열의가 있다면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행, 관람, 예술활동,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와 욕망에 대응하는 차별금지 규정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당시에는 장애인 ‘집단’의 권리가 대세였다면, 앞으로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욕구와 권리가 분출할 것이다.

무수한 역사적 증거에서 보듯이, 장애인 사회의 진보는 전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해지니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6장  
편견과 차별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제6장\_편견과 차별

#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sup>1)</sup>

이 인 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때로는 물건이 될 수 있고, 음식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취향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물건이나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 대한 것이라면 어떠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특정집단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가? 예를 들어, 사업주이거나 공무원, 의사가 특정집단에 치우친 생각이나 부정적 견해를 가진다면 말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다면, 특정집단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거나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하거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그것은 편견 이상의 '장애인 차별'이 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또는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례를 재구성하였으며, 판단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결정문의 핵심내용을 첨부하였다.



## 일할 권리 침해 사례

### 01 /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해고하면 안돼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8진차1213 2009. 11. 6.자 결정)

손에 화상을 입어 왼쪽 손가락이 3개만 있는 지체장애자인데, P라는 홍보대행사에 입사지원 을 해서 1·2차 면접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첫 출근을 하였는데, 출근 첫 날 저녁에 회사 사장이 전화로 본인의 왼손으로 인해 회사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홍보대행사에서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차별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되나요?
- 정말 손가락이 없으면, 홍보대행사에서 일하기가 곤란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장애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려면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용주는 장애 존재와 업무수행 성질 상의 불가피한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왼손에 장애가 있는 진정인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에 해당할 뿐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피해자가 복직을 희망하지 않아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한다.

## 02 / 채용기준에 장애인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면 차별이에요.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10진정0480200, 2011. 9. 27.자 결정)

본인은 청각장애 2급의 이공계열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희망하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났는데, 응시자의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이 중증 청각장애인은 도달할 수 없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원서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준 아닌가요?

### (1) 생각해보기

-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도 이것도 차별일까요?
-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예,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듣기점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점수를 환산하여 처리한다.

### (2) 인권위 결정

-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에 있어서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건청인과 동일한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또한 피진정인(고용주)이 모집한 채용 예정직무내용을 감안할 때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직무수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고용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증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03 /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14진정0632700, 2015. 8. 20.자 결정)

진정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다리 관절염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2014년도 교원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 공헌도 항목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합산일이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 (1) 생각해보기

-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한 것인데, 이것도 차별일까요?
- 장애인은 재활치료나 정기적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병원을 가야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장애인들은 항상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예, 휠체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책상·경사로·승강기·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유 공간 등의 마련,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또는 필담을 나눌 수 있는 메신저 등

#### (2) 인권위 결정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고용에 있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04 / 각종 자격·평가시험에서 장애인이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국어능력인증시험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12진정0519200 결정, 2013. 6. 18.자 결정)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2012년 5월에 (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2교시 쓰기 시험의 경우 문제의 반 정도를 100자에서 300자까지의 답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뇌병변 장애가 있다 보니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시간 연장 등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을 경우에 쓰기에 곤란을 겪고, 결국 점수가 낮아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고, 취직에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것도 차별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신체적으로 다른 조건과 상황을 가진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시험이나 평가를 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쓰기에 곤란을 겪는 사람(상지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연장이나 답안지 대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사시험지 및 확대시험지 제공 등

### (2) 인권위 결정

- 국어능력인증시험 결과는 언론사·공기업 등への 입사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 등의 입학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뇌병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은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국가시험 서비스 제공 매뉴얼이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안전행 정부는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재)○○○○문화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

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16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피진정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어능력인증시험 시 글씨를 쓸 때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이에, (재)○○○○문화연구원 이사장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교육받을 권리 침해 사례

### 01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 강요, 수업참여를 거부하면 안돼요~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불허(08진차623 · 08진차648 병합, 2008. 12. 22.자 결정)

뇌병변 장애 1급입니다. 2008년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처리되었습니다.

모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고, 모든 기초과목도 이수하였고, 더욱이 단독으로 응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장애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뇌병변장애인이 사학과 박사과정(역사학자 또는 고고학자)에 도전한 것은 무모한 일일까요?
- 뇌병변 장애로 인해 사학자료의 수집이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말로 하는 시험에서 점수를 낮게 주었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 학교는 이 학생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설령 신체적인 장애가 자료의 수집 및 발굴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인 등의 활용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므로 진정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결정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라 판단한다.
- 또한 응시자가 구술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운용함으로써 진정한 구술시험에서

자신의 지적능력, 사고능력,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학교에 진정인(장애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학급에서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10-진정-0710700, 2012. 1. 10.자 결정)

00광역시 소재 00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 같은 반 학생 000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아들에게만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 8. 아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였으나 담임교사는 전화상으로 등교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학생에게 유리한 것 일까요?
- 학교의 처분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 (2) 인권위 결정

- 피진정인(담임교사)은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수업을 포함한 학급활동에서의 참여는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조치는 관련법령 및 학교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또한 폭력사건에 대한 학교자체조사에서 상대학생과 학급동료 및 교사들은 서면 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수업참여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의 교육에서의 차별행위이기에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의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02 / 직업학교나 학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거부하면 차별이에요~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14진정0870400, 2015. 1. 19.자 결정)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나 구화자로 일반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업훈련을 받고자 △△△△직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 (1) 생각해보기

- 위 사례와 같이 청각장애인은 모두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교육 받기 어려운 것일까요?
- 이 학원은 청각장애인 수강신청자를 어떻게 응대했어야 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입학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장애인에게 교육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교육차별금지)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해당 직업전문학교에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03 / 학교조사과정에서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조사를 하면 안돼요~

####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 강요(14진정0309200, 2014. 11. 17.자 결정)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중복장애 1급)으로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장애학생 조사 시에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생(아동)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이 조사를 받게 될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학교의 장과 교감은 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진정인 등 신뢰관계자 동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진술 조력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 역시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수정·조정하지도 않았고 조사과정 중 절반 정도를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최종 확인서도 읽어보지 않는 등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러한 학교관계자들의 행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관계자 및 진술 조력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2조, 제40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학교장에게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일상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침해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 01 / 횡단보도가 없어 길을 건널 수 없다면?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14진정0547800, 2015. 3. 30.자 결정)

○○광역시 ○○역 교차로 근방의 □□대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승강기가 있는 곳까지 700m 이상을 우회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 (1) 생각해보기

-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보도만 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엇이 우선일까요?

예) 자동차와 사람, 보행자 우선의 원칙, 보행환경의 중요성

#### (2) 인권위 결정

- ○○역 근방의 ○○대로를 휠체어 장애인이 횡단하려 하면 승강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700여 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침해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 교통수단, 토지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다.
- ○○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증가한다거나, 지하사가 민원 발생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지방경찰청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 교차로에서 ○○교 사이의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02 / 장애인이라고 금융이나 신용거래에서 차별하면 안돼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청각장애인 차별(10진정2910·3608 병합 결정, 2010. 8. 25.자 결정)

배우자가 청각장애인으로 가족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카드회사로부터 “청각장애인이라서 내구성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며칠 후 카드회사는 “가족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음성확인의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있어서 카드회사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청각장애인인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하였는데, 청각장애인에 맞는 본인확인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만나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합니다.

### (1) 생각해보기

- 금융이나 보험과 같은 것은 본인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과 의사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멀리 떨어져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할까요?
- 예) 영상통화, 실시간채팅 등

### (2) 인권위 결정

- 청각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본인 동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또는 방문 확인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해당 카드회사에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족카드 발급을 원하면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장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 앞으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보험회사의 대출거부 차별 (10진정46, 2010. 7. 19.자 결정)

동생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동생이 인천 ○○○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생명 ○○지점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천 5백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고, 동생은 대출을 갚을 능력도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 (1) 생각해보기

- 은행은 왜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았을까요?

예) 돈을 못 갚을까봐, 장애인이 걱정돼서, 지적장애인이어서, 의사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되어서

-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대출을 거부하게 된다면 지적장애인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까요?

예)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대출금의 사용용도나 대출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 (2) 인권위 결정

- 피해자의 대출목적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를 받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현재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하루 매출을 정산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단지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명의 절차 없이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른 피진정인의 대출 거부 사유에 있어서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7조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이다.

- 따라서 피해자의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금융위원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 03 / 장애인이라고 임대를 거부하거나 이사를 못 오게 하면 차별이에요~

#### 주택 임대시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2016. 2. 17.자 결정)

임대차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동산 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차 광고를 냈고, 한 청각장애인으로 부터 임차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임대자를 찾았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기로 약속하였고, 새 임차인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집주인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세입자와 소통할 일이 많은데 언어장애인은 곤란하다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청각장애인에게 집을 빌려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어려움은 해결이 불가능할까요?
- 장애인이라고 집을 빌려주지 않거나, 이사를 오지 못하게 한다면 장애인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요?
- 집 근처에 장애인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이사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주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04 / 장애인고객도 비장애인 고객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요~

###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차별 (09진차1012 · 10진정3967 병합 2010. 8. 9.자 결정)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나, 은행에서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제대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뱅킹 이용 시에 필요한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텔레뱅킹을 이용하고 있어서 ○○은행 본점에 점자보안카드 발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입니다.

#### (1) 생각해보기

- 요근래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은행에만 가야한다면 시각장애인은 은행거래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 은행거래를 할 때 장애인들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은 이 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글을 잘 쓸 수 없는 장애인(시각, 상지장애인)에게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 은행은 이런 장애인 고객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 장애인 고객이 비장애인 고객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2) 인권위 결정

- ○○은행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05 / 장애인이 소리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해요.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병합) 결정, 2012. 5. 1.자)

방송사들이 운영·관리하는 웹 사이트들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때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 반복되는 메뉴, 건너뛰기 기능, 회원가입시 보안문자 음성 정보, 각종 서식의 레이블, 논리적인 순서의 메뉴구성 등이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란한 그래픽 등 저시력자의 웹접근성 저해 요소가 존재하고 장애인 전용사이트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 (1) 생각해보기

- 인터넷 접근이 안 될 때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리함이 있을까요?
- 시각장애인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 시각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3사는 3차례, ○○지역방송사는 1차례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준수율이 각각 53.9%, 36.4%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시 음성정보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무료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 이에 지상파 방송3사 및 ○○지역방송사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과, 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으로 자막, 원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제공 방식에 있어서도 자막을 음성과 동기화시킨 폐쇄자막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의 형태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06 / 장애인은 무성적이거나 중성적 존재가 아니에요~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공용설치로 인한 이용차별(07진차962, 2009. 5. 25.자 결정)

○○계곡과 ○○꿈나무도서관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모두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었는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 (1) 생각해보기

- 장애인화장실은 왜 하나일까요?
-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는 것이 차별일까요?
-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 (2) 인권위 결정

- 「편의증진법시행령」상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동반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이용의 실용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설치이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첫째,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둘째,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셋째,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남녀 구분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남녀로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 구분하여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음과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계곡과 ○○교육문화센터건물에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07 / 편의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차별이에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11-진정-0353900, 2011. 12. 19.자 결정)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하였습니다.

승강기가 있어도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상가는 장애인은 오지 말라는 것인가요?

### (1) 생각해보기

- 승강기 앞에 말뚝을 박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이런 사례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예) 경사로의 경사가 급경사인 경우, 유도블록이 깨져있거나 잘못 설치된 경우, 보도에 말뚝을 박은 경우

### (2) 인권위 결정

-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가에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강기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별행위이다.
- 따라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08 / 장애를 이유로 다른 요금이나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의 차등 부과(11진정0555300, 2012. 5. 25.자 결정)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이사를 올 당시부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층은 원래 승강기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2010. 2월부터 2012. 2월까지 2년 동안 타 세대보다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매월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은 승강기 사용이 불가피한데, 앞집 세대에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1) 생각해보기

-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2배의 요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요금이나 비싼 요금을 내야한다면 정당한 일일까요?

### (2) 인권위 결정

-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한 2층 거주 세대는 앞집 세대가 승강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2층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대체수단의 선택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2층 거주세대에게 앞집 세대가 승강기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장애인 세대에게 2배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2세대분의 승강기 전기료 납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 이에 향후 승강기 전기료 부과에 있어서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09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과 한 몸이에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08진인2825, 08진차877, 08진차874(병합), 2009. 9. 14.자 결정)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들인데, 2008. 7. 23.과 같은 달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복지 및 예산확충을 위한 촛불집회를 하던 중,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휠체어를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앞뒤로 흔들어서 휠체어에서 신체를 분리시켜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10여명의 휠체어가 부서지고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 나뉘는 등 물질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휠체어 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 휠체어와 같이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조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지체장애인에게 의족이나 의수 등
- 불가피하게 분리해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의하면, 보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중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기구로써 신체의 일부로 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다.
- 장애인에게 있어 휠체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조기구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분리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및 모멸감을 넘어서서 신체활동의 급격한 제약을 초래함으로써, 인격권을 비롯하여, 신

체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그리고 주거이전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이동권 등 중대하고 포괄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휠체어 분리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져야할 차별금지 및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연유하는 위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이동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 10 / 장애인도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제한 (11진정0371500 결정, 2012. 6. 13.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본관 및 ○○시립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층의 시청각실 및 건물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실, 학습실 등을 아예 이용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활동, 정보접근, 교양함양, 학습기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 (1) 생각해보기

- 2층에 보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길이 막혀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 만약 도서관에서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으니 휠체어를 들어서 2층에 올려준다고 한다면 차별이 아닐까요?
- 왜 이 도서관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 (2) 인권위 결정

- 공공도서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도서관의 지하층과 2층 이상으로의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 제1항·제2항에 의한 장애인 차별이다.
- 이에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진정도서관 내 자료실, 열람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과 ○○시립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IV

## 행정·사법절차에서의 차별

### 01 / 행정·사법기관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08진차 728, 2008. 7. 23.자 결정)

1급 시각장애인인데 지역재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협상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점자로 인쇄하여 재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구두로 그 설명을 대신해주었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자신의 재산이나 신체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말로만 설명해준다면 충분할까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행정기관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 이렇게 개인과 공적인 관계를 맺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런 기관들은 장애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 예) 장애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장애인이 요구할 때에는 점자, 안내,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2) 인권위 결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협의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내역을 개별 통지함에 있어,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인식할 수 없는 활자 인쇄물로 통지한 것은 진정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에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인에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 이에 진정인이 보상협의안내문을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로 인쇄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점자 인쇄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설명을 대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광역시장에게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과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02 / 장애인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해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917, 2008.12.3.자 권고)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서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를 위하여 광진구에 소재한 OO교회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출입구에 10cm정도의 단차가 있어서 함께 동행한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 (1) 생각해보기

- 투표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장애인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과 장비가 필요할까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따라 생각해 보세요

### (2) 인권위 결정

- OO선거관리위원회는 OO1동 제4투표소를 OO교회 1층에 설치하면서 입구에 있는 10cm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임시경사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피진정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입구의 단차가 10cm 정도여서 투표도우미 또는 선거관계인들이 장애인을 직접 들어서 이동시키는 방법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에 의한 실현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편의라고 보아야 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로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선거권자가 다른 투표자나 선거관계인의 호의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쉽게 투표 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투표도우미를 배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을 권고한다.





## 장애인 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괴롭힘 등)

### 01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15진정0070300, 2015. 3. 30.자 결정)

2015. 1. 7. 장애인거주시설 △△△의 부원장이 부원장보다 나이가 많은 장애인에게 다른 거주인과 다투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깔고 앉아 제압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장애인에 대한 폭력(언어·물리적·정서적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 허용될까요?, 허용될 수 있을까요?
-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폭력으로 제지해야 할까요? 장애인 도전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외에도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비하하거나 흉내를 내는 것도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인권위 결정

- 피진정인(부원장)이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개입하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하였어야 하고, 피해자의 신체활동을 직접 제약하고 피진정인보다 연상인 피해자를 꾸짖는 행위는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행동 개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부원장)을 이 사건 시설 아닌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전보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시설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02 / 장애인 의사에 반해 예배참석이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예요~

예배 참석 및 헌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11진정0306100, 2012. 2. 13.자 결정)

모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던 직원인데, 시설의 시설장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외출을 제한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인들에게 강제로 십일조, 헌금,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는데, 직원들이 직장에 다니는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십일조를 걷어가고, 생활인들의 통장에서 헌금을 인출하여 주일에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을 내게 합니다.

지난 3월에는 ○○ 지역에서 개최된 아스콘·레미콘 공장 입주 반대 궐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였고, 아침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아침식사를 주지 않는 등 생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위 사례에서 종교집회참석이나 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행사에 장애인을 동원한 것은 왜 안 되는 일일까요?
- 장애인의 물건, 재산의 활용하거나 처분하려 할 때 또는 장애인이 참여해야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생활인들을 반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시키고 예배 참석을 이유로 생활인에 대한 외출을 제한하며, 궐기대회에 생활인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거주생활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 또한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십일조, 헌금, 후원금 등을 내게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아침식사 미제공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매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생활인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아침식사 시간에 늦은 생활인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광역시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서 십일조 및 현금 등 금지와 함께 생활인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거주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십일조 및 현금 등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 종교 활동 참여에 수반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강요와 거주 생활인에 대한 건강권 등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을 권고한다.

### 03 /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장애인 의사에 반해 금전을 착취하면 안돼요~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2011. 10. 18.자 결정)

피해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현재 ○○○도 ○○군 △△면사무소 ○○과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넷째 형이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피해자 모르게 적금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의 금전을 착취하였습니다.

#### (1) 생각해보기

- 가까운 사람이라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물건, 금전, 재산을 마음대로 사 용하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 장애인을 대신해서 금전이나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인권위 결정

- 피해자의 넷째 형은 피해자 소유의 금융자산을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지적장애 를 동반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가족 및 가정 내에서 장애의 특성을 이용하여 장애인 동생의 금전을 착취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 형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진정인 1의 행위가 가족 내 형제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 넷째 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6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과 피해자의 통장·도장·신용카드·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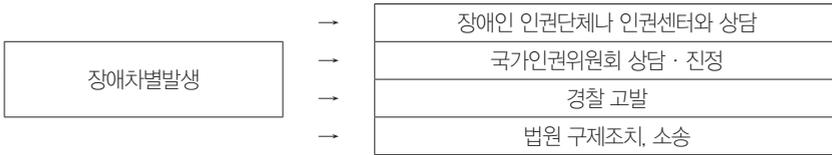




## 장애인 인권 침해 대응방법

### 01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진정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참거나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6하 원칙(언제, 누가, 누구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으로 정리를 해서 가까운 장애인 인권단체나 장애인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 방문상담 : 인권상담센터(지역사무소) 직접 방문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방법 : 홈페이지(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웹

### 02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증거자료(예, 사진, 동영상, 녹음자료, 목격자 진술 등)가 있으면 조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울러 조사에서 결정까지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도 있으나, 9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7장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에 대하여

이 석 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 제7장\_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에 대하여

이 석 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 들어가며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10억장애인<sup>1)</sup>은 물론, 온 인류에게도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인권 A, B규약의 제정 이래 인권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제사회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성, 생명, 생존권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하였다. 뒤이어 1982년에는 장애인 관련 세계행동 프로그램에 인권과 장애 관련 항목을 포함하면서 장애문제를 개인의 재활이나 시혜적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권리모델의 접근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한국보건사

1) 2011년 WHO 발행한 '세계장애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5%를 장애인으로 추산하고 있다.

회연구원, 2006). 이것은 장애인이 더 이상 재활과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국제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선언이나 행동계획처럼 각국 정부의 참여를 호소하고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각국 정부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은 1987년 UN총회에서 이탈리아 정부의 제안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어, 이후 1989년 스웨덴, 2000년 중국정부의 제안에 따라 논의가 이어졌으나(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다른 인권협약과의 중복성, 재정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01년에서야 멕시코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결의되었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은 8번째 국제인권협약으로서 중요한 인권문서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권의 특정한 기본적 권리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긴 시간에 걸친 인간의 도덕적 발전의 산물로서(인권의 발견. 윌리엄 J. 텔벗, 2011),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는 인권을 넘어 차이를 이유로 인간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저항을 통해 인권의 외연을 확장해가는 인권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인권

이 장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정에서 있었던 논쟁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애인권리협약만의 특성을 짚어보고자, 보편성과 특수성,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개인의 이동, 법 앞의 평등, 자립생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01 /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립

일반적으로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된다. 인권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인간’인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인권에서 배제될 이유도, 특별한 권리가 주어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기존의 인권협약들이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협약으로도 충분히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권의 보편성을 이유로 별도의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반대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위해 연대를 조직하고 활동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제정추진연대’<sup>2)</sup>의 한국초안 작성을 위한 논의과정에서도 장애의 특수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 장애인이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어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2)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장애인단체들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하였다. 추진연대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완성하는데 국내 장애인운동과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초안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과 관련된 문서, 특별위원회의 논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한국초안을 작성하여 한국정부, 국제장애인단체, 특별위원회에 참가한 각 국 정부대표를 상대로 다양한 로비활동을 벌여 장애여성, 이동권, 자립생활 조항을 신설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기존의 인권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이 어떻게 하면 서로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권’의 보편성과 ‘장애’의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협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다.

보편적 인권,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논쟁의 결과,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에서 국제인권현장 원칙, 세계인권선언 및 7대 협약<sup>3)</sup>의 정신을 이어받아, 장애인도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인권 향유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와 욕구를 재확인하고(전문 a,b,c,d),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경험과 특수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의 다양성 인정, 선택의 자유, 개인의 자율 및 자립, 당사자의 참여, 장애인의 완전함(고유성), 복합적이며 다중적인 차별,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유사한 보편과 특수 논쟁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조항의 논의과정에서도 있었다. 한국정부가 제3차 특별위원회<sup>4)</sup>에서 장애여성 별도 조항을 제안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협약이 추구해야 할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집단별로 조항을 신설하게 될 경우 장애인,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를 가진 원주민 등 각각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EU를 중심으로 반대한 것이다(UN 장애인권리협약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에 대해 한국의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보편적 접근으로서의 장애여성 문제를 협약 내 주류화(Mainstreaming)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실질적인 권리의 실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또한 장애여성의 문제는 모든 이슈에 관통하는 문제로 다른 여타의 집단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별도조항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4) 2001년 12월 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안을 받아들여 2002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같은 해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의 조항에는 핵심원칙<sup>5)</sup>만 언급하고, 세부사항들은 관련조항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하였다. 다중적이며 복합적인 차별이라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강조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권향유를 위한 조치들에 성인지 관점<sup>6)</sup>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여성 문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장애인지관점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과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 보고, 두 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토론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여성관련 정책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감수성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에도 장애여성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비장애여성 상담소를 장애여성이 이용할 경우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 와 '여성' 이라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는 상담 및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역량도 필요하므로 별도의 특화된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두입장이 어떻게 하면 상호 보완하면서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와 국내법(장애인복지법)의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를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표해 보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및 장애인 개념이 도입되면 장애인정책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지 발표해 봅시다.

## 02 /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적용해야할 주요한 원칙들을 제3조 일반원칙<sup>7)</sup>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중 접근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핵심요소로서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5) 제6조 장애여성 조항에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차별,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행사 및 향유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전문 (며)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7) 제3조 일반원칙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

손상을 가진 사람이 장애를 겪게(갖게)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이다. 법과 제도, 정책의 기획, 집행/평가의 단계에서 장애인이 철저히 소외됨으로써, 장애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접근성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것이다. 또한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사회이다. 접근성은 집단의 개념으로 어떤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실현<sup>8)</sup>의 의무를 가진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정의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sup>9)</sup>의 거부를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또한 합리적 편의제공은 개인의 개념으로 접근성의 집단의 개념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접근성은 불특정 다수(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의 접근을 최대한 가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개인의 상태(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와 편의제공이 필요한 상황적 맥락에 맞추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와 상황에 따른 맥락에 따라 필요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접근성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원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 편의제공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disproportionate or undue hardship)<sup>10)</sup>을 지우지 아니할 경우 바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제공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혼재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편의제공이 접근성의 일부분처럼 이해될 위험성이 있어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8) 점진적 실현의 원칙(progressive realization) -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 고용, 건강, 재활, 사회보장 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과 같이 자원의 활성화가 절대적인 영역에서 협약이 언급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 장애인의 사회권을 실현함에 있어 점진적 원칙을 전제로 하되 가능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의무화 하고 즉각적인 국제법이 적용 가능한 영역에 대한 고의적 회피를 금하고 있음(UN 장애인권리협약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9)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은 장애인단체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도 해석하고 있는데 합리적 편의제공은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합리적 절충을, 정당한 편의제공은 합리적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정당한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든 적절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disproportionate or undue hardship). 국가인권위원회 해설서는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한국DPI 장애인권리협약 날세우기에서는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으로 해석하고 있다. -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 내에서 그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기업이나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 자원, 편의시설의 특성 및 비용 등 사업의 운영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점진적 실현’, ‘과도한 부담’은 이해 당사자에 따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의 적절함, 비용과 변형의 과도함에 대한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산출기준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각자 발표하고 토론해 봅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합리적 편의제공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비교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 03 / 개인의 이동

이동권은 제6조 장애여성과 제19조 자립생활 조항과 함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제정추진 연대의 제안에 따라 권리협약의 조항으로 삽입되었다. 이 조항도 제정 당시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접근성의 한 부분으로서 제9조 접근성 조항에 포함하자는 의견과 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은 다른 개념이므로 독립적인 조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이동 조항과 제9조 접근성 조항과의 내용의 중복을 피하면서 제20조 개인의 이동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이동권 조항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최대한 장애인 개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동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 비장애인에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자유권에 속하는 권리이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이동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등 이동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은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보조기기 및 장치들이 장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보조기기 및 장치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입비용의 어느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토론을 해봅시다.

## 04 / 법 앞의 평등

법적권한은 추상적 도덕규범인 인권을 실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명문화된 법에 대한 권한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제12조 법 앞의 평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인 의무의 준수와 권리향유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실정법으로서 법과 제도는 인권의 기본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절차와 방법,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권한의 행사는 인권의 향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정부의 입장은 장애인의 법적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와 달리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조항이다.

또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지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대리인 제도의 경우 장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권한을 남용 또는 오용의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많은 논쟁 끝에 대리인 제도는 삭제되고 보호제도(safeguard)<sup>11)</sup>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정에서 논란 끝에 삭제된 대리인제도를 오히려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소수의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되는 대리의 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장애인부모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단체들이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년후견인제도

11) 보호제도(safeguard) : 동 조항 제 4항에 규정된 보호제도는 장애인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족이나 타인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 권한이 악용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장애인 권리협약해설집 · 국가인권위원회, 2007).

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하는 제도로서 대리 의사결정제도를 조력 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정부의 2014년 9월 1차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질병,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재산 및 신상 문제에 관하여 후견인이 의사를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일반논평 1호에서 설명한 협약 제12조의 규정과 달리 ‘조력 의사결정’이 아닌 ‘대체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체의사결정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철회, 사법 접근성, 투표, 결혼, 근로, 거주지 선택 등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개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및 일반논평 1호에 충실히 부합하는 조력 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국가, 지방, 지역 차원에서 공무원, 법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조력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성년후견제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뿐 조력 의사결정제도의 연구 및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주도했던 단체들이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력 의사결정제도와 대리 의사결정제도에 대해서 발표해보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 후견인제도는 어떤 제도에 포함되는지 토론해 봅시다.

법 앞의 평등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왜 중요한지 발표하고 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된 사례들을 발표해 봅시다.

## 05 / 자립생활

자립생활 조항도 대표적인 장애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이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다양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장애인에게는 쉽게 이해 될 수 없는 일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고, 친구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며 이루기 힘든 꿈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집과 거주시설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일상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조항에서는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활동보조를 포함하여 가정내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며 그 과정에 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여전히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용자 부담의 원칙, 부정수급 방지, 중복지원사업 정리와 같이 장애인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하였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 한다.

“최중증 장애인이나 특정 장애유형의 경우 생활시설이 필요하고, 생활시설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도 있으니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생활시설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 감수성 - 공감의 능력



감수성의 사전적 정의는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sup>12)</sup>이다. 그러므로 인권감수성은 외부의 특정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느끼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발행한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에 의하면 인권감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감수성은 한마디로 인권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즉, 인권감수성은 사회의 관행과 제도, 문화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지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관련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감을 가지는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sup>14)</sup> 진정에 대해 ‘살색 명명’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인정된다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 개정을 권고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흔하게 ‘살색’을 사용하던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나 국가

12) 다음 국어사전

13) 더 자세히 말하면, 인권민감성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떠한 행동선택이 가능하며 그러한 행동선택이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인권관련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을 말한다.

1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에 이 사건을 선정하였다. 10대 차별 시정 사건에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 교육청의 전교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게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등이 선정되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우리와 다른 검은 살색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살색(피부색)의 다양함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살색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보다 향상 되었다.

이처럼 살색 진정사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용어인 살색이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그 결과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는 점에서 인권감수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일례가 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공감’의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람들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님과 외국인 4명이었다. 당사자인 외국인의 눈에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자신의 피부색과 한국에서 얘기하는 살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당사자의 이런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해당 기관에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우리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성인중심의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 청장년 중심의 사회에서 노인, 한국인(원주민) 위주의 사회에서 이주민,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양성애와 동성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경험과 문화, 관점에 대해 존중과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는 남성, 성인, 한국인, 이성애, 비장애인 중심의 관습과 제도, 문화를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치기준에 따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생물학적, 문화적 특성이나 이들이 처한 환경과 경험에 의한 고유한 집단문화에 대한 맥락적 다름에서 오는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배제와 소외시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집단들이 가지는 인권의 권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에 앞서,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노력과 자세의 선행이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일상의 경험속에서 느끼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애라는 범주에 속해 있다고 해도 자신과 다른 장애유형 또는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을 인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장애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사례를 찾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장애영역을 넘어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난민 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들이 있는지 발표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영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 정체성 - 고유성(완전성)<sup>15)</sup>

일반적으로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로,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한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위키백과 사전)

이러한 정체성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손상<sup>16)</sup>을 가진 사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개인의 내부적 환경 및 조건 즉, 성별, 손상의 정도와 손상을 입게 된 시기와 기간, 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의 정체성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요소에 따라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손상을 가진 사람들로 집단화되면 그 집단에 속한 각각의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보이지 않게 되거나 부수적인 요소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부여된 집단에 대한 일반적 특성들만 남게 된다. 장애인인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손상'을 일으킨 상황의 연속선에서 '비극'과 '고통'으로, 기능의 손상(저하)로 인해 '불편함'과 '무능력'이라는 집단적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특성은 손상을 가진 개인은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된 이미지로서의 역할수행을 요구받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 비장애인 중심의 이분법적 정상/비정상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비장애의 정상성을 쫓게 되거나, 이러한 정상성 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5) 완전성은 가상의 완전무결함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신의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 한다.

16) 사회적 모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개념으로서의 '장애'를 구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장애'가 손상도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작동하는 장애요소도 '장애'로 사용됨으로서 동음 이의어로 사용되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장애의 정체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손상과 손상을 둘러싼, 태도와 환경의 상호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sup>17)</sup> 전문 마)항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장애의 '사회적모델'이라고 하는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손상과 환경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개념에 사회적 모델을 가져옴으로서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손상의 여부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손상에 따른 기능의 저하 또는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완전함에 대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손상)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 따라 부정되어 온 장애인의 고유성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일반원칙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제17조 개인의 완전함<sup>18)</sup> 보호에서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손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상(신체적, 정신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그 상태 그대로의 고유성(완전함)을 유지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모델과 개인모델(의료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자 어떤 모델의 개념에 동의를 하는지,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발표하고 토론해보시다.

17) 장애인권리협약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에서 번역본이 있다. 여기에서는 외교부의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다.

18) 협약의 본문에서 integrity를 외교부는 '완전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서는 '고유성' 한국DPI에서 발간한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서는 '본래 상태'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 나가며

모든 인권협약은 상호불가분성을 갖는다. 모든 협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는 다는 것이다. 모든 협약의 이행에는 반드시 장애인지관점이 필요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도 인종, 이주민, 아동과 청년 및 노인,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완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집단의 인권도 완전하게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명백한 기본권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명제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인간의 사회적 생존체험에 근거한 도덕적이며 경험적인 발견(인권의 발견, 윌리엄 J. 탤벗, 2011)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를 가지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생존체험은 물론, 사회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사회적 생존체험은 도덕적이며 경험적인 다양한 발견을 통해 명백하고 보편적인 기본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보편적 권리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어떤 권리들이 보편적이어야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다음해 2007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조직의 세계대회의 슬로건이 ‘우리의 권리, 우리의 협약,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한 협약(Our Rights, Our Convention but for All)’ 이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협약이 아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인류의 인권은 보다 진보하였고 풍성해졌다. 정상과 비정상의 이항대립적 가치기준에 근거한 기존의 권리 패러다임에 장애인의 경험과 가치가 접목됨으로써 차이와 다름에 대한 존중, 다를 수 있는 권리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적 보편성의 개념이 개방적 확장가능성의 보편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은 독립적이며 자율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그 존재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 참고 문헌

---

-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변용찬 외 3명. UN 장애인권리협약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조한진외 8명. 장애인권리협약날세우기. 한국DPI, 2007.  
윌리엄 J. 탈벗 저. 은우근 역. 인권의 발견. 한길사, 2011.  
알랭 로랑 저. 김용민 역.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2001.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8장  
자질 함양 소양교육

# 장애인 인권 강사의 자질과 자세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 제8장\_자질 함양 소양교육

# 장애인 인권 강사의 자질과 자세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장애인 인권을 홍보·교육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인권강사에 의해 추진된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현재의 문제점이나 고정관념을 잘 알고 있어야 개선할 수 있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을 효과적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과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와 학생 등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의무사항 외에도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지 않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회적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인권 강사들의 자질과 자세가 그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사의 자질과 자세에 대하여 20계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 01 /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는 강사

시간은 그 사람의 신뢰를 좌우한다. 약속을 잘 지키자는 이야기다. 먼저 강의 시간을 정할 경우, 교육기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요즘 너무 바쁘다는 식의 표현으로 교육을 기피하려는 인상으로 해석되게 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부탁하는 입장이어야 하고, 강사의 입장은 최대한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리하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교육에 필요한 자료(PPT, 강사 이력서 등)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느 메일로 보내는지 약속하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약속의 변동은 첫인상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동하여 교육의 절반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다음으로 방문할 기관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고 숙지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 귀찮아질 수 있고 업무의 과중으로 피로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적당한 호기심과 관심, 강의 준비를 위한 정보수집은 오히려 기관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다.

방문할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소한 20분 전에 강의대기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도저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사를 파견한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02 / 호감이 가는 예의 바른 강사

교육자료를 프린트해 놓도록 하라고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교육 시간 직전에 그러한 요구를 갑자기 하는 것은 당황스러울 것이다. 프린트물이 필요하나 다른 곳에서 프린트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정중하게 부탁하여 승낙을 받도록 한다. 교육을 하면서 다른 기관의 대접이나 강사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면서 방문 기관을 비난하거나 자극하여서는 안 된다.

예의는 먼저 몸가짐부터 점검한다. 머리 스타일은 자유이나 단정하여야 한다.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깨끗하고 깔끔하여야 한다. 특히 식사 직후나 흡연 직후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나친 화장은 피하도록 한다.

의상에 있어서도 너무 예의 없는 복장은 피해야 하고, 반바지나 너무 느슨한 옷은 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이나 티는 옷차림과 신발도 피해야 한다.

말씨는 정갈하고 분명하고 너무 작거나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로 말한다. 강의 중에는 충분한 볼륨을 유지하고,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말이 울리거나 너무 적어서 뒤에서는 들리지 않는 일이 없는지 주의한다.

강의는 피교육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존칭을 사용한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등의 말투는 사용하지 않으며, 하품을 하거나 한숨을 쉬는 버릇을 보여서도 안 된다. 특히 상스러운 말이나 비속어, 축어 사용은 금물이다.

강의는 업무용 PT 발표나 보고 행위가 아니므로 일부러 톤을 올릴 필요는 없다. 표정은 피로에 지친 얼굴은 곤란하며 늘 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한다. 명함은 적당하게 활용하되, 자신을 알리는 것에 너무 치중하거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꾸짖거나 비난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다정하고, 호감이 가서 인연을 계속 맺고 싶은 친절한 인상을 주도록 한다.

강의에 필요한 비디오나 자막, 프리젠테이션 등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부탁하고, 강의 시작 이전에 앞줄을 비우고 뒤에 피교육자들이 흩어져 앉지 않고 모여 앉도록 안내를 교육 의뢰 기관에 미리 부탁하여 자리정돈으로 인하여 강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차를 주차하기 어렵다거나 교육장소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등으로 인하여 따지거나 교육장소의 불편함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알아보거나 알려 대비하도록 한다.

### 03 / 맞춤형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

교육 대상자는 유치원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무원, 직장인 등 다양하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특수학급을 가진 학교일 수도 있다.

교육 대상이 소수일 경우도 있고, 대규모일 수도 있다. 한 번의 강의를 통해 모든 것을 논할 수 없으므로 개략적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간단한 자기 소개와 더불어 조용하

고 집중된 분위기를 만든 다음, 주제에 결론을 공감하도록 교육안이 일관성 있게 짜여져야 한다.

교육 대상에 따라 강의 내용이나 방법, 대화법 등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내용이 성공한 장애인을 소개하는 수준이면 장애인도 극복하거나 노력을 하는 것이 강조되어 마치 성공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 자신의 탓처럼 여겨질 수 있다.

강사가 장애인 가족의 경우, 연애담이나 이웃이 자신을 천사라고 말하더라는 식의 표현은 곤란하며, 장애인과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의 에피소드가 부정적인 내용인지 생각해 보고 엄선하여야 한다.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흥미를 위하여 퀴즈나 질문을 할 수 있으나, 퀴즈를 통한 강의법은 단순 지식의 전달이나 게임처럼 흥미위주로 흐르기 쉽고, 피상적 교육이 되어 버린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들이나 성장과정을 소개하는 것은 흥미를 주기에는 적절하나, 인식개선과 거리가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교육중심이 인식개선이냐 경험담이 아니므로 경험담은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동화나 영화 등을 소재로 교육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이나 토론, 해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동영상이나 사진 등은 교육자료로서 사례로 사용하고, PT에 삽입하여 자료제시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며, 이해를 돕는 소재로 사용하면 좋다.

장애체험은 단순히 장애는 힘들다는 인식만 강조되기 쉽고, 장애체험이 모든 장애에 대하여 이해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간단한 설명을 위한 소재를 넘어 체험 자체가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암흑 속에서 식사하거나 소리 없이 영화보기 등은 교육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시간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흥내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인권강사의 경우 피교육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보조인이 필요하다. 교육 대상이 학생인 경우 인식개선 교육이 끝난 후 교육내용과 무관하게 흥내를 내면서 따라하면서 개그를 하는 교육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04 / 정확한 용어를 알고 설명하는 강사

장애우란 용어를 사용하는 강사가 간혹 있다. 장애우는 장애인 친구라는 말로 친구는 상대가 있는 말이므로, 1인칭으로 ‘나는 장애우입니다’ 라고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친구가 필요한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 우리문화에서는 친구란 동년배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장애우가 아니라 법적 용어인 장애인을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의 상대어로 ‘비장애인’을 사용하고 일반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농인의 상대어로는 청인이고, 맹인의 상대어는 정안인이다. 약시라는 용어는 의학적 용어로서 저시력인이라 사용한다.

뇌병변 장애인은 뇌에 이상이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간단히 설명을 덧붙여 주는 것이 좋다. 장애 유형을 15가지 분류표를 일일이 설명하여 암기시킬 필요는 없지만, 강사는 정확히 알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법적 용어이지만 난청과 저시력을 포함한 용어이므로 수어를 사용하거나 점자를 사용하는 계층을 말할 때에는 농인과 맹인이라 용어를 사용한다. 농인의 언어는 수화가 아니라 수어(수화언어)라고 해야 한다.

난장이, 돌연변이, 극복, 도전, 재활이란 용어는 저신장 장애인, 휘소성 장애인(귀한 것이 아니므로 희귀성이 아님), 개성, 가활, 자립, 참여 등의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한다.

## 05 /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강사

강의에는 지식 전달과 장애 감수성을 느끼는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지식 전달 방식은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와 정확한 최근의 정보인가가 중요하다. 법이나 제도, 장애인에 대한 응대법 등에서 많은 양을 가르치려 하면 지식전달에 치중하게 되며, 짧은 시간에 소화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대충 개략적인 설명만 하면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지식전달에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끼워넣기 식의 지식전달을 하되, 간단명료한 것과 관심

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감수성 부분은 인권이 무엇이며, 왜 인권이 중요한지, 장애인의 삶에서의 고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사회적 고정관념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문학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장애는 일상이며 누구나 잠재적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등은 감수성을 가지고 느끼고 공감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현황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차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감정이입이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06 /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깔끔한 강의를 하는 강사

장애인 인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 응대법은 진정한 존중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과 자유권을 위한 것이고, 이는 차별 없는 세상과 편견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러므로 강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잘 정돈된 줄거리와 적절한 예시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강의라 하더라도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복지학이나 법학 강의가 아니라 인식개선 교육이 목표인 이상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철학이나 사회적 배경, 국민의 책무와 인간의 존엄성, 차별로 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가와 장애 개인의 손실,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권 실현을 통한 누구나 살만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가적 자세로 강사는 주제를 잡아 나가야 한다.

인류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우생학이나, 생명윤리에서의 문제 등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장애에 대하여 중심을 두고 논하다 보면, 인권이란 주제를 벗어나 장애인도 힘들고, 가족은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장애는 불행이고, 예방의 대상이며, 사회적으로 폐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개선이 아니라 역행이 되거나,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장애인이 특권인 것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제를 생각하며 학습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장애는 불행이나 비참함이 아니라 개성이고,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경우, 적절한 예와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할 여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장애를 너무 미화하거나 비하하지 않으려는 간지러운 사탕발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문학 작품에서 장애인이 악인으로 표현하면 편견이라고 하면서, 착한 역으로 나오면 또 천사표로 표현한 편견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는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특히 학교에서 강의를 할 경우, 학교 교사들은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학생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강사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을 잘 도와주도록 가르치거나 배려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놀림이나 왕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인권적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친구를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의를 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신발을 찾아주고는 얼른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도움이 아니라 교류하는 친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야 함을 말해 준다.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해석의 인권침해와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권침해가 되는 적극적 해석의 인권을 설명하고, 자기 결정권, 사회적 통합 환경과 접근성의 보장 등 사회적 모델에서의 수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는 운동의식을 가진 시민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이 교육에 담겨져야 한다.

## 07 / 장애 감수성을 가진 강사

강사가 짧은 장애 경험이나 만나고 경험한 것을 마치 장애인 모두가 그러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일반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의심이 많더라’ 라고 강사가 말한다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어 버릴 것이다. 장애 유형별 특성은 있지만 개인별로 다양하다. ‘지적장애인 중 중증은 지능이 50 이하이고, 겨우 두 단어로 된 문장을 이해할 정도’ 라고 설명한다면 모든 중증 지적장애인들은 모두 같은 수준으로 이해되어 버릴 것이다. 장애인을 설명하면서 손상을 ‘불구’ 라고 하고, 기능저하를 ‘능력장애’ 라고 설명한다면 장애인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시장에서 한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중에, 마침 지체

장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장애인이 될 거야’라고 말한다면, 아이스크림을 사 달라는 것은 해결이 될지 모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굳어버릴 것이다. 장애의 정의는 변화하는 것이고, 매우 유동적이고 모호하며, 지역이나 문화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나 범주가 다르고, 역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이 유린되었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현재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의 설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강사가 몸의 기능을 하는 신체의 일부인 휠체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거나,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이 보조기구는 단순히 의료적 처치로 해결된다고 설명한다면 감수성을 가진 강사라고 보기 어렵다.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계층이 통합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거나, 지나치거나 부적절하게 과잉 응대하는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장애인의 자존감을 존중한다는 등의 문제는 매우 높은 감수성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기본적으로 장애학에 대하여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소 실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08 /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강사

아무리 유능한 강사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리고 강사가 알고 있는 것이 불변의 진리도 아니다. 강의 중에 예를 들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근 사건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오래되거나 잊혀진 사건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동향과 사건, 장애인의 실태들에 대하여 강사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뉴스, 드라마, 장애인 스포츠나 문화, 논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라 하더라도 모든 장애 유형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당사자라고 하면 그 경험과 지식을 헤게모니로 느끼고, 강사가 장애인의 대표로 인식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사는 인권 강사로서 행동의 실천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도 알아야 하고, 장애 유형별로도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의료, 장애인의 문화, 최근의 이슈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여야 호소력이 있으며, 장애인 대표로서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대표로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 09 /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교육 기술자로서의 강사

“여러분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등의 질문을 한다면 교실은 조용해지고 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화두를 던지는 질문은 장애에 대해 평소 고민해보지 못한 피교육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강의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한다면, 수업 과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면 즉시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화시키거나 다음 진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 피교육자의 어떤 질문은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질문을 듣고 메모해 두었다가 그러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타임이나 수업 끝 부분에 모아서 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무리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라도 질문을 막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되며, 경청하고 친절하게 답해야 한다.

어떤 질문은 상당히 도전적일 수 있다. “땅값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장애인 시설을 지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 비장애인이 더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역차별이 아닙니까?” 등 질문이 시비조일 경우도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침착하고 친절하게 강사의 생각을 말하거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장애인의 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필수적이거나 의무적 행사로 인하여 교육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집중하지 않는 피교육자가 있다면 직접적인 지적을 피하고, 다른 교육에서의 태도와 비교하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눈길을 주거나, 설명한 것을 다시 질문을 하거나 미리 답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여 답하게 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퀴즈나 질문에 대하여 상품을 주거나 칭찬을 하는 등의 동기유발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지 않은 선물과 과한 칭찬으로 강사의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장애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을 감동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개선의 변화로 장애인이 변한 것을 설명하면서 감동을 주어야 하고, 수업 중에 감동이나 박수가 나올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여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 10 / 품위 있는 강사

강사의 품위는 화려한 경력이 아니다. 강사의 신념과 자긍심, 인권강사라는 것에 대한 행복감, 풍부한 지식, 적절한 유머 등이 강사의 품위를 높여준다.

그러한 품위는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몸에서 품어져 나와야 한다. ‘총명’이란 단어에서 ‘총’은 몸에서 나오는 품위이고, ‘명’은 눈에서 나오는 품위이다. 이러한 품위는 초조해 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인내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강의를 통하여 세상을 바꾼다는 사명감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이러한 품위를 높여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는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와 행복감이 묻어나야 한다. 강의를 듣고 피교육자들이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거나 장애인 가족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육을 통해 인생관을 재정립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행복해 한다면, 강사의 품위는 극대화될 것이다.

유머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장애를 웃음거리로 오해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에피소드가 당시에는 화가 나는 일이나 시간이 지나면 유머가 될 수도 있다. ‘심봉사시리즈’ 등이 유머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머는 장애인의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유머를 소개하거나, 매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컵의 손잡이는 컵의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손잡이는 컵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지요. 고정관념은 창의를 방해하고 차별을 만들지요”와 같이 주제와 연결되면 더욱 좋다. 그리고 피교육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연대의식을 느낀다면 소통이나 품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1 / 고객관리를 하는 강사

고객이라고 하면 교육 대상자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말이다. 강사가 호평을 받게 되면 강사를 파견한 기관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강사 역시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강사는 파견한 기관의 얼굴이며, 강사는 단순히 주어진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요구할 정도로 고객관리와 인기관리가 필요하다. 강사가 고객관리를 하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객관리를 하는 방법은 강의를 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서로 주고받은 연락처를 잘 정리하여 인연이 계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 담당자에게 바쁘다며 바로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사용하였던 파일을 제공하고, 그 파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배려하면 좋다.

다음으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 등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주되, 단점 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장점이나 질문을 하는 것이나 호응이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실 정리나 준비를 한 담당자를 돕거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진심을 담아 말하여야 한다. 담당자 외에 그의 상사에게도 일부러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식사대접이나 차대접이라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강의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촬영을 담당자에게 부탁하고, 그 사진을 보내어 줄 것을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부탁한다. 그리고 강의를 한 행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어 주거나, 기사화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강의를 한 날로부터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도록 한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피교육자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도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전문기관을 소개하거나 미처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내용을 조사하여 알려 주면서 인연을 넓혀 나가도록 한다.

장기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의 결과를 알려주어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서도 일회성 교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보고서나 기록물로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도록 한다.

## 12 / 다름의 가치에 대하여 재발견을 자극하는 강사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이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며, 오히려 힘이고, 개성임을 피교육자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다름이 존중되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임을 알게 한다.

피교육자가 학생이라면 ‘1등만이 훌륭한 학생이 아니며, 각자의 적성과 개성이 있음과 같이 장애인도 각자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피교육자가 성인이라면 각자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조화가 있듯이 장애인도 그러한 역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설명한다.

## 13 / 불편함의 의미를 아는 강사

인류는 문명을 일으킨 위대한 존재이다. 문명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다. 인간은 더욱 편리하기 위하여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한다. 그러한 문명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사명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문명이 편리함을 주지 못한다면 문명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세상은 비장애인은 더욱 편리한 세상임을 피교육자에게 일깨워 주도록 한다. 장애인을 위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발명품이 장애인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문자생활을 할 수 없어 시각장애인 연인이 타자기를 발명하였으나, 타자기는 사무용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판을 발명하게 되었다. 점자는 점을 찍든가 찍지 않

든가의 이진수로서 모스 부호를 발명하게 하였고, 이것이 컴퓨터의 코드와 통신의 신호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인 교사가 보청기를 개발하려다가 추가적으로 개발된 것이 전화이다. 그리고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기술이나 스크린 키보드는 장애인의 컴퓨터 접근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달나라를 가는 데에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었으나, 결국 얻은 것은 달나라의 돌덩어리 하나에 그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주식품이나 GPS 기술은 오늘날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덜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편리함을 줄 것이고, 불편함은 바로 인류를 더욱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의 모티브가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환자나 임산부, 노인들에게도 매우 편리함을 준다.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나 베리어 프리(무장애)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은 사회가 모두를 행복하게 함을 증명하는 한 예가 될 것이다.

고령화와 많은 재해와 사고들은 우리 주위에 발생하고 있으며, 누구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인류의 과제이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들면 장애인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경험하거나 노후에 장애를 입게 되는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회가 되며, 그러한 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훨씬 비싼 개조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예로써 불편함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며, 오히려 인류에게는 자산일 수 있다. 종교적으로 장애인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도 좋다. 불편함의 의미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진정한 사회개발이며, 복지는 허비가 아니라 바로 생산적 투자임을 일깨움으로써 강사는 장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면 장애인식도 재정립하면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생관을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사회적 리더자가 될 수 있다.

## 14 / 피드백을 할 줄 아는 강사

강의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강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강의 이전에 장애인 인식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고, 강의를 마친 다음 다시 인식의 변화를 설문지를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강의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거나 보고용이 아니라 강의에 대하여 성찰하고 교정하여 강의의 방법에 대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성찰은 일기나 메모로 기록을 남기고 반성의 자료로 활용하면 좋다. 다른 강사와 경험담을 서로 공유하면서 벤치마킹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15 / 보고 의무를 다하는 강사

강의를 하러 가는 도중에 교육을 의뢰하는 기관에서는 확인을 위해 파견기관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파견기관의 담당자는 상황을 알 수 없어 강사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의뢰기관에 연락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강의를 가기 전 최소한 하루 전에 강사는 직접 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강의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강의를 위해 출발하는 경우에는 파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강의를 마치면 종료에 대한 보고도 즉시 하여야 한다.

이동 도중에 생긴 일이나 강의 중에 보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보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자주 파견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강의 평가 설문지나 인식개선에 대한 설문지 등은 기관별로 잘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상 강사는 소속 기관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고는 항상 진실해야 하며, 허위보고나 부정한 보고, 태만한 보고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16 / 소중함과 인간존중을 주장하는 휴머니스트로서의 강사

강사는 겸손하고 공손하며 인사성이 바르고 늘 친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은 생명을 다루는 활동으로 신성한 임무이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는 높고 귀하다는 말이다. 사랑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으로 사랑에 귀하게 여김이 없으면 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인간은 생명체로서 신비함과 더불어 신성한 존재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숨을 쉬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듯이 숨을 쉬지 않는 장애인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시각장애인이 그리운 엄마의 얼굴을 억만금을 주고 단 1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볼 수 없으나, 비장애인들은 평소에 그 아름다움을 평소에 무상으로 무제한 즐길 수 있으나, 만성이 되어 그 가치로움을 잊고 살기 쉽다. 인권강사는 바로 세상의 가치로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매일 법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 외출을 하고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고, 싸인을 하고, 약속을 한다. 이 모든 행동들은 일상이며 바로 재화와 용역의 행사이다. 세상에 태어나 한 사람으로 대접함은 바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장애인 역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결정자로서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강사는 바로 이러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신장하는 거룩한 활동을 위해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존재이다.

## 17 /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강사

편견은 사고의 편협함이고, 이는 상대방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은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차별로 드러난다. 인권강사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활동으로 강사가 늘 깨어 있는 사회의 정신이어야 한다. 강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강사는 늘 각성하고, 공부하며, 자신에게 남아 있는 편견이 없는지 편견을 털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강의안 하나를 준비하고 가장 모범적인 것이라 여기고 고집한다면 이 또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강사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상대를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자로서 부적합하다 하겠다.

강사는 여러 가지 강의 방법을 사용해 보면서 어느 것이 더 이해가 쉬운지, 어느 것이 더 호응이 좋은지 등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사로서의 활동은 바로 자기성취를 향한 길이고, 수련을 하는 자와 같이 자기개발을 하는 자라야 한다. 인권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휴머니스트로서 강사의 활동은 바로 자기개발을 통한 자기의 완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 18 / 사회 참여자로서의 강사

인권강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와 같다. 세상에 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의무와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는 사람이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새로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인생관을 재고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가이다.

세상은 힘든 일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억압적 요소도 많다. 그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다. 바로 대중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참여가 바로 강의가 되어야 한다. 강의는 바로 그러한 호흡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하고, 억압된 시민들이 그 억압에 대항할 때에도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인권이 바로 서는 사회이고, 그 역할에 강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겠지만, 강사가 스스로에게 소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바꿀 기회와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 19 / 긍정적 사고를 하는 강사

늘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긍정적 사고를 하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힘들다거

나 나쁜 사람이 많다거나 부조리가 판을 친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무언  
중에 그것은 전염이 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되지 못할 것이다.

강사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신성한 활동이며,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하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파에 찌든 사람들에게 신선한 삶의 철학과 에너지를 공급하  
는 사람이다.

평소 부정적 사고를 하였던 것이 있다면, 강사가 먼저 긍정적 사고로 전환되어야만 교  
육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 / 윤리를 실천하는 강사

인식 개선 강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인이나 기관의 정보 중 기밀이 필요한 것들은 철  
저하게 기밀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의뢰한 기관이나 파견한 기관과 피교육자에 대한 험담이나 홍보기를 하  
게 되면, 그것은 소문이 되어 상대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  
이다.

인권강사는 특히 인격이나 품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인권강사가 명예롭지 못하거나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면 강의의 효과는 오히려 하지  
못함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운전에서의 에티켓 등에서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인류애를 이야  
기하고, 사회의 개선을 부르짖는 사람이 자기부터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지만 교육 의뢰 기관이 학교인 경우는 인성교육의 일환  
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 피교육자인 경우는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강사는 매우 엄격한 윤리가 적  
용된다.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였더니 피교육자의 인성도 좋아졌고 근무태도도 달라졌  
다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는가 생각해 보라.

제9장  
교육 방법의 이해 I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대상별 교육활동 계획하기

황 정 현  
(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 제9장\_교육 방법의 이해 I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대상별 교육활동 계획하기

황 정 현 (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내용

### 01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개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하기에 앞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이해’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도착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면 ‘장애인식’이란, 어떻게 교육활동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이끌어 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인식은 ‘대상이나 현상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옳’을 뜻한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이러한 이유로 ‘인식’은 ‘지식’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지만,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켜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고, ‘인식’은 성과와 함께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높다고 낮다고 논의 된다. 즉 ‘인식이 개선되었다’의 의미는 단순히 객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지적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통합교육 준비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 혹은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의식 고양 등과 같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적까지를 언급하였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공동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대식 외, 201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을 범주화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구분	전문가들의 견해
통합교육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의 준비 및 성공적 수행 통합교육</li> <li>•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교우 관계 개선 준비</li> </ul>
인권 및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삶, 사람의 능력 등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 인간 존중 태도 형성</li> <li>• 공동체 삶, 공동체 의식 중시 혹은 공동체 사회 실현 고양</li> </ul>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li> </ul>
적극적인 지원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권리(교육권, 인권 등) 보호, 존중</li> <li>• 장애,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이해, 장애 관련편견 제거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책임의식 고양</li> <li>• 장애학생 지원 및 지도 여건 마련, 관련 인적 지원 확보</li> </ul>

자료 출처 : 이대식, 김수연(201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교육논총, 33(1), 120. 요약 수정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즉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누군가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은 과제이다. 더욱이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대상의 생활 속에서의 경험에 접근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실천적 생활 태도를 바꾸는 노력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 0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핵심 성취 요소

전병운과 동료 연구자들(2006)은 1990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 95편을 연구방법, 연구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장애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의 원인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절차와 검사 도구를 무비판적으로 차용하여 상식적인 수준의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에 따르면,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장애이해 활동은 대개 장애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었고, 통합교육 관련 장애이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연령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역시 교육 목적에 대한 견해만큼이나 다양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범주화하여 열거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구분	전문가들의 견해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에 대한 정보(장애인의 특성 등)나 지식</li> <li>• 장애인식, 장애인 공감, 장애인의 처지 이해 관련 내용</li> <li>• 제한적 환경을 극복한 장애인의 사례</li> </ul>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 평등, 인권 등에 대한 내용</li> <li>• 사람들의 다양성 및 개선에 대한 이해, 반편견 관련 내용</li> </ul>
상호작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방법</li> <li>• 장애학생과의 협력 및 관계 개선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법</li> <li>• 통합교육 방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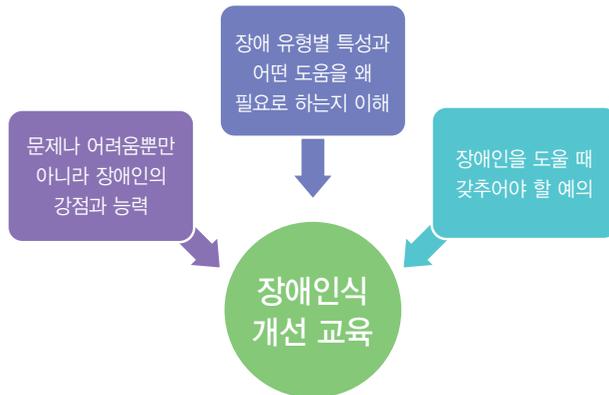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이대식, 김수연(2013).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교육논총, 33(1), 120. 요약 수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장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보 및 지식, 인권, 장애, 다양성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장애인을 돕거나 장애학생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이대식 외, 2013).

더욱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령기까지의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시행 2015.7.21.) [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장애이해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지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하는 목표로서의 ‘핵심 가치·덕목’ 8가지 중 예(禮),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5가지가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하여 장애이해교육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의 통합된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배경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의 제공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 내용

- 1) 장애인의 문제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점과 능력을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약점은 서로 같지 않아 개인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은 각 개인의 독특한 면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른 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 2)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어떤 도움을 왜 필요로 하는지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습자들의 장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이야기해보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공간과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이해와 엘리베이터 등에 양보에 대한 이유도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편의시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현장교육도 필요하다.
- 3) 장애인과 서로 소통할 때의 에티켓교육은 필수이다. 장애인을 무조건 돕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장애를 가진 친구나 장애인을 도울 때 필요한 예의를 알려주어야 한다. 많은 경우, 장애인에 대해 불쌍하다거나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가르치고 인식하는데,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독립성을 증진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친구나 다른 장애인을 도울 때는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의사를 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 봄으로써 보다 더 장애인을 잘 도울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대상별 교수 · 학습활동의 계획하기

장애인식 정도가 연구 대상자들의 배경 변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수 · 학습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 등에 따른 특성을 숙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특히 성인과 달리 아동은 연령군에 따라 발달적으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01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장애관련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꼽힌다.

#### 1) 성별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관한 태도를 연구한 Yaker(1988)는 32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훨씬 더 긍정적(72%)이었다고 보고하였다. Rapire 등(이종남, 1994,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여성이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박성애(1984)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John이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장애에 대해 수용적임이 나타났다(민은식, 1990, 재인용). 그러나 성별에 따른 장애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어(류수경, 1992)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에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2) 학력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학력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대부분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장애인과의 결혼 의사 등 자신과 장애인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력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는(이종남, 1994)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이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이었음을 설명하였다.

## 3) 연령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시기에 대하여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4세 경에 시작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윤혜경, 1991). Rader는 장애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는 성인들에 비하여 매우 수용적이며 편견이 적다고 보고하였다(이종남, 1994, 재인용). 그러나 Kathryn과 Ryan(1981)은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을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 판단하며, 좋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나쁜 사람의 지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장애관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아동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는 달리 학년이나 연령은 또래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지식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지만 아동의 사회적 거리평정은 연령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Bak과 Siperstein(1987)은 장애인에 대한 영재아동의 태도 분석 결과 학년수준에 따라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장애에 대한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학년에 따라 수용태도가 나타난다는 연구와 학년에 따라 부정적이라는 연구와 학년과 연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대립되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수용태도 연구들의 대상연령들이 학령전기와 학령기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연령별 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4)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이계운(1992), 류수경(1992) 등은 장애인과의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회의 증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장애인해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 당사자가 실시하는 장애인해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변화에 대한 문헌들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태도변화에 효과적인 교수방법 즉,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모의장애체험, 시청각교육자료, 역할놀이, 문제 해결활동, 집단토론 등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를 종합해 보면, 연령에 있어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특히 인지적 사고를 형성하는 유·아동기 시기,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자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과의 접촉에 따라 태도변화가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를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토론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0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발달 단계별 특성

연령에 따른 발달 시기를 보는 관점은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대략 9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는 유아기~성인 후기까지 학습자의 발달특성을 살펴봄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이 깊은 ‘도덕성 발달’과 ‘정서 발달’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발달단계와 명칭

순	단계 명칭	통칭	연령 범위
1	태내기 (prenatal period)	태아기	임신~출생
2	영아기 (infancy)	영아	출생~2세경
3	유아기 (prechildhood, preschool period)	유아	2세경~6,7세경 전
4	아동기 (childhood)	아동	6,7세경~12,13세경 (초등학생 시기)
5	청소년 전기 (early adolescence)	청소년	12,13세경~17,18세경 (중·고등학생 시기)
6	청소년 후기 (late adolescence)	청년	17,18세경~22,23세경 (대학생 시기)
7	성인 전기 (early adulthood, young adulthood)	성인	22,23세경~40세경
8	성인 중기 (middle adulthood, middle age)	성인/중년	40세경~65세경 (중년기)
9	성인 후기 (late adulthood, old age)	노년	65세경~사망 노년기 (노인기 노인)

### 1) 도덕성의 발달 단계에 따르는 유의점

사회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과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러한 규칙이나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 내에 내재된 심리적 기제를 도덕성(morality)이라고 부른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도덕성의 구성요소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의적(affective) 또는 정서적(emotional) 요소로서, 정신분석이론가들이 강조하는 도덕발달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인지적(cognitive)요소로서 Piaget, Kohlberg 등과 같은 인지발달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측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적(behavioral) 요소로서 사회학습 이론가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세 이론에 기초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의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인지 및 도덕적 행동 간에는 관계가 적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은 도덕성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및 행동적 측면 가운데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정서적 또는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신분석이론가들은 도덕적 정서는 아동들이 남근기 동안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남아들의 경우) 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여아들의 경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성 부모를 동일시하는 가운데 도덕적 표준을 내면화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발달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아이들은 자존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도덕 정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윤리적인 원칙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된다고 본다.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또는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등의 행동을 억제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혹에 저항하면서 도덕행동을 실천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지 발달이론가들은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혹은 도덕 추론에 초점을 맞추며, 옳고 그름에 대한 아동의 사고방식은 아동이 성숙해 감에 따라 다소 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지 발달이론가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도덕성에 관한 인지발달적 관점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 즉 아동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이 어떤 양상으로 발달해 가는가에 관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Piaget와 Kohlber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도덕성이 한 시기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된다고 보았고, 그 발달 순서는 일정하고 순차적이기 때문에 단계를 뛰어넘어 발달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적 단서가 아닐 수 없다.

### (2) Piaget의 연구

피아제는 도덕발달이 전 도덕적 단계와 타율적 도덕성 단계 및 자율적 도덕성 단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들은 어떠한 규칙도 고려하지 못하는 전 도덕적 시기(대략 만 4세경까지의 시기)를 거쳐, 첫 번째 단계인 타율적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의 단계(만

5세-10세)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회적 규칙이 절대 불변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들은 도덕 판단에 있어서도 몰래 잼을 꺼내려다 1개의 컵을 깬 아이보다 엄마의 설거지를 돕다가 실수로 15개의 컵을 깬 아이가 더 나쁘다는 결과에 기반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이들이 도덕 판단과정에서 의도성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아직 미숙한 도덕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수반하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장애에 대해서도 외관상 보이는 결과에 따라 장애인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오개념을 형성하기 쉽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장애인이 수반하는 장애특성이나 불편감을 강조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 10세-11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두 번째 단계인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회의 규칙들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규칙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도덕 판단에 있어서도 실수로 15개의 컵을 깬 아이보다 몰래 잼을 꺼내려다 1개의 컵을 깬 아이가 더 나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이들이 결과보다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도덕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장애인과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식이나 상황 중 잘 못된 장면을 찾고 이에 대해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또래들과 생각을 나누어 합의점을 찾도록 이끄는 교육 방법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단, 아동들이 적절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극, 상황극, 역할극, 동화나 뉴스 등의 매체를 적절히 사용하여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이 요구된다.

### (3)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론

Kohlberg는 Piaget의 도덕발달에 관한 두 단계 이론을 3수준 6단계 도덕발달 단계이론을 제시하였다. Kohlberg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도덕발달 수준을 크게 3가지로, 각 수준을 다시 하위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수준은 전인습 수준(the pre-conventional), 인습 수준(the conventional level), 후인습 수준(the post-conventional level) 으로 구분하였다.

&lt;표 4&gt; Kohlberg의 발달 단계 별 도덕성 발달의 특징

수준	단계		특성
전 인습 수준 (9세 이전)	① 단계	주관화 (처벌-복종에 의한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규칙 준수</li> <li>힘 있는 타인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므로 좋고 나쁨을 물리적 결과에 의해 결정</li> <li>타인의 입장 고려하는데 어려움을 겪음</li> </ul>
	② 단계	상대화 (개인적 보상과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욕구 충족 여부가 판단의 기준</li> <li>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준 적용</li> <li>다른 사람도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li> </ul>
인습 수준 (9세 ~ 성인기)	③ 단계	객체화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여 도덕적 결정 내림</li> <li>타인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는 등 '착한 것' 이 판단의 기준</li> </ul>
	④ 단계	사회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질서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li> <li>권위는 존경 받아야 하고 사회적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li> </ul>
후 인습 수준 (성인의 10% 미만)	⑤ 단계	일반화 (사회계약 준수로서의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구성원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가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li> <li>자유, 정의, 행복추구 등의 개인적 가치가 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봄</li> </ul>
	⑥ 단계	궁극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과 제도 이전에 생명의 가치, 정의, 인간의 존엄성, 평등 등 추상적 가치에 의한 도덕적 판단</li> <li>개인의 양심과 철학의 문제</li> <li>다만 보편성이 떨어지므로 후기에는 이 단계를 강조하지 않음</li> </ul>

## ① 제1수준: 전(前)인습적 수준(preconventional level)

이 수준은 9세 이전의 아동들이 나타내는 도덕발달수준으로, 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며, 외부의 권위자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따르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전하는 어른들의 한 마디 말과 가치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부모와 교사에 대한 장

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2수준: 인습적 수준(conventional level)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수준으로, 사회 규칙이나 관습에 맞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판단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상황을 주고 판단해 가며 장애인식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해 없이 지나친 친절과 배려에 대한 강요로 반감을 사지 않도록 유의하며 흥미를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을 법한 영화나 TV에서 빈번히 만났음직한 상황이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③ 제3수준: 후(後)인습적 수준(postconventional level)

도덕적 가치나 행동은 사회의 권위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단계로, Kohlberg는 성인들 중 일부분만이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자들에게 후인습적 수준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강요하는 것은 부담감과 거부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 2) 정서발달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 맞추어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만든다. 다른 한 편으로는 상대방의 정서를 재인하고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이 된다. 바로 이것이 정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교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는 아동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나는 정서 표현을 통해 아동 자신의 상태를 양육자(또는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사회적 접촉을 증진하고 아동의 목표에 맞게 양육자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아동을 보살피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서는 특

정 자극에 대하여 특정한 반응 또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기능을 하며, 나아가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재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양육자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이 된다(송길연 외, 2000; 정옥분, 2004).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되지만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매우 느리게 발달하여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간 이후에야 문화적으로 정의된 정서표현규칙에 따르는데 보다 더 능숙해지게 된다(송길연 외, 2005). 연령에 따라 아동의 정서발달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연령별 아동 정서발달의 특징**

연령	정서발달의 특징
2 - 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어휘가 빠르게 증가한다.</li> <li>• 자신과 타인의 기본정서를 정확하게 명명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정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다.</li> <li>• 특정한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황과 연합된 정서를 인지한다.</li> <li>• 가장놀이(pretend play)를 할 때 정서언어(emotion language)를 사용한다.</li> </ul>
4 - 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정서와 상황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다.</li> <li>•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정서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정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li> <li>•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li> </ul>
6 - 1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랑스러움, 수치심과 같은 복합정서를 더 잘 이해하며 그것들은 개인적 책임감과 통합 된다.</li> <li>• 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정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li> <li>• 정서반응을 일으킨 사건을 더 잘 인지한다.</li> <li>• 부정적 정서반응을 감추거나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li> <li>•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효과적 전략을 사용한다.</li> </ul>

자료 출처: 장휘숙(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

## 03 / 발달 단계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유의점과 교사의 역할

### 1) 성인기 이전의 학습자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제까지 개발된 많은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들과 교육활동들은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 상황과는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다른 유아교육 환경에서 ‘장애’라는 개념조차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유아기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시기의 학습자는 장애유형별로 명칭 및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를 가진 친구를 그러한 교육을 통해 나와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할 위험도 있다(이대식 외, 2013).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요구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준비하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저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수록 다음의 유의점을 꼼꼼히 따져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1) 용어 사용을 신중히 선택하여 사용한다.

연령이 어릴수록 장애나 장애인 등과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장애(예: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에 대한 소개와 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장애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는 학령기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유아기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장애’라는 말을 모르는 유아들에게 ‘장애’라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장애명을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내 친구가 나와 매우 다른 존재이며 무언가 큰 문제를 가졌다고 느끼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용어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연령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학습자일수록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고도 편견 없는 상세하고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성교육의 한 줄기임을 이해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주요 목적은 장애를 비롯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점을 갖고 있고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거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편견을 막는 유용한 접근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친구가 나와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할 때 저연령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학습자들은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사회-정서적 능력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다.

저연령일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상대방의 느낌에 대한 인식 및 공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과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인식,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를 돕는다는 인식 등을 이해하고 충분히 연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으로 교육을 준비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연스러운 생활 장면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일상생활과 별도의 장면이나 활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경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경험을 포함될 수 있는 경험적 활동들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을 선별하고 '특별한 존재'로 편견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연령에게 적용되어지나 특히 저연령의 학습자를 대할 때에는 마치 영화나 책속의 이야기와 같이 일상과 동떨어진 이벤트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하기 보다는 일상생활과 교육활동 안에서 자주 언급될 수 있도록 함이 효과적이다.

### (4) 가정 및 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저연령의 학습자 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주변 성인이나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교사나 부모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교사나 부모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모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들이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장애나 장애 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 2) 성인기 학습자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성공적인 강의란? 학습자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았는가, 강사가 유식하고 많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등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적인 강의는 학습자들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배운 것을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는가의 문제이다. 그러한 특성에 대해 어떻게 맞추어 학습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설계하여 결과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인 학습자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 (1)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매우 높은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
  - 매우 구체적인 요구(목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 학습하는 내용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 (2) 쉽게 옳고 그른 답을 말하지 않는다.
- (3) 교육자료가 적합하고 실질적이길 원한다.
- (4) 실제 해결방안이 주어졌을 때 변화한다.
- (5)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 (6)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사를 존중한다.
- (7) 자신의 경험과 삶을 강의 내용에 반영한다.
  -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리 답을 갖고 있다.
  - 이론보다는 자기 경험을 앞세운다.
- (8)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 요구 및 목표의 진단, 활동의 선택, 평가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사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 (9) 어린 학습자들 보다 유연하지 못하다.
  -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싫어한다.

• 다른 방식을 수용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의 장점을 알고 싶어 한다.

- (10) 관심사와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다.
- (11)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
- (12) 집단을 이루어 협력하는 활동을 원한다.

요약한다면 성인기 학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경험이 많다.
-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한다.
- 배운 것을 얼마나 빨리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그들의 경험을 인정한다.
-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례를 제시한다.
-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 학습자들 간에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학습의 상황도 단편적인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문제중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실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하도록 하며 서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상호 코칭이 되도록 한다. 평가는 사지선다형 문제나 단답형 등의 객관적인 형태보다는 학습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나 학습자들의 동기유발 정도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류수경(1992). 장애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민은식(1990).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연구.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삼육재활원.

박성애(1984). 신체장애자에 대한 정상아동의 태도변화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송길연 · 김수정 · 이지연 · 양돈규(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송길연 · 장유경 · 이지연 · 정윤경(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윤혜경(1991).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일반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대식, 김수연(2013).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교육논총, 33(1), 113-136.

이계윤(1992). 재가중증장애인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이종남(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장휘숙(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전병운, 박현옥, 강영애, 박현주. (2006). 우리나라 통합교육 관련 장애이해활동 프로그램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경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53-174.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철학사전편찬위원회(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Bak, J. J., & Siperstein, G. N.(1987). Similarity as a factor effecting change in children's attitudes toward mentally retarded pee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1, 524-531.

Kathryn & Ryan(1981).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Reactions to the Physically Disabled*. Article in Human Development 24(4):240-256 .

Yuker, H. E.(1988). *The Measurement of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Psychometrics and Scales*.

제10장  
교육 방법의 이해 II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제

황 정 현  
(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 제10장\_교육 방법의 이해 II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제

황 정 현 (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 좋은 수업과 좋은 강사

### 01 / 좋은 수업

수업이란 '학습자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 외적 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며 교사와 학습자 간의 충실한 상호작용이 일어나 교수·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 한다.

- ✓ 자발성: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수업
- ✓ 개별화: 학습자간의 개인차 인정, 개인의 행동 특성과 개성을 고려한 수업 전개
- ✓ 직접 경험: 감각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만지며 배우기
- ✓ 사회화: 교과서 내용만 그대로 따라가는 식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학교 밖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하는 학습 기회 제공
- ✓ 통합성: 학습활동을 부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적, 정ylic 기능적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 ✓ 목적성: 학습목표가 분명히 인식될 때,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활동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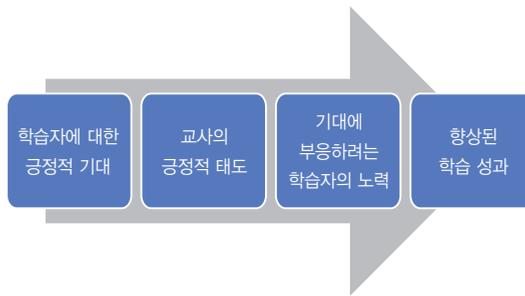
## 0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태도

### 1) 교사의 기대와 수업

누구나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모델에게 더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학습자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열정과 기대는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보이며 높은 학습 효과가 있다.

#### (1) 피그말리온 효과[로젠탈 효과, 자성적 예언, 자기충족적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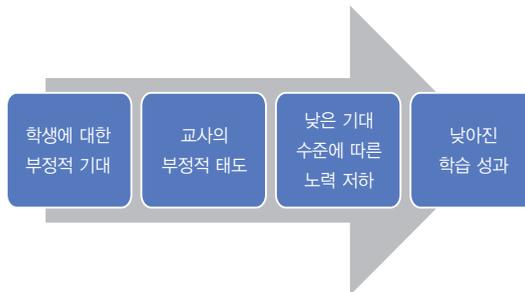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림 1〉 피그말리온 효과에 따른 학습 결과

#### (2) 골름 효과[= 스티그마(stigma)효과]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



〈그림 2〉 골름 효과에 따른 학습 결과

즉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거나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요?” 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예견하는 언급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 바른 태도를 보이고 행동하겠지만, 다른 친구들의 경우…….” 이라고 예를 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2) 좋은 수업을 위한 교사의 노력

### (1) 심리적 환경 조성

심리적 환경의 조성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 관한 기준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심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는 학습자와의 관계를 촉진하고 안정감을 주며, 학습자들의 독립적·협동적 참여를 격려해야 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급 내에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급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조의 과정을 생략한 채, 도덕적 행동의 강요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2) 물리적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 조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으로 학습의 안전성, 수업에의 활용성 및 학습자들의 심리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에 적합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습 기자재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안정된 물리적 환경의 구성은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

#### ① 자리 배치

학습 집단은 학습목표나 학습자들의 흥미와 수준,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전에 학생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나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토의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을 중간 중간 위치 하도록 한다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거나 평소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을 떨어져 앉도록 자리 배치를 부탁하는 것도 물리적 환경 조성의 한 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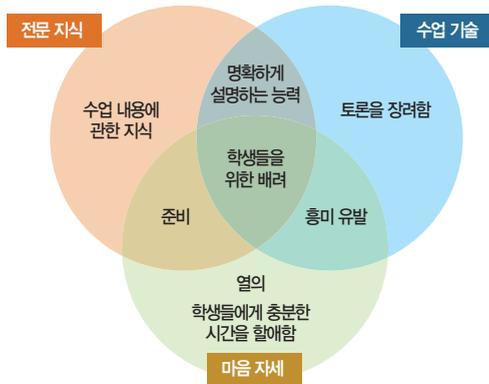
<b>오케스트라형</b>	<b>U자형</b>	<b>사각형</b>	<b>일반형</b>
음악수업, 토의	연극, 시범, 게임, 발표	시장놀이, 물레방아	전체 집중 수업
<b>모듈학습 A형</b>		<b>모듈학습 B형</b>	
협동학습(국어, 수학, 사회, 실험 등)		미술, 기타 협동작업	

〈그림 3〉 여러 가지 자리 배치 유형

자료 출처 : 한국교원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원 초등 학습지도 - 기초과정(2)

## ② 학습 자료의 활용

수업 전 동영상 구동 및 장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4〉 유능한 교사의 8요소

유능한 교사는 위쪽에 제시한 8가지 요소가 모두 고르게 갖추어 졌을 때 성공적인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수업의 설계

### 01 / 교수 · 학습 전략의 종류와 이해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다양한 수업 형태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다양한 교수 · 학습 전략의 강점과 운영 방법

교수방법	강점	운영 방법
강의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사가 수업내용을 설명식으로 전달하는 교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한 태도나 가치의 습득, 내용의 명료한 전달에 효과적</li> <li>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하는데 효과적</li> </ul>
토론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수법</li> <li>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을 듣고 말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li> <li>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안정감, 유대감, 소속감 등과 같은 심리적 학습이 가능하며,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장점</li> </ul>
협동 학습	사회적 기능의 학습, 정서적 기능의 학습, 집단을 통한 성공적 학습경험을 쌓는데 효과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집단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방법</li> </ul>
발견 학습과 탐구 학습	학습자들이 지식획득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탐구능력, 개념의 형성,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려고 하는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li> <li>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얻는 과정, 방법 혹은 활동으로 표현되며, 문제해결과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포함</li> </ul>
문제 해결 학습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용이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매개로 하여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형태</li> <li>학습자에게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과정을 통하여, 지적, 정서적, 기술적 학습을 체득하는 교수방법이며, 학습자들의 경험과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li> </ul>

**〈표 2〉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의 강점과 운영 방법-계속**

교수방법	강점	운영 방법
브레인 스토밍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이끌어 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규칙을 점검</li> <li>• 모두 참여하도록 격려</li> </ul>
상황극 몸짓 표현 등 연극	실생활의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li> <li>•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나</li> <li>• 참여 동기를 유발할 만한 적절한 상황,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역할극을 할 때 나머지 참가자들이 충분히</li> <li>• 보고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li> </ul>
게임 활동 퀴즈 풀기	참가자들 간에 배우는 기회가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과 지시</li> <li>• 기대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li> <li>• 활동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li> </ul>
그림 그리기 해석 나누기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냄으로써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li> <li>• 다양한 상황과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li> <li>• 다양한 해석들을 거쳐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마련</li> <li>•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와 개선을 꿈꿔볼 수 있는 후속 활동</li> </ul>
영화제	참여자 감성에 맞게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을 깨우고 상영시간도 알맞은 적합한 영상</li> <li>• 상영이나 사진 전시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마련</li> <li>• 다양한 감상들을 경청하면서도 교육 주제로 밀도 있는 사고 시간 마련</li> <li>• 참여자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장면에 대한 예리하고도 풍부한 분석</li> <li>• 참여자들 상호간에도 배울 수 있는 사진, 후속 활동</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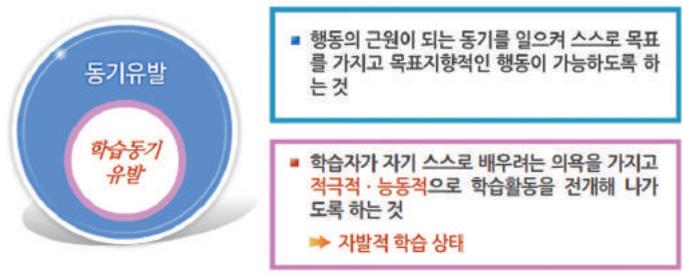
## 02 / 수업 단계별 교수·학습 전략

### 1) 도입단계 전략

#### (1) 학습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① 동기유발

동기유발이란 학습자가 수업에서 충족시키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 욕구를 북돋아 주는 활동을 말한다. 동기유발 활동 시간은 3~5분 정도가 적당하다. 학습목표와 관련 있는 흥미거리를 제공하여 이후 활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준비한다.



〈그림 5〉 동기유발의 의미

자료 출처 : 한국교원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 초등 학습지도 - 기초과정(2)

② 학습동기유발 방법

학습동기유발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누어 설명되어진다. 외적 동기유발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에게도 외적 보상 제공과 함께 내적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적 동기 형성을 위해 <b>유인가(보상)</b>를 제공하는 것</li> <li><b>낮은 성취 수준의 학생</b>들은 외적으로 동기유발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li> </ul>	<p>자기 자신의 내적 보상(자발적 흥미나 요구 등)에 의한 동기유발로, <b>높은 성취 수준의 학생</b>들은 일차적으로 내적으로 동기유발되기 쉬움</p>
<p><b>상</b> 성공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학습에 활기를 주는 방법</p>	<p><b>감동주기</b> 감동을 주어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p>
<p><b>법</b> 학생에게 불쾌감, 공포감을 조성시켜 불필요한 학습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 바람직한 학습만을 요구하는 방법</p>	<p><b>호기심자극</b>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선집중을 시키면 학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p>
<p><b>경쟁</b>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특성을 이용해 성공감과 우월감을 통해 학습목표 성취를 높이는 방법</p>	<p><b>학습의 주체 되게 하기</b> 동기유발이 수업 시간 내내 지속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수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방법</p>
<p><b>협동</b>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학습목표를 성취시키는 방법</p>	

〈그림 6〉 동기유발의 방법

자료 출처 : 한국교원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 초등 학습지도 - 기초과정(1)

(2) 학습목표 확인 및 학습활동 안내

①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안내

학습안내는 학습목표 확인 직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전개단계에서의 본격적인 학습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동기유발의 방법

자료 출처 : 한국교원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 초등 학습지도 - 기초과정(1)

## ②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 안내의 효과

정해진 시간 안에 도달해야 할 장애인 인식개선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수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장애인 인식개선이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인지라 더욱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어느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냐 라는 교사의 목표 설정은 수업 결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학습활동 안내 역시 수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교과수업과 달리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와 기대가 다르며 다소 낮설게 느끼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장애인식을 개선할 준비를 하게 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학습안내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업의 전체를 개괄적이고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 수업의 진행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의 목표 도달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③ 학습활동 안내 방법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선정된 학습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안내 단계에서 학습활동의 수행

방법이나 학습 활동과정 중의 유의점이나 지켜야 할 점 등도 안내한다.

- 본 차시에 공부할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에 대한 안내한다.
- 학습활동의 수는 2~3개가 적합하다.
- 활동명은 수업목표를 향한 중심활동 요소가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 02 / 전개단계 전략

### 1) 발문의 원리 - 발문 방법

#### (1) 학생의 반응과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리적 발문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쉽고 낮은 수준의 발문부터 시작하여 어렵고 높은 수준의 발문 차례로 발문을 한다. 초기의 성공적인 답변은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또 초기의 인지·기억적 발문에 대한 강조는 이미 학습한 사실, 개념, 원리들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인지 과정을 위한 선행 요건들을 개관할 수 있게 도와준다.

#### (2) 적절한 응답 준비 시간

발문 후 제공되는 응답 준비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면 학생들의 답변 길이가 길어지고 사려 깊은 답변이 증가한다. 또 행동이 느린 학생들의 참여도 상당히 증가한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생의 대답을 평균적으로 약 1초밖에 기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하위수준의 발문에서는 3-4초 동안, 상위 수준의 발문에서는 최대한 15초까지 준비 시간을 늘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학습 내용 자체가 평소 학생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어려운 주제이다. 따라서 교사는 보다 친절히 안내하며 정답을 빠르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듣고 스쳐가기 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 2) 효율적인 발문과 비효율적인 발문

### (1) 효율적인 발문

- 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발문
  - 유머를 섞어서 하는 발문
  - 놀이 형식으로 하는 발문
  - 학습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의 발문
  - 학습자의 생활 및 경험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하는 발문
  - 행동으로 흥미 유발을 시킨 후에 행동으로 답변하게 하는 발문
- ②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
  - 학습자가 비교를 하도록 만드는 발문
  - 학습자가 종합을 하거나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발문
  - 그냥 넘어가기 쉬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도록 해주는 발문
  - 이유를 묻는 “왜”와 “어떻게”가 잘 조화된 발문
- ③ 학습자의 답변이 쉽게 나오도록 하는 발문
  - 단계적으로 풀어서 하는 발문
  - 답을 상기시키는 단서를 제공하는 발문
  - 강사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나서 하는 발문
  - 일단 생각난 대로 답변하게 한 후 다른 학습자가 보충해 나가도록 하는 발문
  - 새로운 학습내용을 공부할 때 학습 자료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시하는 발문
  - 학습자에게 가설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한 뒤, 그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발문

### (2) 비효율적인 발문

- ①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는 발문
- ②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불분명한 발문
- ③ 습관적으로 자문자답하는 발문
- ④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 발문
- ⑤ 부정적으로 묻거나 학생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묻는다.

## 03 / 정리단계 전략

### 1) 학습 내용 정리하기

- (1) 정리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환류 시켜 새로 배운 내용을 선형된 학습내용 체계 속에 통합시키기 위한 학습내용 정리 활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 (2) 기본 학습내용을 상기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본시의 학습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그 중에서 필수학습 요소를 강조하여, 학습내용의 파지를 돕도록 한다.
- (3) 본시의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학습 전략을 회상시켜 후속학습의 유사한 학습활동 시 이를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한다.
- (4) 학습내용 정리 시 유의점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무리하여 학습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남은 학습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융통성을 가지고 요령 있게 끝맺음한다.

### 2) 일반화 과제 부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이루기에 주어진 강의 시간은 무척 부족하다. 학습자가 일상생활 안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활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 갈 수 있도록 정리 단계에서 실천과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 성공적인 수업의 노하우

### 01 / 수업 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전략

#### 1) 비언어적 전략

사소한 규칙 위반과 산만한 행동에 대해 학급 전체의 학습 분위기나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비언어적으로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시선을 보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그 러지 말 것을 암시하는 태도 취하기, 손을 들어 그만하라는 신호 보내기,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다가가기, 서있기, 책상에 손을 올려놓기 등의 신체적 접근, 똑바로 쳐다보는 눈 맞춤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 2) 협력 구하기

협력 구하기는 어떤 학습자가 잘못된 행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학습자에게 수업과 관련되어 해야 할 작은 일을 도와달라고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이를 제지하는 것이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학습자에게 칠판을 지우거나, 사용한 수업 자료를 치우는 일을 부탁할 수도 있다.

#### 3) 적절한 순간 격려하기

적절한 순간에 격려하기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습자가 뭔가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학습자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들어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하며, 기회가 왔을 때는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도록 한다.

#### 4) 지연된 반응

지연된 반응은 수업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흐름을 방해 받기보다는 수업시간을 마칠 즈음 따로 얘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 후 개별 면담을 통해 비록 짧게 얘기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연된 반응은 교사에게 차분한 학급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02 / 수업을 이끄는 교수자로서 표현법의 진단과 처방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인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객관적인 이미지를 알고 자신의 모습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특히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같이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사의 태도와 자세는 학습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 촬영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는 기회를 가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나 혹은 휴대폰을 통하여 1-2분간 녹화하여 본다. 생각하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소감을 말해본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고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종합하여 자신의 객관적인 이미지를 알아야 한다. 남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수업과 좋은 교사는 멀리 있지 않다. 교사와 학습자에게 모두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좋은 수업일 것이다. 당장은 조금 미숙하고 불안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장애인 인식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 틀림없듯이 스스로의 교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만일 표현법이 서투르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조금씩 고민하고 반복하는 노력이 성공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열쇠가 될 것이다.

**〈표 2〉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의 방법**

언어적 표현법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발음이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발음 연습을 해보고 교정을 받는다.
	말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문장을 끝까지 읽는 연습을 하며 특히 '~다', '~는다'에 강조하여 읽는다.
	말이 빠른 경우	중간에 침을 꿀꺽 삼키는 훈련을 한다. 말을 적게 한다.
	말하는 중간 목소리가 크거나 작은 경우	배에 힘을 주어 목소리를 크게, 작게 변화를 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한다.
	목소리가 단조로운 경우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고 강조를 하며 감정을 넣어 읽는 연습을 한다.
비언어적 표현법	시선 처리가 어색한 경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 밑이나 코밑을 바라보며 말하는 연습을 한다.
	표정이 굳어지는 경우	입모양을 옆으로 벌리면서 말하는 습관을 갖는다.
	몸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다리를 약간 벌리고 똑바로 서는 연습을 하며 팔을 휘두르지 않고 팔꿈치만 살짝 앞으로 내미는 연습을 한다.


**참 고 문 헌**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2010). **좋은 수업 만들기 직무연수**.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 대전광역시교육청(2010). **One-stop 수업 424: 행복한 수업의 달인을 위한 2% PLUS**.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 박은종(2010). **옴수업탐구의 정석**. 파주: 한국학술정보
- 변영계·이상수(2003). **수업설계**. 서울: 학지사
- 울산교육연수원(2011). **맞춤형 연수지원 원격연수\_초등의 수업도입**. 울산: 울산교육연수원
- 옴수업연구회(2009). **수업비타민**. 서울: 학지사
- 정석기(2008).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한 좋은 수업 설계와 실제**. 서울: 원미사
- 조화섭(2008). **조화섭 교육학**. 서울: 해담
- 허승환(2010). **수업 시작 5분을 잡아라 : 동기유발, 주의집중 노하우**. 서울: 테크빌닷컴
- 한국교원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2015). **초등학습지도- 기초과정(1)(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1장  
이미지 메이킹

# 강사로서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 방법

최미영  
(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 장애로 인하여 이미지 메이킹 11장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본문의 설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11장\_이미지 메이킹

# 강사로서 필요한 이미지메이킹 방법

최 미 영 (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 이미지의 이해

### 01 / 이미지의 개념

이미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잔재하는 것으로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떠오르는 하나의 현상이다. 즉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또는 얼굴의 생김새와 표정, 말씨, 옷차림, 목소리, 대화 시 제스처, 걸음걸이의 태도, 성격 등에 의해 다른 하나의 형체를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사고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성향들의 특유한 감정, 고유의 느낌들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지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태도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현상으로서 새로운 것을 지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주관적이어서 어떤 관점으로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여러 경험 등에 의해 표현된다.

이미지는 개인의 행동과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면서 타인에게까지 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인상, 분위기, 감각 등의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02 / 이미지메이킹의 이해

이미지메이킹은 자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나'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연출한다. 또는 사람마다의 각기 다른 외모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기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며, 자기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즉, 나에 대한 능력을 돋보이게 해주며, 개인에게 잠재된 내면의 이미지를 겉으로 나타내어 호감 가는 이미지와 세련된 이미지로 연계시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끌어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미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갖추어지거나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좋은 인상을 만들어 주며, 깨달아 가면서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자신의 개성과 직업, 신분 등에 맞게 연출하여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이미지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변화된 이미지는 다른 사람에게 어디서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잠재하고 있는 내면의 능력까지 보여줌으로써 자신감 있는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이미지메이킹이라 한다.

## 03 / 이미지메이킹의 세 가지 효과

### 1) 자아 존중감 향상효과

가장 '나'다우며 베스트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한다.

## 2) 열등감 및 자신감 제고효과

자신의 개성은 각기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 대인관계 시 타인의 편견과 오해로 비롯된 정보는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점차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내적인 열등감 극복과 자신감 제고에 더욱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 3) 인간관계 능력 향상효과

인간관계 능력은 이미지메이킹을 실행하여 개인적인 이미지를 완성하였을 때 사회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 자신의 부족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다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게 된다.





##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미지메이킹의 요소

이미지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해 평가되어 수동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게 연출하는 법을 알아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이다.

첫인상을 통해서 짧은 순간에 평가되는 이미지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이다.

### 01 / 이미지의 형성요소

성공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성요소에는 표정, 태도, 말투, 용모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1) 표정

표정은 얼굴이미지에 따른 첫인상과 표정관리를 하는 요소이다. 상대방에게 미소를 띤 얼굴은 첫인상을 좋게 하며, 진실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밝고 부드러운 인상이 표현된다. 얼굴 표정은 사람과 대면하였을 때 처음 느껴지는 부분이므로 좋은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눈, 입의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 좋다.

#### 2) 태도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호감을 주는 자세이다. 즉, 청중과 처음 만나 말을 건네지 않고서도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청중과 기본적으로 행하는 정중한 인사는 상대에 대한 존경을 뜻하며, 웃는 얼굴표정과 바른 태도는 청중에게 편안함을 전해준다.

### 3) 말투

말은 강의 또는 강연에 있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경영하는 기본요소이다. 강의 시 강사의 인성과 인격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중에게 경어를 사용하면 존경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청중을 친절하고 반갑게 응대하는 말투를 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용모

단정한 용모는 청중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이 전달된다. 따라서 강사의 용모는 체형에 맞는 옷차림과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피부색에 맞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전체적인 스타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미지메이킹을 실행하여야 한다.

〈표 1〉 이미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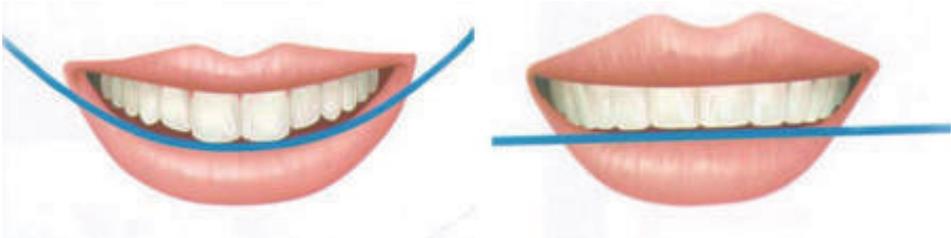
분 류	체크내용	체 크
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평상시 밝고 웃는 표정을 하는가?</li> <li>•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로 표정을 짓는 편인가?</li> <li>• 평상시 손/눈짓 등 비언어적 신호들을 사용하는가?</li> </ul>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먼저 하는가?</li> <li>• 인사시 인사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하는가?</li> <li>• 나의 선 자세/앉은 자세는 올바른 편인가?</li> <li>• 나의 걷는 자세는 당당하고 바른 편인가?</li> </ul>	
말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인가?</li> <li>• 불필요한 습관어가 있는가?</li> <li>• 말할 때 목소리의 톤/어조/음량/발음은 어떠한가?</li> <li>•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상대방의 어디를 보는가?</li> <li>• 상대방에게 경어를 항상 바르게 사용하는가?</li> </ul>	
용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화장은 상대방에게 지나친 시선을 주는가?</li> <li>• 나의 옷차림은 자신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li> <li>• 나의 머리는 얼굴형에 어울리며 단정한 편인가?</li> </ul>	

### III

## 강사 이미지 연출법

### 01 / 표정 관리법

호감 스마일 라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미소를 지으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라인이며 비호감 스마일 라인은 입꼬리가 일자이며 입술이 비뚤어진 라인이다. 이러한 스마일 라인을 위해서는 평소에 입꼬리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습하도록 한다.



〈그림 1〉

출처 : www.google.com

### 02 / 태도 관리법

호감을 주는 올바른 자세와 정중한 인사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훈련하여 자세 이미지를 스타일링한다. 모든 태도의 기본은 서있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표 2〉 기본자세

구분		자세방법
여자	손의 위치	오른손을 왼손 위로 올린다
	발의 포즈	뒤꿈치를 붙이고, 앞부리는 20도를 벌린다
	눈의 시선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표정 정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미소
남자	손의 위치	왼손을 오른손 위로 올린다
	발의 각도	뒤꿈치를 붙이고, 앞부리는 30도 벌린다
	눈의 시선	시선은 정면을 향한다
	표정 정도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미소

### 03 / 말투 관리법

좋은 말투는 외모가 주는 강력한 이미지를 능가하는 힘을 발휘한다. 또한 강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중에게 전달할 때 더욱 설득력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 1) 음색

목소리는 화자의 감정, 심리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듣기가 좋고 의사 전달이 명쾌하며, 화자와 청자에 대한 태도나 느낌, 감정의 섬세한 표현 능력이 두드러짐을 말한다.

#### 2) 음높이

목소리의 톤은 소리의 진동 횟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목소리를 고정시켜 말하는 것보다 고저의 변화를 주면서 말할 때 전달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3) 포즈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1~2초 잠깐 멈추게 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한다. 강의 시 청중의 관심을 끌거나 강조 부분에서 적절히 사용한다.

#### 4) 크기

적절한 소리 크기는 내용의 이해력을 돕기 때문에 공간과 상황에 따라 음성의 크기를 조절한다.

#### 5) 속도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성격이 급해 보이거나 듣는 사람을 긴장하게 한다. 반면 느리면 게으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강의 분위기가 늘어지거나 주의집중이 어려워진다.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면서 빠르기와 느리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1분에 270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 04 / 여성 용모 관리법

### 1) 메이크업

#### (1)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은 자신의 장·단점을 보완 수정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외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효과를 사회적인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사회적 관습과 신분, 직업을 표현한다. 개인의 피부타입과 피부의 색상에 제품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

〈표 3〉 피부타입에 따른 색상

색 상	피부타입
연핑크	혈색이 없고 창백한 피부
그린컬러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 어드름자국의 피부, 붉은 피부
흰색	어둡고 칙칙한 피부, T존 부위의 하이라이트 처리
블루 컬러	기미, 주근깨, 잡티가 많은 피부
퍼플 컬러	노르스름한 피부
옐로우 컬러	햇볕에 그을린 다갈색 피부

## (2) 아이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은 베이스 메이크업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로 얼굴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좋은 눈썹 모양은 눈의 시작점보다 먼저 시작해서 끝 점보다 긴 초승달 모양이며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잔털은 정리하여 깨끗함을 유지 하는 것이 좋다.

- 눈썹색상은 모발색이나 눈동자 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 눈썹길이의 약 2/3지점에 눈썹산을 그린다.
- 눈썹머리와 눈썹꼬리는 같은 선상에 있게 표현한다.
- 눈을 떴을 때 눈꼬리 방향과 눈썹 꼬리방향이 평행이 되게 그린다.

## (3) 립 메이크업

립스틱을 고르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피부 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얗고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피부라면 쿨 톤, 노란 빛이 감돈다면 워밍 톤이다.

〈표 4〉 워밍, 쿨톤 비교

워밍 (WARM)	쿨톤 (C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에 노란기가 돈다</li> <li>• 골드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li> <li>• 아이보리나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의상이 잘 어울린다</li> <li>•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컬러가 브라운에 가깝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가 희고 붉은 기가 돈다</li> <li>• 실버 주얼리가 잘 어울린다</li> <li>• 화이트, 네이비, 블랙 컬러의 의상이 잘 어울린다</li> <li>•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컬러가 블랙에 가깝다</li> </ul>

〈그림 2〉 피부톤에 어울리는 립 컬러



출처 : 아리따움

## 2) 헤어 연출법

헤어연출은 사람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짧은 시간에 개인의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개성 있게 연출하여 강사의 첫인상 효과에 많

은 부분을 차지한다.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은 계획성 있고 논리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얼굴형에 어울리는 연출은 호감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 (1) 둥근형

둥근형은 귀여운 이미지의 장점이 있는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가 부족하다. 포인트는 얼굴 전체를 작아보이게 하는 것이며 짧은 커트에 부드러운 컬이 있으면 둥근 얼굴을 커버해준다.

#### (2) 계란형

계란형은 가장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어떠한 형태의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키가 큰 경우, 롱 헤어의 모발에 큰 볼륨을 주면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다.

#### (3) 역삼각형

역삼각형은 이마의 윗부분이 넓고 가름한 턱선으로 약해보일 수 있으므로 얼굴형이 확연히 드러나는 짧은 커트 스타일은 피하고, 턱선에 헤어컬과 웨이브를 주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는 것이 좋다.

#### (4) 각진형

각진형은 동양인의 얼굴에서 많이 보이는 형으로 광대뼈와 각진 턱으로 강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 결점을 커버하기 보다는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초코 브라운과 같은 따뜻한 계열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길이는 턱선 아래정도가 좋다. 이마를 감싸는 스타일로 풍성하면서도 훔날림을 주어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한다.

### 3) 체형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은 시대 및 시조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창조된다. 대부분의 경우 착용한 의복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 신체비율에 따라 어울리는 코디 방법을 살펴본다.

### (1)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단순한 선과 작은 장식의 절제된 디자인이 적합하다. 자연스러운 어깨선의 긴 재킷, 목선을 부드럽게 강조하는 단순한 상의를 착용한다. 스커트는 여유있는 A라인과 길이는 무릎아래가 적당하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풍성한 박스형의 옷은 체형을 더욱 크게 보이게 한다. 소재는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좋고 부피감이 있는 것이나 큰 프린트 무늬는 적당하지 않다.

### (2)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실루엣으로 지나치게 밀착되는 것, 소매가 없는 것, 프린세스 라인의 실루엣과 타이트한 스커트, 팬츠는 피한다. 투피스 형태를 선택하고 투피스 상의가 약간 짧은 것이 좋다. 넓은 벨트, 큰 사이즈의 디테일이 강조된 액세서리 및 낮은 굽의 구두 등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보완해 준다. 그러나 너무 작은 무늬와 작은 핸드백 등은 어울리지 않는다.

### (3)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은 수직적인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의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밑단 쪽이 넓은 부츠 컷 팬츠, 엉덩이 중간정도의 길이의 재킷이 적합하다. 지나치게 광택이 있는 소재는 피한다. 너무 밝은 색보다는 차분한 색상을 선택하며, 상의에 비해 하의가 진한 색이 좋으며 상의는 스커트나 팬츠 위로 내어서 착용한다. 액세서리는 다소 작은 것을 착용하고 스카프, 브로치, 액세서리와 함께 단색의 의복으로 멋을 내도록 한다. 스타킹과 슈즈는 의복과 유사한 색상으로 맞춘다.

### (4) 키가 작고 마른체형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지나치게 몸에 붙는 형태, 넓은 소매나 넓은 칼라의 상의는 빈약한 느낌을 강조하므로 적당하지 않다. 재킷은 짧게, 스커트는 길고, 팬츠는 직선 또는 약간 플레어된 것이 어울린다.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상하의는 동일색의 것을 선택하고 다른 색의 경우는 하의와 동일한 색의 베스트를 착용하면 통일감을 주어 수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꺼운 벨트, 커다란 포켓, 장식이 달린 구두 및 긴 헤어스타일은 피한다.

**〈표 5〉 체형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

체형	특징	어울리는 스타일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
	상체는 보통 허벅지와 엉덩이가 풍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엉덩이 아래로 폭이 넓어지는 A라인 스커트</li> <li>• 폭이 좁은 바지</li> <li>• 하이웨이스트 원피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팬츠</li> <li>• 와이드 팬츠</li> </ul>
	어깨가 넓음 엉덩이에 볼륨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플한 라인의 상의</li> <li>• 볼륨있는 스커트</li> <li>• 와이드 팬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신에 두꺼운 소재</li> <li>• 상반신 레이어드</li> </ul>
	어깨, 허리, 엉덩이의 넓이가 거의 같은 일직선의 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의를 풍성하게 하는 주름치마</li> <li>• V넥라인 스웨터</li> <li>• 상의는 어둡고 하의를 밝은색으로 매치</li> <li>• 니트, 캐시미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프렌드룩 같이 박시한 스타일</li> <li>• 허리선을 강조하는 스타일</li> <li>•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지</li> <li>• 넓은 벨트</li> </ul>
	어깨와 엉덩이의 사이즈가 비슷하고 허리가 잘록한 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리가 들어간 재킷</li> <li>• 벨트형의 코트 상의</li> <li>• 팬슬 스커트</li> <li>•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스형 재킷</li> <li>• 헐렁한 스웨터</li> </ul>
	복부에 살이 많은 둥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깨 패드가 들어간 직선라인 재킷 또는 상의</li> <li>• A라인으로 퍼지는 원피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이 드러나는 시스루, 실크 소재의 상의</li> </ul>

 이미지출처 : <http://www.beautybyyourdesign.com/>

## 05 / 남성 용모 스타일링

### 1) 슈트 선택

강사에게 어울리는 슈트 컬러는 진한 남색 컬러이다. 활용 범위가 넓고 셔츠나 타이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또한 네이비 슈트를 입은 사람은 단정하고 분명해 보인다.

### 2) 셔츠 바르게 입기

셔츠는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 입어야 한다. 특히 목둘레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즈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새 셔츠를 입었을 때 목둘레 사이로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딱 맞는 사이즈이다.

셔츠를 입을 때는 에티켓이 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셔츠만 입고 있는 차림은 피해야 한다. 셔츠는 본래 수트의 속옷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격식 있는 장소에서 셔츠 차림으로 있는 것은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셔츠 주머니는 장식용이다. 따라서 셔츠 주머니에 펜이나 명함, 담배 등을 넣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3) 다양한 타이 컬러



레드/와인 - 열정이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핑크 - 부드럽고 감각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블루 - 쿨하고 지적인 인상으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다.



그레이 - 성실하고 진지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준다.



그린 - 젊고 경쾌한 인상을 주며 신입강사에게 추천한다.



옐로 - 자유롭고 활발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출처 : Men's Image Tuning

### 4)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

#### (1) 둥근형

사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메탈 프레임 소재를 선택하거나 스퀘어 타입의 모양 혹은 뿔테 안경이 어울린다.



#### (2) 사각형

유광보다는 무광이, 사각 프레임보다는 라운드 프레임이 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 (3) 역삼각형

옆으로 긴 타원형의 안경으로 넓은 얼굴이 보완된다. 모서리가 둥근 스타일이라면 크게 무리는 없다.



출처 : Men's Image Tuning

## 5) 착용 TIP

(1) 셔츠는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 입어야 한다.

특히 목둘레 사이로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딱 맞는 사이즈이다.

(2) 재킷 칼라 밖으로 나온 뒷모습 셔츠 칼라의 높이와 재킷 소매 밖으로 나온 셔츠 소매의 길이는 둘 다 1.5 ~ 2cm가 적당하다.

나온 부분이 너무 짧거나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제대로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타이의 길이는 벨트 중간 지점에 오도록 한다.

(4) 재킷을 벗었을 때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몸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 셔츠 단추, 벨트 버클, 바지 앞섶이 가지런히 일렬로 정리되어 있어야 옷의 실루엣이 살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 6) 체형에 따른 패션 코디네이션

(1)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

키가 크고 뚱뚱한 체형은 자칫 잘못하면 둔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무늬가 없는 검은색, 짙은 브라운색, 짙은 회색이나 스트라이프가 가미된 진한 색의 옷을 입어 체형을 보완한다.

재킷은 더블 재킷은 피하고 싱글 재킷을 선택하도록 한다.

## (2)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은 어떠한 스타일도 어울리지만 너무 마른형의 경우,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자기 체형보다 큰 사이즈를 찾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실루엣을 살리는 것이 세련되게 보일 수 있다. 상의와 하의를 다른 색으로 착용하며 단색보다는 체크무늬가 좋으며 세로줄 정장은 피하도록 한다. 상의를 밝은 색으로 코디하고 니트 소재를 착용하면 단점이 보완된다.

## (3)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은 상체에 살이 많은 체형으로 짙은 색상의 정장을 착용하여 전체적으로 둥글고 작고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검정색과 짙은 감청색 등의 수축색을 활용하고 세로줄 무늬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뒤트임이 두 개 이상인 상의는 상체를 더 크게 보이므로 피하고 뒤트임이 중앙에 오는 재킷이 좋다. 상의와 하의를 동일색상으로 입으면 키가 커 보여 작은 키를 보완할 수 있으며 팬츠와 구두의 색상도 통일한다면 더욱 이상적이다.

## (4) 키가 작고 마른 체형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은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스타일로 캐주얼하면서도 정장느낌의 디자인으로 짙은 색보다는 옅은 색상의 슈트를 착용한다. 아이보리 계열의 재킷과 동일한 색상의 팬츠로 신체적인 결점을 보완한다. 옷의 사이즈는 적당한 여유분이 있어야 하며, 가로선이 강조된 격자무늬가 무난하다. 볼륨감이 있는 니트, 어깨가 강조된 재킷이 어울린다. 너무 긴 재킷과 롱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 넥타이의 무늬는 작고 규칙적인 것을 선택하여 착용한다.



### 참고 문헌

김영란, 김지영, 박길순, 송유정, 오선숙, 주명희, 홍성순 (2012), 프로패셔널 이미지메이킹, 도서출판 경춘사  
황정선 (2011), (주)황금부엉이

제12장  
스피치 교육

#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

최 미 영  
(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 제12장\_스피치 교육

#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법

최 미 영 (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01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질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술도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유용한 기술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말이나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리고, 말을 해도 좋은 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레이블링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격을 높임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 02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 1) 비난하고 비판하는 식의 ‘너’ 메시지를 쓰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서로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 메시지(I - message)와 ‘너’ 메시지(You - message)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이 있는데, ‘나’ 메시지는 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너’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패턴이 있다.

‘나’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유를 돌리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는 말하기 방법으로 ‘너’ 때문이 아닌 ‘나’ 때문임을 인정할 때 소통은 쌍방향으로 전달이 되어 공감을 이끌어 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준다.

예) ‘너’ 메시지 : 당신은 꼭 늦게 들어와서 저녁 시간을 망치는군요.

‘나’ 메시지 : 당신이 늦게 오면 나는 당신과 저녁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어 속상해요.

### 2) 훌륭한 청자가 되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말하기와 듣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어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85% 이상의 사람들이 경청 능력에 있어서 평균 이하였고, 5% 미만의 사람들만이 우수하거나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50%에 불과하다. 나머지 50%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청취한 내용의 25%만을 경청하게 되고 나머지는 75%는 흘려듣게 된다. 좋은 화자는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 3) 효과적인 경청 방법

- (1) 준비한다 : 수업 시간이나 강연에 참가하면 수업계획서나 강의계획서를 나누어준다. 이 때 올바른 경청을 하려면 강의의 주제나 강의에 등장하는 용어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읽어두어야 한다.
- (2) 주의를 집중한다 : 수업 시간이나 강연에 참가하면 수업계획서나 강의계획서를 나누어준다. 이 때 올바른 경청을 하려면 강의의 주제나 강의에 등장하는 용어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읽어두어야 한다.
- (3) 예측한다 : 대화를 하는 동안 시간 간격이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말 할 것인가를 추측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추측은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데 도움이 된다.
- (4) 나와 관련짓는다 :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 목적, 경험과 관련시켜 본다. 자신의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면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질문한다 :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하려고 하면 경청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경청력이 높아진다.
- (6) 요약한다 : 대화 도중에 주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사상과 정보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 (7) 반응한다 : 피드백은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 당신이 이야기 하고, 질문을 던져 이해를 명료화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지각이 옳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오해가 있었다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당신이 하는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면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말을 너무 안 하거나 너무 짧게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아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만을 간추려 짧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 4) 적절한 제스처를 활용하라

몸짓은 말로 하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대화나 의사소통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소이다. 몸짓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그것인 굉장히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 되지만, 반대로 그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식에 불과하다.

몸짓 가운데 '3종의 신기(神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끄덕임, 시선, 미소' 이 세 가지이다.

상대방을 보고 웃거나 끄덕이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걸거나 하는 것을 '애착행동'이라고 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애착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화자가 상대방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신호가 된다.



## 청중을 설득하는 강의기법

강의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청중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거나 두서없이 구성하면 청중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청중 분석에서부터 주제 선택, 내용구성, 표현 기법, 전달에 관련하여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01 / 청중을 미리 파악하기

청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강의를 준비할 때 청중의 구성과 관련된 특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청중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생각해보아야 한다.

- 청중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관심사항이 있는가?
- 청중의 성비, 그리고 어떤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청중 가운데 전문가가 있는가?
- 청중이 당신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 02 / 흥미를 유발하는 도입부

교육 시작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Ice-Breaking)이다.

이것은 얼어붙은 마음을 깨는 것으로,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라포(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즉, 서로 토크의 물꼬를 트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 1) 유머를 겸비하여 자기소개를 하라

강사가 전문성을 한껏 자랑하는 자기소개는 금기다. 청중의 친근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훈훈한 미소나 유머를 담아 청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교육 내용의 특징에 걸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가벼운 질문으로 강의의 물꼬를 터라

사람 사이의 친밀성이란 서로 알아가고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쌓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사는 청중을 교육과정에 참여시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청중을 참여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 기분 등에 대한 가벼운 인사, 오늘 이 강의장에 제일 먼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물음과 칭찬, 베스트의 상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관한 질문과 칭찬을 들 수 있다.

질문의 5단계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 미소 띤 표정으로 눈 맞춤 후 질문한다.
- 2단계 : 질문에 대해 답변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기다려라.
- 3단계 : 대답을 안 할 경우 상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라.
- 4단계 : 답변을 들을 때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보여라.
- 5단계 : 답변을 듣고 잘 정리해서 답변에 대해 칭찬하라.

## 03 / 청중을 사로잡는 강사의 스킬

### 1)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라

일반적으로 강의의 3대 요소는 지식(knowledge), 스킬(skill), 태도(attitude)라고 말한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스킬

은 기술상의 재주나 재능을, 태도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나 몸가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강사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강의 기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특히 여덟 시간 이상 한 테마로 연속 강의를 해야 할 때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인가, 혹은 어떤 시점에서 실습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강의에 임해야 한다.

## 2) 적절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라

강연에서 청중은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동안 대개 많은 사실과 정보가 넘쳐나서 청중은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정보는 시각적 경로를 거쳐서 수용이 된다. 그런데 다른 경로 (듣기, 냄새 맡기, 만지기 등)로도 함께 수용될 때 확실히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듣고 보는 것을 동시에 했을 때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 중간에 내용을 (일부라도) 시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청각 자료 활용 기법은 강의 주제와 관련 있는 시청각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시선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청중은 시각 자료를 보느라고 강사의 말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3) 증거를 통해 공신력을 높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강의를 청중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증거란 사실, 구체적인 예, 통계자료, 증언 등 주장을 입증해주는 자료를 통칭하는 말이다. 특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은 설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강의 도중 말문이 막힐 때

연단 공포증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에 속한다. 청중이 당신에게 호의적이고 대개

의 경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대감에 차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불안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은 철저한 준비이다. 먼저 원고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라. 그렇게 하면 말문이 막힐 때, 올바른 대목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루려는 주제의 모든 사항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반대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말문이 막힐 경우, 침착하게 시간을 벌면서 잠깐의 여유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거나, 청중이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1~2분 정도 주는 것도 괜찮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예민해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한다.

### 5) 청중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라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피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외형적인 부분(외모, 자세 등)과 음성적인 부분(발음, 음색, 속도, 목소리 톤 등), 그리고 비언어적 부분(바디랭귀지, 몸짓언어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 강연자가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진심이다.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의 저자 노선영 작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인 노선영 작가는 ‘도전하는 열정에 장애는 없다.’라는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그녀는 ‘우리가 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자신의 도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선영 작가는 알아듣기 어려운 더듬더듬 하는 말투로 강의를 시작하고, 청중은 자막이 없는 강연을 듣기가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중들은 그녀의 강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강연은 발음이나 발성 등 음성적인 부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이유는 강사가 청중들과 소통하려는 진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 04 / 정확하게 전달하라

### 1) 목소리의 명확한 전달

말로 표현된 단어, 문장, 사고 등을 취급할 때, 강사나 강연자의 과제는 청자가 그 단어를 듣고 단어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힘 있고 커다란 음성은 객석의 맨 뒤까지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소리가 분명치 않게 발음되거나 부정확하게 발음된다면 그 소리는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과 발음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발음능력 향상법

-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발음하는 습관을 기른다.
- 발음이 어려운 단어일수록 천천히 발음한다.
- 평소에 어려운 발음 연습을 많이 해본다.
- 발음 연습 멘트로 낭독훈련을 열심히 한다.

#### 발음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표

##### 1. 발음이 어려운 단어

- 경찰청장살, 백법학박사, 확률분포표, 쿵덕더덕, 왕범빵 등

##### 2. 어려운 발음 연습 문장

- 칠월 칠일은 평창 친구 친정 칠순 잔치날
- 저기 저 뽕틀이 내가 뽕 뽕틀인가 내가 안 뽕 뽕틀인가
- 동편 뜰 서편 뜰 소풍길 다 무사했습니다.

##### 3. 낭독 훈련

- 노안성 망막 황반증이 있는 환자 황환은 관측용 망원경으로 해양성과 천왕성을 관찰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치매노인과 갱년기 장애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계기관으로 배포하였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모든 유인물을 자전거로써 나르기로 했습니다.

### 3) 주의해야할 표준어와 시물존칭

틀린표현	표준어
저희나라	우리나라
맨날 네 생각해	만날 네 생각해
창피해	창피해
나 어떻게 해	나 어떡해
세잔, 네잔	석잔, 녀잔
웬지	웬지
웬일이니	웬일이니
너와 나는 틀러	너와 나는 달라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여기 앉으실게요	여기 앉으세요

### 4) 여유 있게 천천히 말하라

모음 ‘아, 에, 이, 오, 우’를 정확하게 발음하라. 이 모음 중에서 가장 밝은 느낌은 ‘이’ 음이다. 즉 ‘이’ 음을 강하게 발음하면 어두운 느낌의 소리가 밝아진다. 또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길이는 45초~1분 정도이고, 듣기 쉬운 속도라고 생각 되는 속도는 1분에 약 270자를 읽는 속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항상 ‘좀 느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속도로 차근차근 말하라.

## 05 / 동기부여를 주는 마무리

올바른 도입만큼이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다. 올바른 도입으로 청중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올바르게 마무리함으로써 실천하자는 호소와 더불어 당신의 메시지가, 즉 당신의 주장이 청중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 그래서 결론은 간결하고 인상적이어야 한다.

마무리의 방법으로는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동영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나 명언을 들어 마무리 하는 경우, 또는 어떤 예화나 이야기를 강사의 육성으로 스토리텔링 하듯 들려주는 마무리 방법 등이 있다. 강사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청중에게 재동기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접목해야 한다.

### 강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신호

- 모든 대화 요점에 대해 토론 했고, 결론 사항을 요약했다.
- 예정된 시간이 지났다.
- 대화를 긍정적으로 진행하는데도 상대방이 이상하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 상대방이 하품을 참지 못한다.
- 상대방이 의자에 앉아서 불안하게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계를 본다.

### 강의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 10가지

1. 청중의 기대를 잘 모른다.
2. 준비를 잘 하지 않는다.
3. 연설을 지루하게 상상력 없이 시작한다. (관심과 주목을 끌지 못한다.)
4. 일목요연하지 않은 원고를 작성한다. (말문이 막힐 위험이 있다.)
5. 시선을 접촉하지 않고, 청중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
6. 이해할 수 없는 논증을 한다.
7. 너무 단조롭게 또는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한다.
8. 사례를 들지 않고 설명을 명료하게 하지 않는다.
9. 연사와 연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10. 좋지 못한 결론을 내린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고, 청중에게 실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좋은 강의를 위한 조언 10가지

1. 청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2. 철저하게 준비하라. 반드시 반박해야 하는 반대 입장에 대해 생각 하고 준비하라.
3. 연설을 효과적으로 시작하라. (반어적, 도발적으로)
4. 강연장과 보조장비를 점검하라.
5. 원고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라.
6. 연설을 논리적으로 실감나게 구성하라. 절정과 숨 돌릴 단계를 생각하라.
7. 연설의 내용을 시각화하라.
8. 시선 접촉, 수사적 질문 등으로 청중을 참여시켜라.
9. 목소리와 표정, 몸짓에 변화를 주어라. 그러나 배우처럼 하지는 마라!
10. 낙관적인 결론을 생각하라. 청중으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요구하라.



## 참고 문헌

---

윤치영(2005), 설득, 경청, 논박의 기술, 일빛 출판사

Handbuch Rhetorik – Krieger · Hantschel, 백미숙 옮김(2000), 스피치 핸드북, 일빛 출판사

정미영(2009), 스피치커뮤니케이션, 한국학술정보(주)

이케가미 에리카 지음, 이윤영 옮김(2011), 90초 스피치, 흐름출판

김해원(2010), 내 몸값 올려주는 강의의 기술, (주)도서출판 아름다운 사람들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3장  
프레젠테이션  
구성방법 I

# 파워포인트 활용방법 습득(기초)

김성남  
((주)샘스토리 대표이사)

# I 파워포인트 활용방법 습득(기초)

김 성 남 ((주)샘스토리 대표이사)



## 파워포인트 디자인의 기본 원칙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글꼴, 색, 이미지 그리고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만 잘 지켜도 깔끔하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작성이 가능하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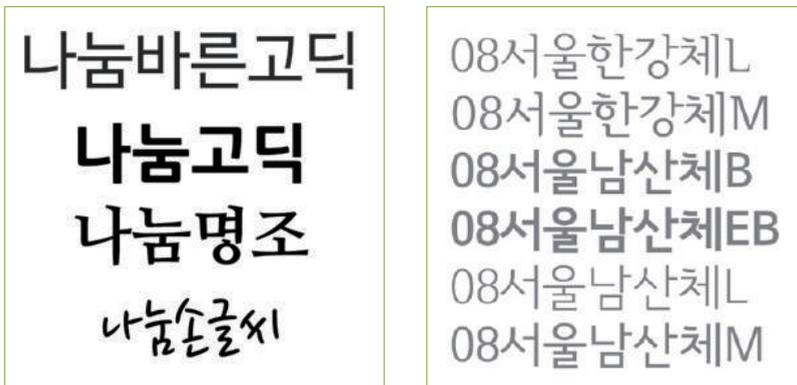
### 01 / 글꼴의 사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표준 글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독성은 좋을 수 있지만, 지루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게다가 천편일률적이고 흔해서 차별성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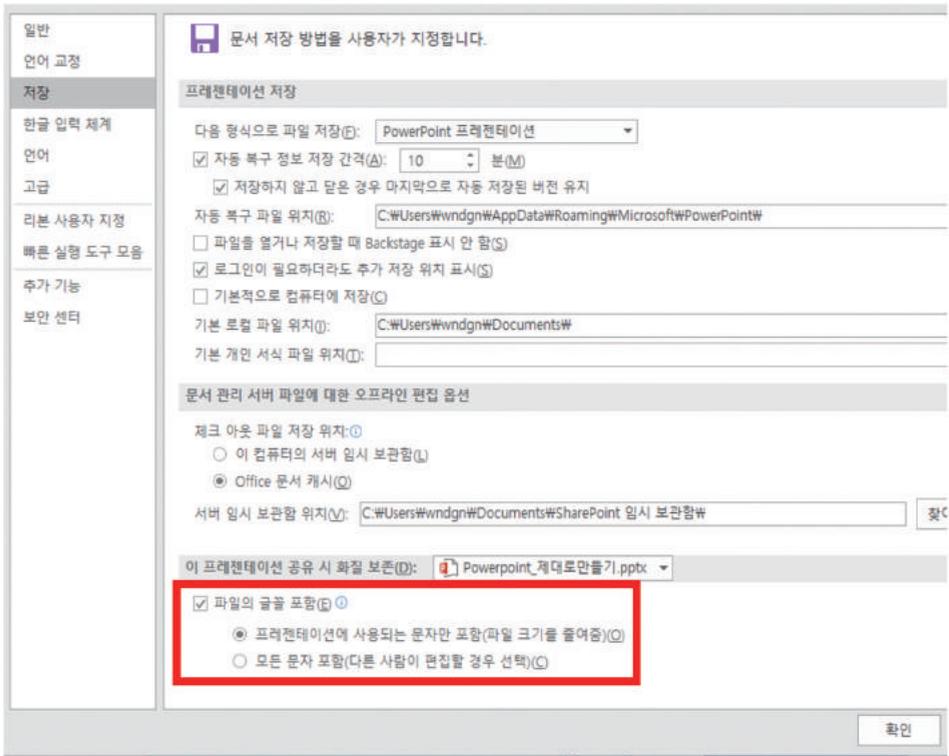
〈윈도우의 표준 글꼴들〉

이를 대체할만한 글꼴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폰트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서체가 있다. 이 글꼴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눔폰트와 서울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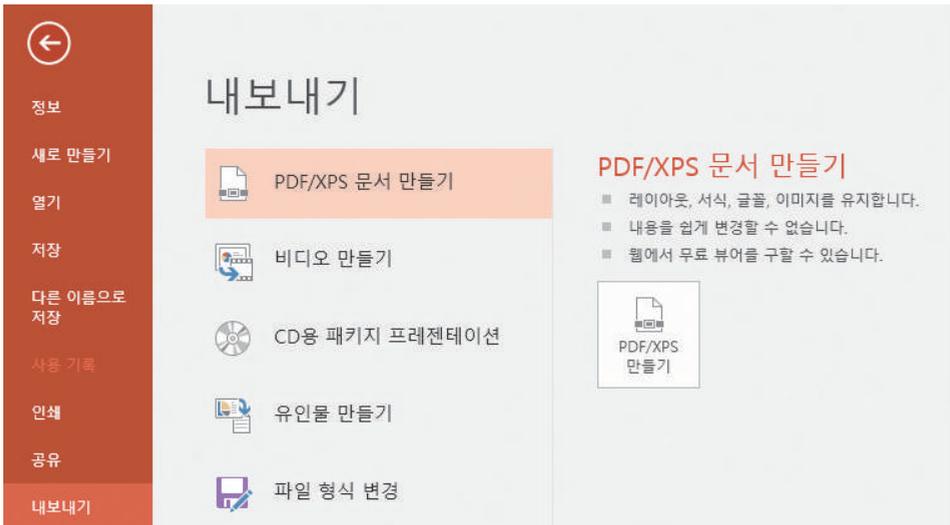
글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다. 본인이 작업한 컴퓨터에서 사용한 글꼴 파일이 강의 장소같은 다른 곳의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PPT 파일을 열면 해당 글꼴이 사라지고 기본글꼴로 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두 가지의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다.



〈파워포인트 옵션에서 글꼴을 함께 저장하는 방법〉

첫째는 파워포인트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된 글꼴을 파일에 함께 저장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사용한 글꼴 그대로 볼 수 있다. 단, 해당글꼴이 없는 컴퓨터에서 편집이나 수정을 할 경우는 폰트는 다시 표준글꼴로 돌아가 버린다. 수정없이 그대로 보기만 할 예정이라면 글꼴 함께 저장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파일을 저장하면 된다.

둘째는 더 이상 수정이나 편집할 필요가 없는 최종 완성본이라면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애니메이션 효과나 화면전환 효과 등은 사용할 수 없지만 글과 그림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내용이라면 파일을 전달받은 측에서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드는 방법〉

슬라이드에는 가급적 30포인트 이하의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청중의 연령, 발표장소의 크기 등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한 파일에서 3가지 이상의 글꼴을 사용하는 것은 외관상 혼란스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02 / 색의 사용



〈텍스트와 배경간의 배색의 예〉

위의 그림에서 눈에 잘 띄는 글자는 어느 것인가? 간혹 텍스트와 배경간의 색을 사용할 때 외관과 심미성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가독성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색의 대비와 배색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래는 가독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고려한 예이다.



〈바람직한 글자-배경 배색의 예〉

### 03 / 이미지의 효과적인 사용

슬라이드 속에 이미지를 넣어 사용할 때는 발표내용을 돋보이게 하거나 발표내용을 효과적으로 함축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나 장식적인 이미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에 방해가 되기도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의 크기는 최소한 HD 사이즈(800픽셀×600픽셀)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슬라이드를 인쇄하여 자료집으로 만들 경우라면 이 정도의 이미지 크기와 품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미지와 글을 함께 한 슬라이드에 넣을 때는 가급적 글자수를 최소화하고 이미지로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 좋다. 한 문장이나 구절로 표현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강사가 직접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셋째, 이미지를 넣을 때는 그 슬라이드의 배경은 무늬나 그라데이션같은 것 없이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이미지가 확실히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에선 테두리 선 이외에 특별한 장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미지와 제목 또는 문장간의 배치이다. 레이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지와 문장의 배치 사례를 통해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이미지와 문장의 배치 사례1〉

〈사례1〉과 같은 레이아웃은 거의 최악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울리지도 않고, 임팩트도 없다. 이미지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면 그에 걸맞게 〈사례2〉처럼 이미지를 전체화면에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데 〈사례2〉의 경우 문장이 이미지와 겹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미지와 문장의 배치 사례2〉

이 경우 <사례3>처럼 글자색에 따라 이미지의 명암을 조절하고 글자에 그림자효과를 주면 가독성이 훨씬 높아진다. <사례4>는 여기에 문장의 배치와 박스의 추가로 글자에 가독성을 높이고 강한 메시지 전달의 느낌을 더했다. 단, 이 경우 텍스트를 박스 안에 넣을 때 이미지의 핵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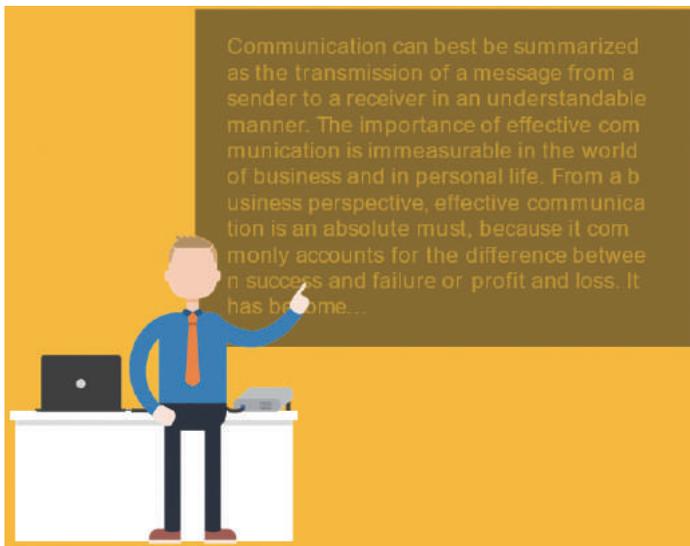
<이미지와 문장의 배치 사례3>



<이미지와 문장의 배치 사례4>

## 04 / 텍스트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문장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슬라이드에 모두 텍스트로 넣는 것은 좋지 않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글로 표현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이나 설명은 말로 하는 것이 좋다. 원고를 토대로 슬라이드를 만들 경우 종종 이 점을 잊고 원고 내용을 슬라이드로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강의를 듣는 청중에게는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로 느끼게 한다. 아래 그림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에 대한 슬라이드인데, 내용을 거의 전부 텍스트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슬라이드 화면은 청중을 괴롭게 만드는 화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내용을 전부 슬라이드에 넣으면 강사보다 슬라이드를 더 오래 보도록 하는 역효과까지 가져온다. 아래 제시된 1번의 경우 2번처럼 적절한 그래픽과 요약된 텍스트로 수정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청중이 지루하지 않게 강사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슬라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지 말자.



〈텍스트 제시의 예1〉



〈1번을 수정한 예2〉

아래 3번의 예에서 제시된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기보다는 보고서에 가깝다. 이것은 원고 내용의 중요성에 집착하여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슬라이드로 옮긴 것이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텍스트만 제시할 경우라면 4번의 예처럼 내용을 요약하고 블릿기호로 목록화하고 개조식으로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여전히 딱딱하고 지루하다.

A **presentation** is the process of presenting a topic to an audience. It is typically a demonstration, lecture, or speech meant to inform, persuade, or build good will. The term can also be used for a formal or ritualized introduction or offering, as with the presentation of a debutante.

Definition :

- The process of offering for consideration or display
- A social introduction, as of a person at court
- A demonstration, lecture, or welcoming speech
- A manner or style of speaking, instructing or putting oneself forward
- The manner of presenting, esp the organization of visual details to create an overall impression

〈텍스트 제시의 예3〉

##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A **presentation** is the process of presenting a topic to an audience. It is typically a

- demonstration,
- lecture, or
- speech meant to inform,
- persuade,
- or build good will.

The term can also be used for a formal or ritualized introduction or offering, as with the presentation of a debutante.

〈텍스트 제시의 예4〉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래 5번처럼, 내용을 잘 표현하고 요약해 주는 아이콘과 심볼을 사용하여 시각화해주고 문장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은 문서가 아니라 시청각자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달하려는 내용에 적합한 아이콘이나 심볼 자료는 웹에서 검색하여 찾아낼 수 있는데 본고의 후반부에 도움이 될만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A **presentation** is the process of presenting a topic to an audience.



DEMONSTRATION



LECTURE



SPEECH



PERSUADE



BUILD GOOD WILL

〈텍스트 제시의 예5〉

## 05 / 원고를 슬라이드로 전환하는 방법

우선 아래 원고를 보자. 발표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원고다. 이 원고를 슬라이드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고내용의 분석과 요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교육의 의미

- 그림1** 교육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지닌 소질과 가능성을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발달시켜 자기의 전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여,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나 가치있는 존재로서 일생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그림2** 또한 시민·사회인으로서 소속된 가정·지역 사회·국가·국제사회 등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흥미·개성에 적합한 직업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공헌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교육의 의미

**그림1** ( *소질과 가능성의 발달  
교육을 통한 능력 계발  
가치있는 존재로서의 자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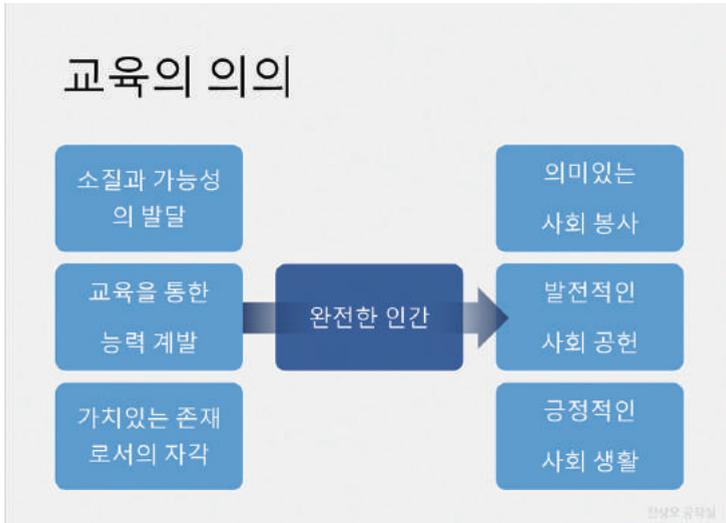
교육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하여 인간이 지닌 소질과 가능성을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발달시켜 자기의 전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하여, 보다 더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나 가치있는 존재로서 일생을 보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인으로서 소속된 가정·지역 사회·국가·국제사회 등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흥미·개성에 적합한 직업인으로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공헌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2** ( *의미있는 사회 봉사  
발전적인 사회 공헌  
평화적인 사회 생활* )

〈원고와 원고를 요약하기 위한 분석 작업〉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분석과 요약할 부분을 체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파워포인트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한 장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각화로는 청중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강한 인상을 주기도 어렵다. 디자인을 좀 더 수정해 보자.





##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계획과 준비

프레젠테이션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발표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계획하기, 준비작업, 연습하기, 발표하기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 01 / 계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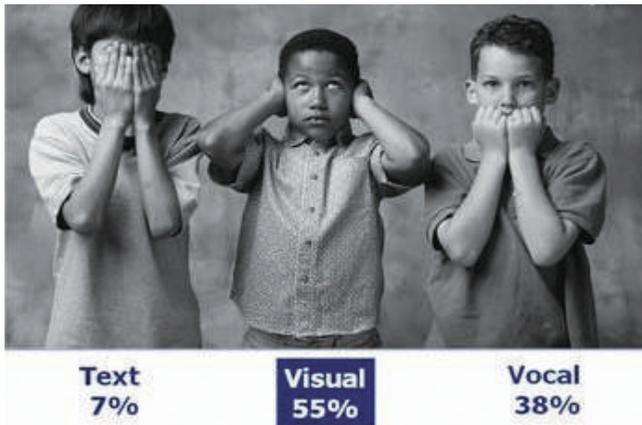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전체 발표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슬라이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 청중은 어떤 사람들인가?
- 그들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내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 발표장소는 어떤 곳이고 발표시간은 얼마나 되나?

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해보면 발표를 위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연사와 청중이 어느 정도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기존에 해오던대로 자료를 구성하고 준비하면 된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분량과 순서(목차), 그리고 슬라이드에 포함시킬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추가적인 정보들이다. 그러한 요소들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에 제시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따라 준비기간과 자신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02 / 준비하기

준비단계에서는 발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시각적인 보조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료의 형태별로 청중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다음 그림과 같으므로 발표자료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계획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된 내용이라고 여기는 텍스트는 발표당시에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자료 안에 시청각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강사의 복장이나 표정, 제스처 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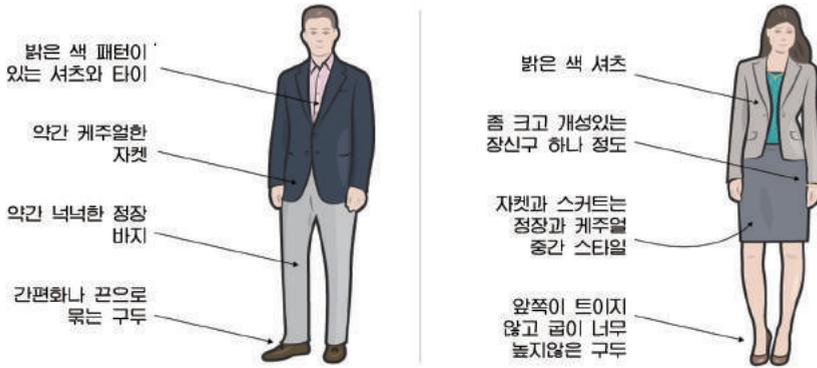


〈청중에게 노출되는 자료형식별 영향〉

우선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은 전체 목차와 제시 순서와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강의나 발표의 목표 설정,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계획, 주요 핵심 내용의 분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마무리 단계에서 결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처음 도입부에 청중의 시선과 귀를 사로잡을 방법이나 노하우를 갖추는 것과 전체 내용에서 특히 강조할 핵심 키워드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이다. 강의 전날의 컨디션이나 당일의 목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사항이라는 이야기이다.

복장의 경우 너무 밝은 색상보다는 어두운 톤이 더 지적이고 유능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고, 신발의 경우 오래 서서 강의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편안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스타일이 좋다. 아래 그림은 강사의 복장에 대한 설명이다. 복장에서 핵심은 편안하고 친근해 보이면서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강사의 복장 예시〉

마지막으로 준비단계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강의장소의 발표 여건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다. 강의도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등,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이나 PC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갖춰져있지 않다면 강사가 직접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슬라이드 외에 별도의 유인물이나 자료를 청중에게 나눠줘야 할 경우 그 또한 미리 운영 담당자에게 요청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영상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강사가 USB 메모리 등에 담아 가는 등 준비를 꼼꼼히 해야 강의 당시에 당황함 없이, 시간지연 없이 매끄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03 / 연습하기

연습은 발표준비가 다 된 후 실전에 들어가서 긴장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발표





## 프레젠테이션 제작시 유용한 웹 사이트

### 01 / 사진 자료의 검색과 활용: 구글 이미지 검색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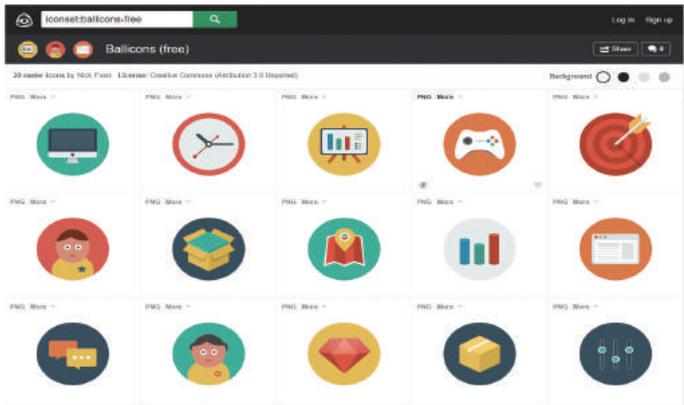
구글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미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사이즈별, 색상별, 유형별(사진, 클립아트, 움직이는 그림 등), 저작권 유형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Google의 이미지 검색도구>

### 02 / 아이콘 및 심볼의 검색과 활용: iconfinder.com

iconfinder.com 은 90만 개 이상의 아이콘과 심볼을 제공하는 전문 사이트이다. 유료 이미지 외에 무료 이미지도 적지 않으니 원하는 콘셉을 영문 키워드로 검색하여 그에 해당하는 심볼이나 아이콘 등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iconfinder.com>

### 03 / 벡터 그래픽 검색과 활용: freepik.com

freepik.com의 모든 그래픽은 출처만 명기한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깔끔하고 선명한 벡터방식의 그래픽도 제공하는데, 이 벡터 그래픽 파일은 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는 파일 포맷(ai 또는 eps)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연 후, 파워포인트에서 사용가능한 wmf, emf, png 등의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freepi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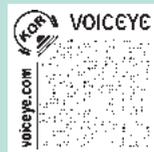
## 결론

프레젠테이션은 무엇보다 정보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는 자료가 아니라 강사이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없어도 명강사는 청중을 사로잡으며 한 시간이 넘는 강의를 할 수 있다. 좋은 강의보다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없다. 무엇보다 먼저 좋은 강사가 되어야 하고, 프레젠테이션은 그 후에 자신의 강의를 돋보이게 하고, 말로는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시청각 자료들을 동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프레젠테이션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강사와 발표자료와 청중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발표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www.slideshare.net](http://www.slideshare.net)  
[www.google.com](http://www.google.com)  
[www.iconfinder.com](http://www.iconfinder.com)  
[www.freepik.com](http://www.freepik.com)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4장  
프레젠테이션  
구성방법 Ⅱ

# 파워포인트 활용방법 습득(심화)

김성남  
((주)샘스토리 대표이사)

## 제14장\_프레젠테이션 구성방법 II

# 파워포인트 활용방법 습득(심화)

김 성 남 ((주)샘스토리 대표이사)



### 표지 만들기

제목 슬라이드라고도 부르는 표지는 보통 강의 시작 전에 미리 화면을 띄어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청중들에게 발표내용에 대한 첫인상을 주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표지는 강의주제에 적합한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제목을 적절히 배치해 심플하면서 강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사진과 제목을 배치하는 구성의 예시이다.



〈표지 레이아웃 예시〉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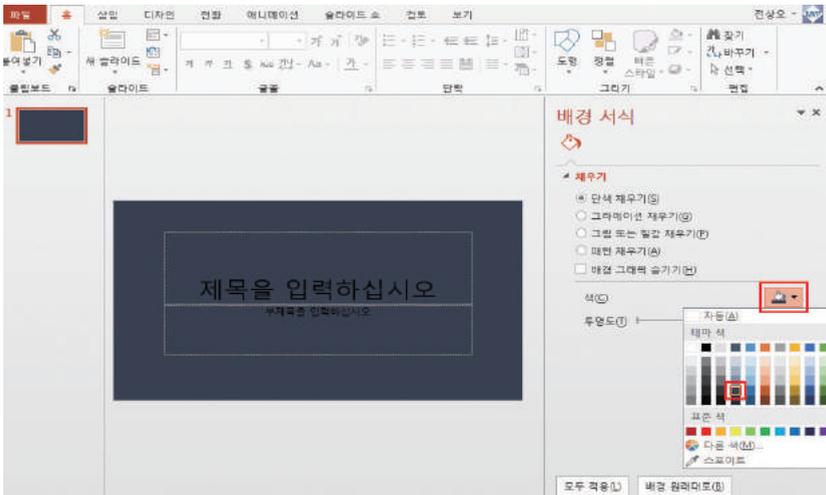
## 목차 만들기

목차는 파워포인트 작업에서 거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서와 콘텐츠 작업은 목차가 출발점이다. 미리 목차 구성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슬라이드 제작에 들어가면 전체 구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파워포인트 목차는 텍스트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성의 없어 보이므로 대부분 스마트 아트나 도형을 사용하여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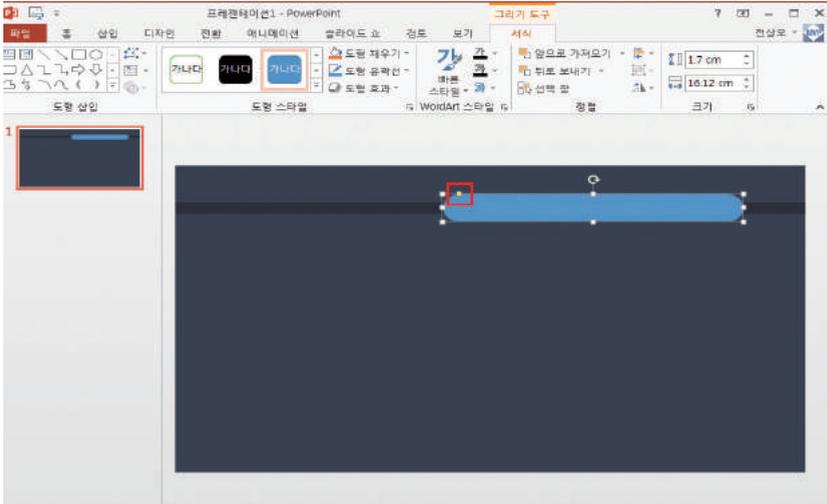
다음의 목차 만들기 예제에서 사용한 주재료는 [도형]-[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제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01 / 배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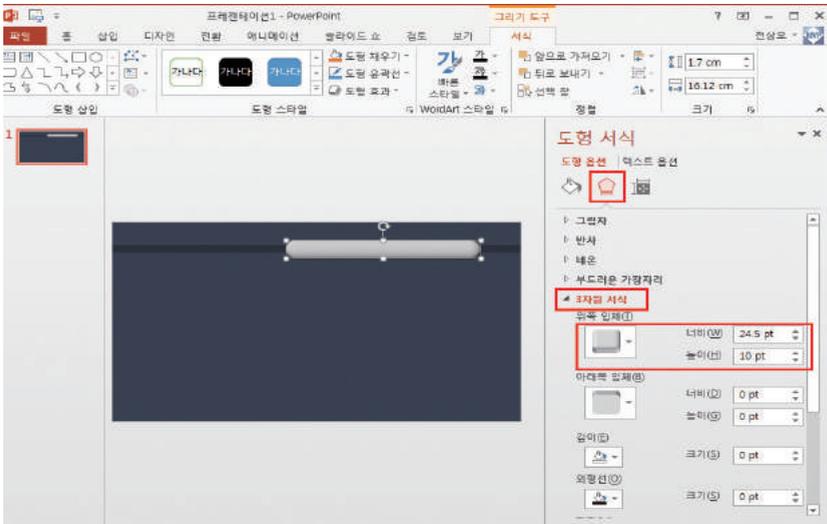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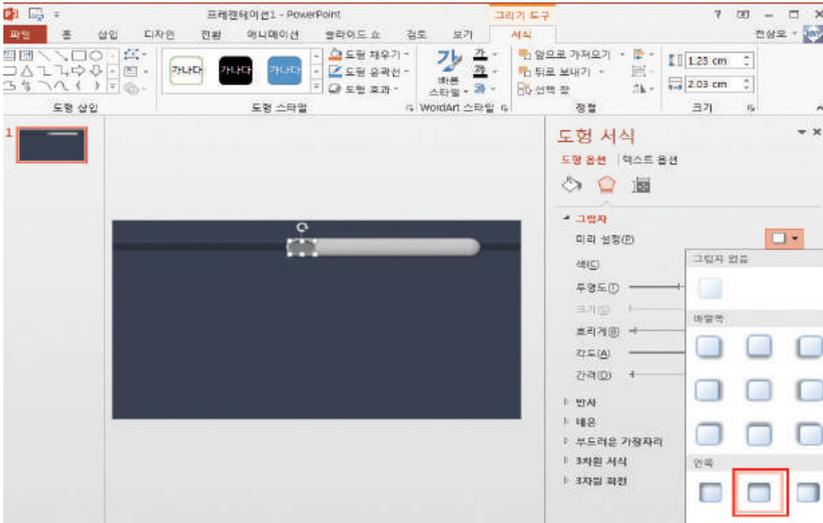
## 02 / 텍스트 상자 디자인하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텍스트 상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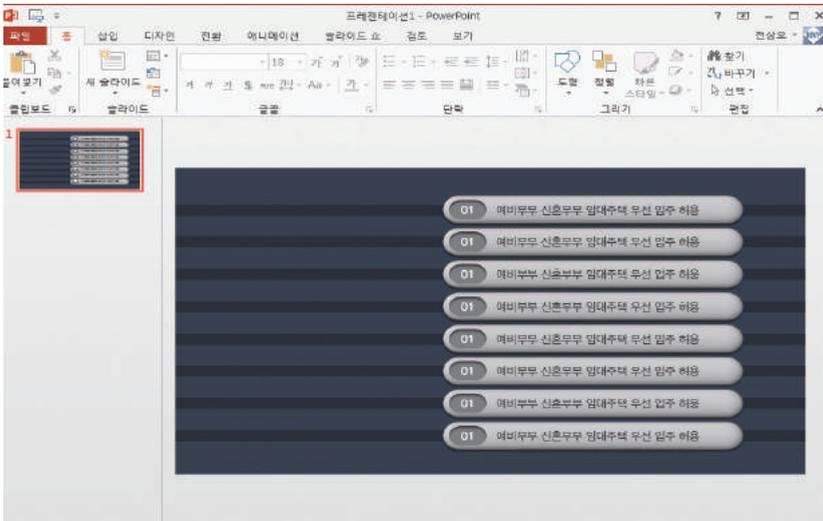


〈텍스트 상자에 입체효과주기〉



<목차 번호를 넣을 부분 디자인하기>

### 03 / 목차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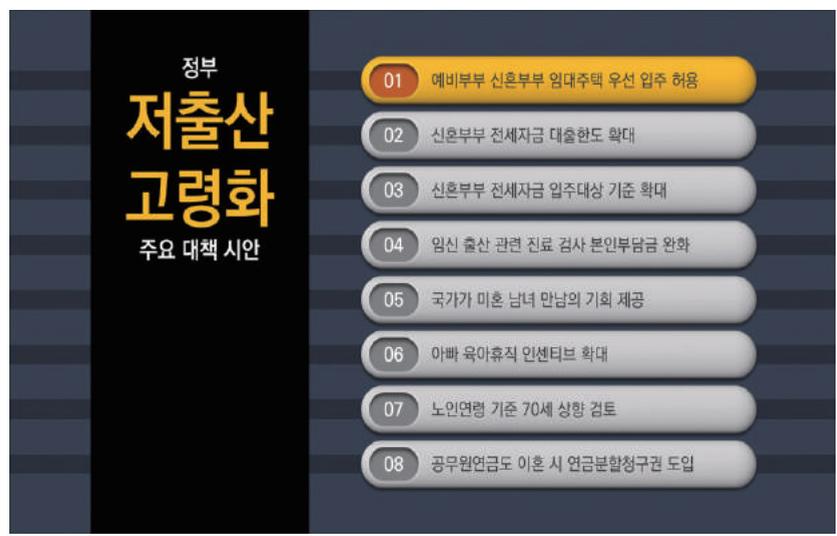


<목차의 수에 맞춰 텍스트 상자 복사해 배치하기>



〈강조할 부분의 색 변경하여 해당 부분마다 배치하기〉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최종 완성된 목차 슬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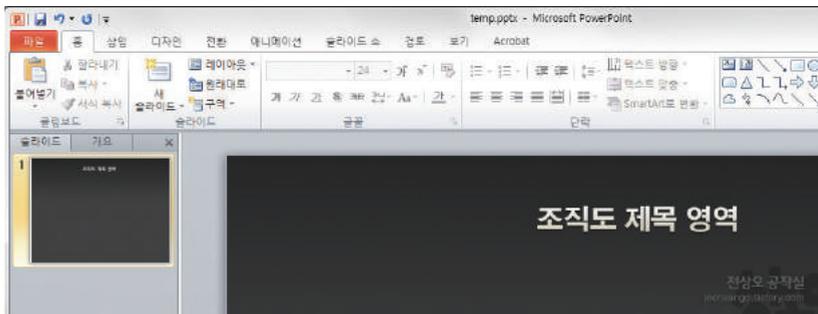
### III

## 스마트 아트를 이용한 다이어그램 만들기

스마트 아트는 다이어그램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에서 스마트 아트를 활용하여 조직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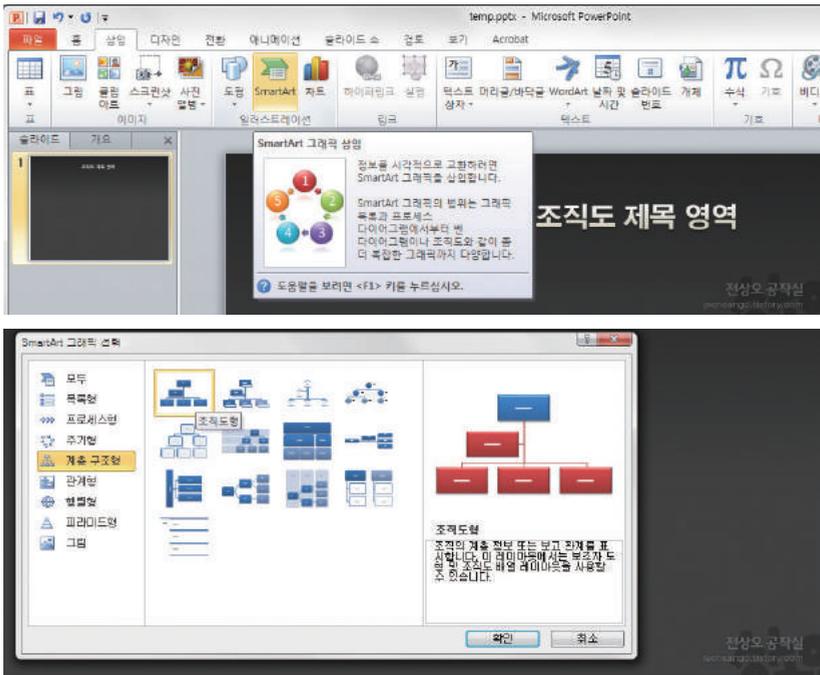
### 01 / 배경과 제목 만들기

다이어그램은 흔히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만들게 되므로, 배경색은 여러 가지 색이나 장식없이 단순한 무채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 02 / 스마트 아트 집어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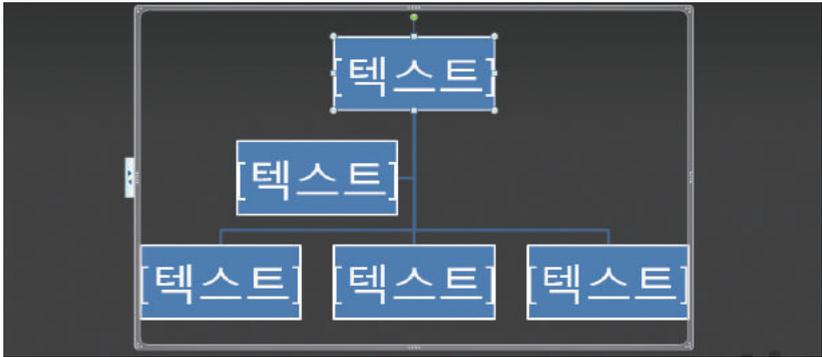
스마트 아트는 다이어그램의 유형에 따라 목록형, 프로세스형, 계층구조형 등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하여 삽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조직도를 만들 예정이므로 계층구조형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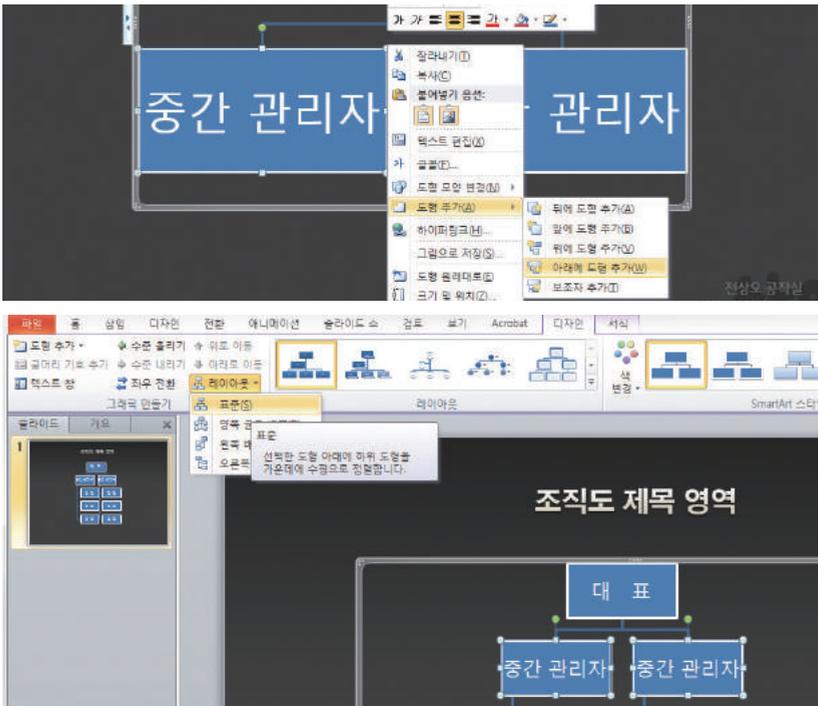


〈스마트 아트 유형 선택과 삽입〉

### 03 / 조직도 형태 수정하기

조직도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직도의 형태를 다음 그림들처럼 수정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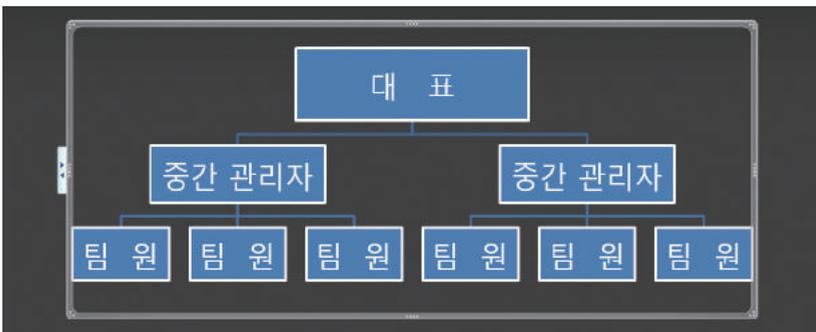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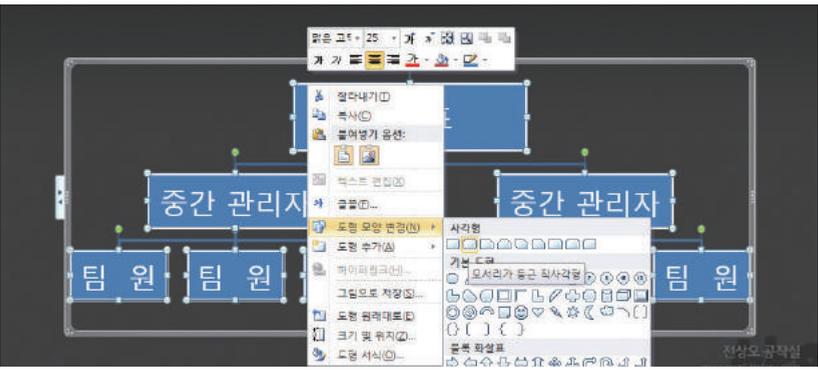


〈조직도 형태 수정과정〉

## 04 / 조직도 디자인 수정하기

기본 도형을 좀더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한다.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으로 도형모양을 변경하고 입체효과를 주고, 색을 변경하여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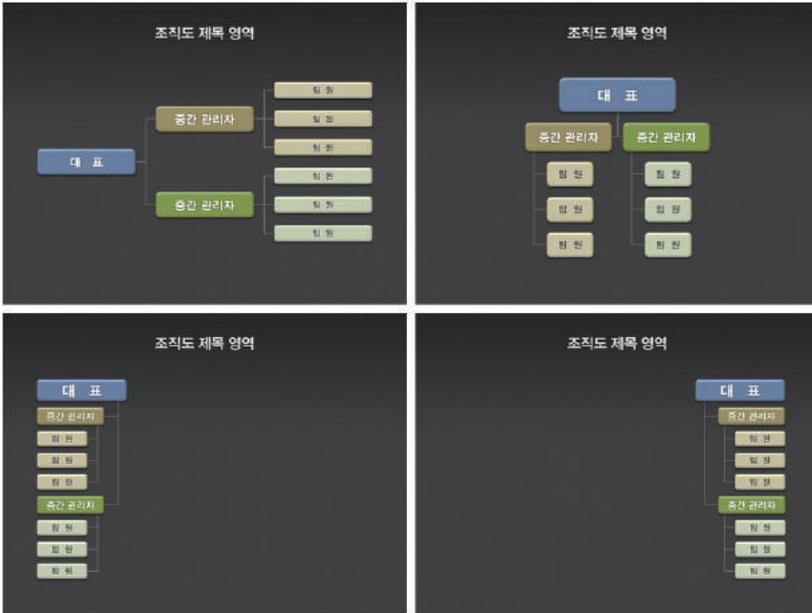
〈조직도에 사용된 도형 디자인 수정하기〉



〈완성된 조직도〉

## 05 / 스마트 아트 변경으로 다양한 레이아웃 자동 생성하기

스마트 아트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레이아웃의 다이어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구성과 디자인만 변경하는 것이 매우 쉽고 빨라진다.



〈스마트 아트의 자동 레이아웃 기능으로 변경된 조직도〉

# IV

## 파워포인트에 인터넷 영상 삽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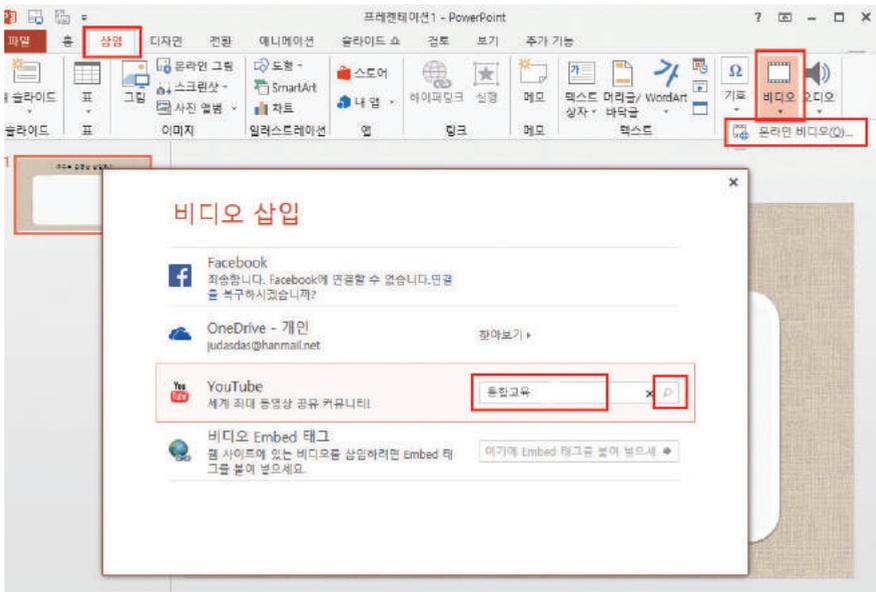
파워포인트는 인터넷 동영상을 쉽게 삽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2010 버전까지는 Embed 태그만 지원했으나 2013 버전부터 유튜브 동영상 검색 기능도 지원하므로 활용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여기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고 스마트폰 배경 그래픽에 삽입하여 실감나는 영상 삽입 화면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유튜브 영상을 삽입한 슬라이드〉

먼저 배경으로 사용할 도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슬라이드 전체 배경은 캔버스 질감을 사용하였다. 우선, 리본메뉴의 [삽입] 탭에서 [도형]-[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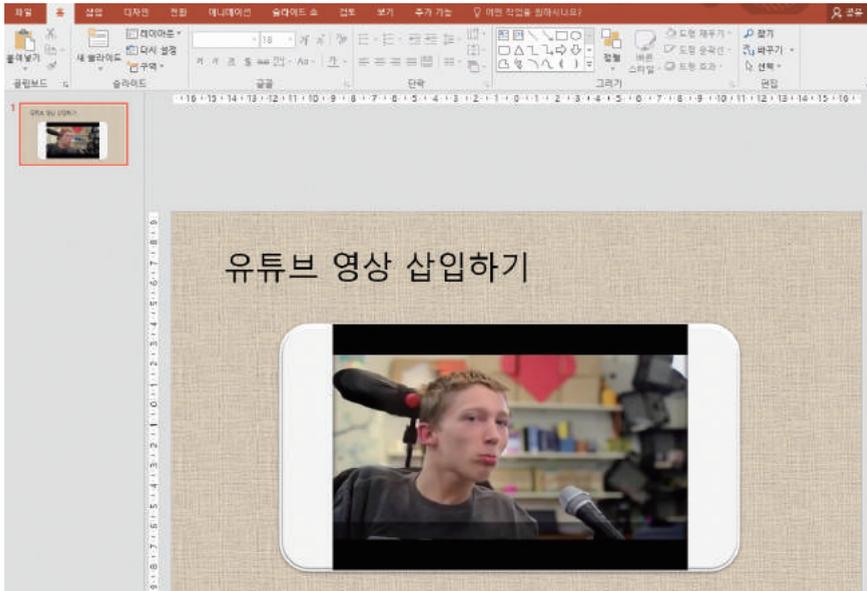


〈동영상이 들어갈 틀 만들고 유튜브 영상 검색하기〉



〈검색한 영상 선택 후 삽입하기〉

삽입한 유튜브 영상의 크기를 스마트폰 배경에 맞추어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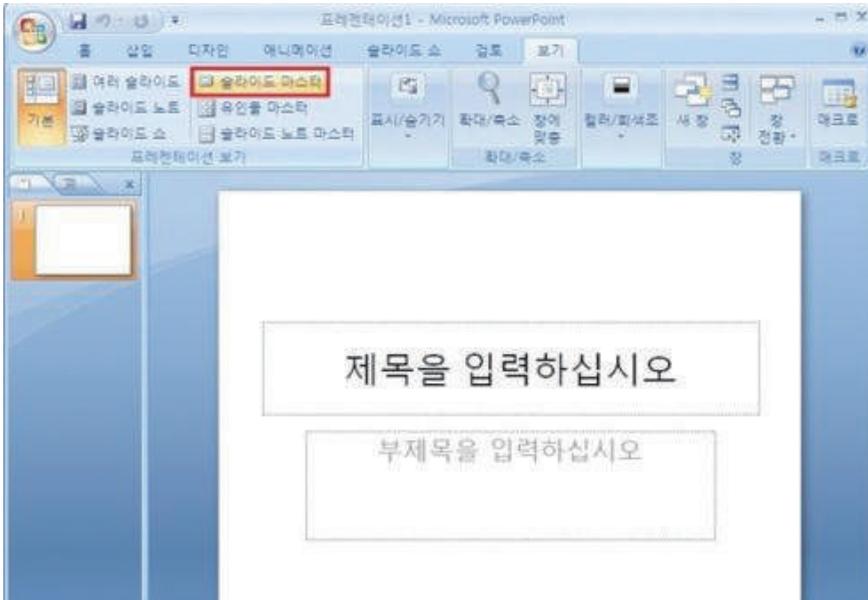
〈유튜브 영상을 스마트폰 모양의 틀에 삽입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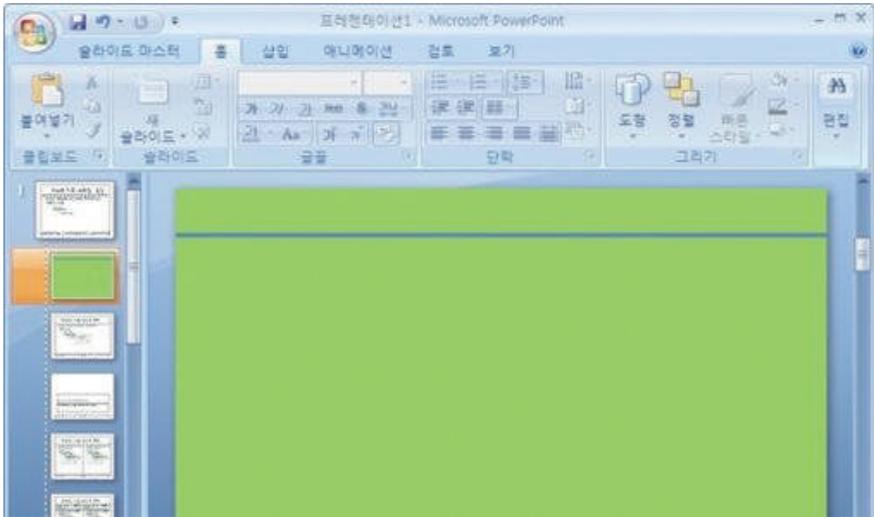
##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하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는 텍스트 스타일, 배경, 색 테마 등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저장해 놓는 서식 파일의 일부이다.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때 반복되는 레이아웃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 서식파일로 저장해 두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필요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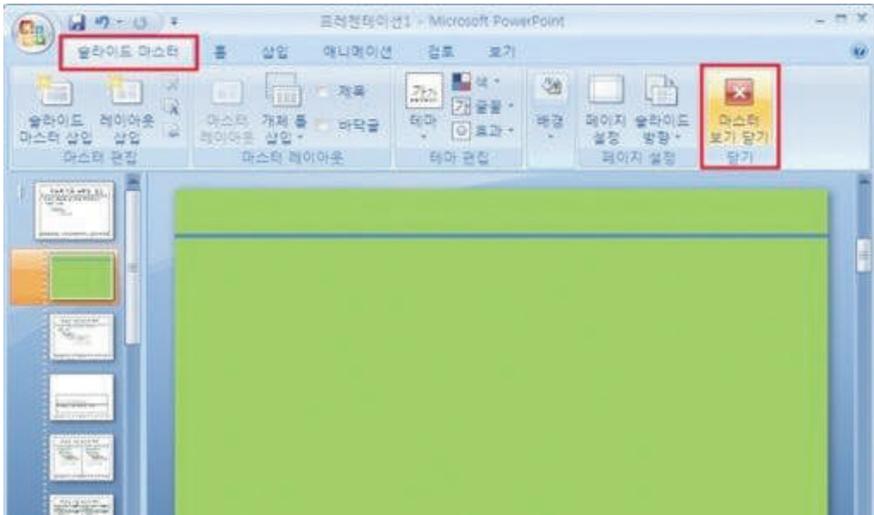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기] 탭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여 마스터 디자인 창을 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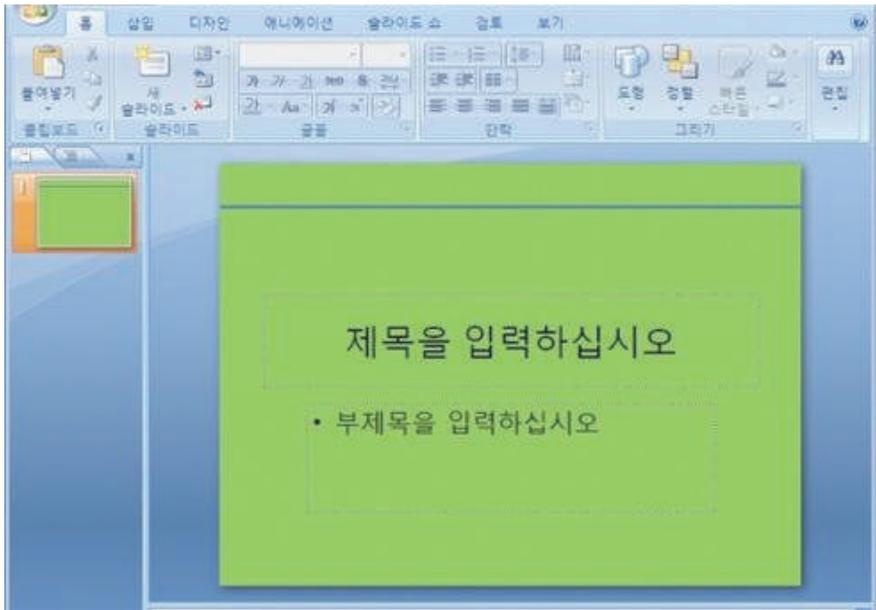


다음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레이아웃을 선택하여 배경색, 글꼴 등을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된 스타일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슬라이드에 적용되어 매우 편리하다. 아래 그림들은 배경색과 제목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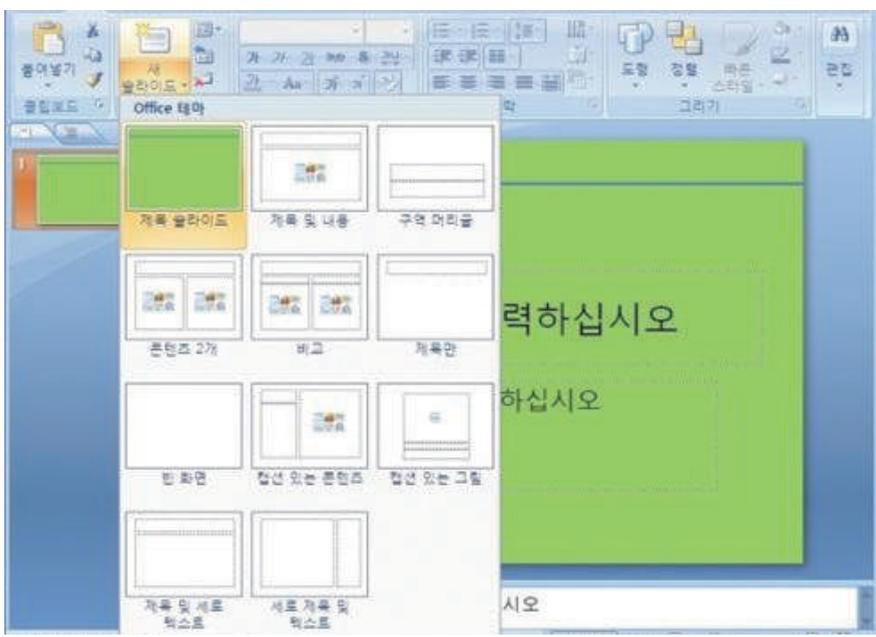


마스터 디자인을 변경한 후에는 [마스터보기 닫기]를 클릭하여 원래의 슬라이드 작성 화면으로 돌아온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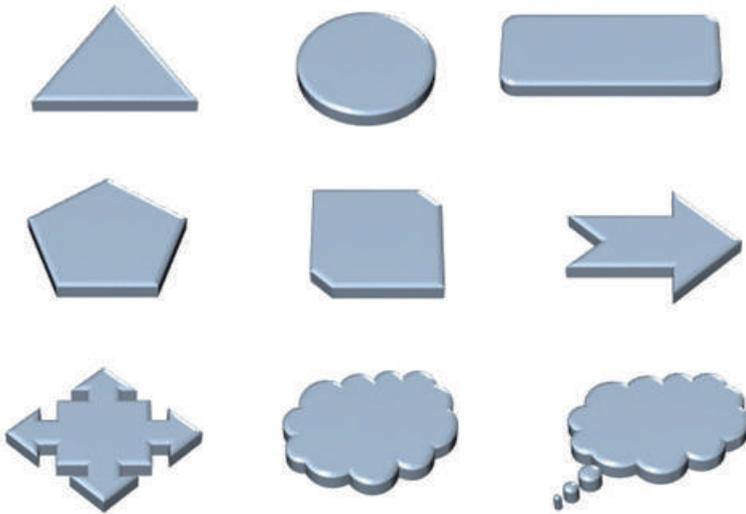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마스터를 선택하여 변경 가능〉

#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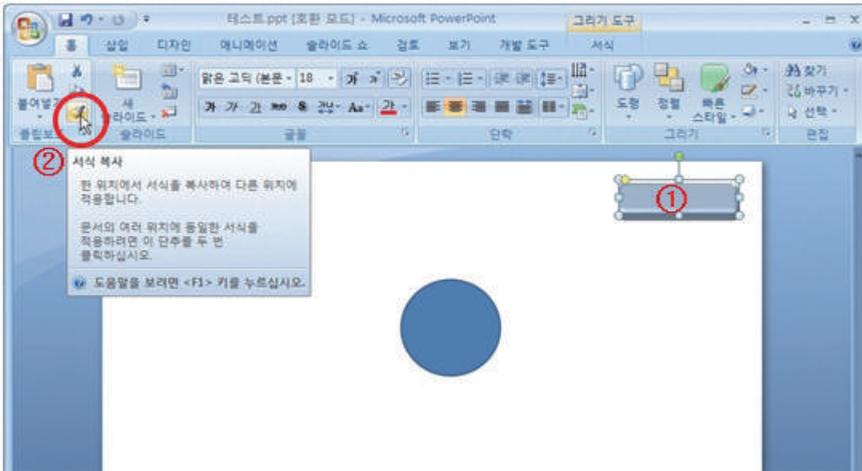
## 편리한 서식 복사 기능 활용하기

서식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반복되는 작업을 빠르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복사되는 속성은 글꼴 스타일, 색과 선 스타일, 도형효과 등이 모두 복사되므로 같은 스타일의 텍스트, 도형 등을 반복해서 만들 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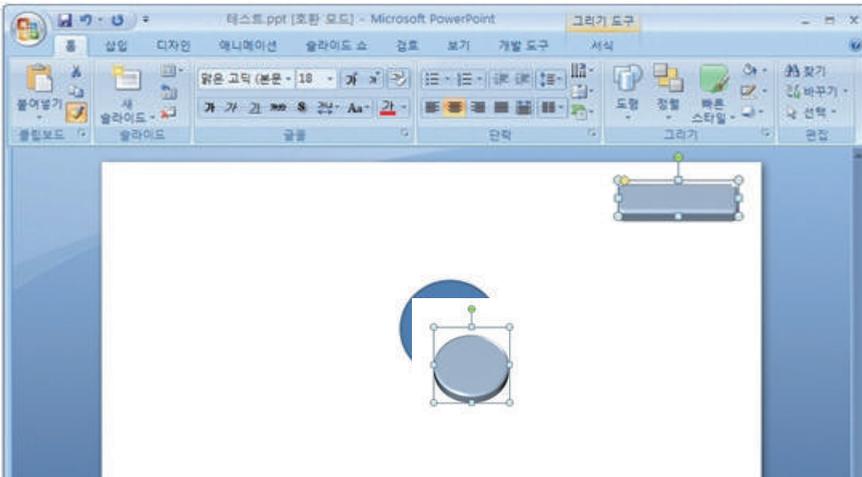


〈서식복사 기능으로 여러 도형에 한번에 같은 디자인을 적용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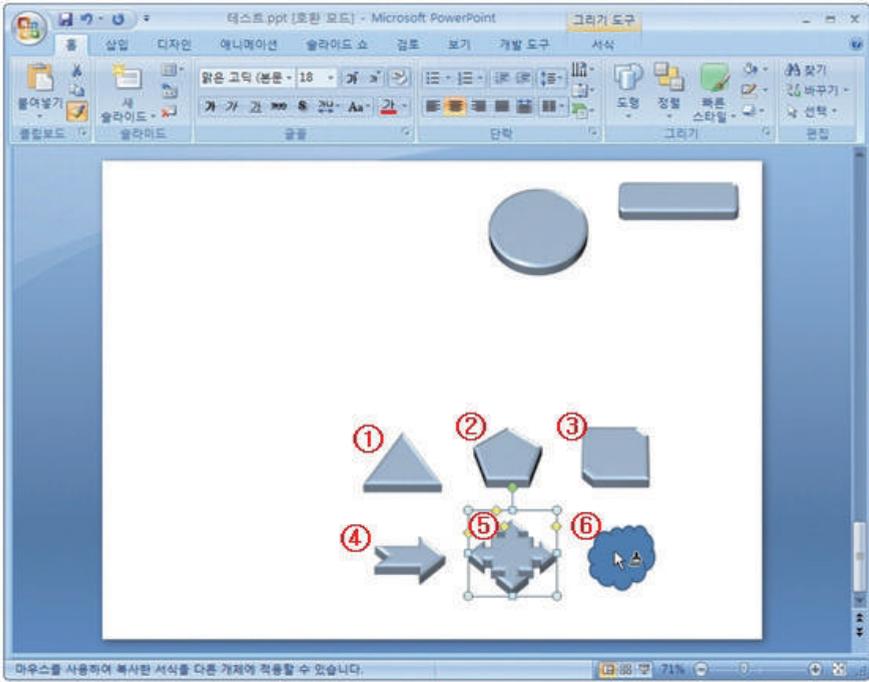
위의 도형들은 하나의 도형에 적용된 서식을 [서식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1번과 같이 디자인된 도형의 스타일을 복사하여 화면가운데 원에 적용할 수 있다. 1번 도형을 선택한 후, 붓모양의 [서식복사]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동일하게 변경할 도형(여기서는 가운데의 원)을 클릭하면 된다. 매우 간단하지만 쓸모가 많은 기능이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도형에 스타일을 반복해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 VII

## 결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능력과 아이디어이다. 테크닉은 누구라도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테크닉을 강의주제와 내용에 맞도록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구성하고 제작하는 분석능력은 쉽게 습득이 되지 않는 능력이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이자 기술이다.



### 참고 문헌

[www.slideshare.net](http://www.slideshare.net)  
[www.google.com](http://www.google.com)  
[jeonsango.tistory.com](http://jeonsango.tistory.com)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5장  
총정리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을 위한 통합교재 이해와 자기평가 및 자기성찰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제15장\_총정리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을 위한 통합교재 이해와 자기평가 및 자기성찰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한 개인의 실체와 이미지는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실체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근원적인 내형을 모두 포함하는 본질이고, 이미지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느낌, 심상, 인상이다.

헤어스타일, 화장, 성형수술, 패션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현적인 실체, 개인의 기질, 경험을 통한 지식과 대인관계에 따른 성격과 같은 내현적인 실체가 모두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 한 사람의 실체와 이미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라는 이미지가 장애인이라는 실체보다 먼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부여하거나 다름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장애인’은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인은 인권에 기반하여 동등한 인격체라는 실체를 말하고, 비장애인은 낮은 위치성에 기반하여 동정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장애인의 실체라 믿는다.

필자도 장애인의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장애인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장애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존재론적 가치에 따라 장애에 대한 실체와 이미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집의 가족구성원을 “부-모-자”로 볼 것인지, “부-모-장애인”으로 볼 것인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가족구성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구성된 장애이미지의 오류로 인하여 장애 자녀를 돕는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는 사회적으로 명명된 것이라 일컫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지화된 사고를 실체에 부여하면서 편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진(眞) 개념을 알리고,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나가는 소통의 과정이다. 내재적 동인을 변화시켜 머리와 가슴 모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함, 불쌍함이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였던 인식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이라는 매개물로 소통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장애인은 무능력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각기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회적 지원을 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 칭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장애인도 필요한 지원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동정에 몰입되어 있는 장애 이미지를 인권적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사회는 인식개선을 위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본 교재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다른 것처럼 장애인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교재 전반부에는 인식개선 강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 후반부에는 강사로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을 위한 통합교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을 위한 통합교재는 총 15장으로 1부는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 2부는 강사로서의 자질함양, 3부는 실천적 강의 스킬 및 시연으로 구성되었다.

1부 이론적 배경에 포함된 내용은 장애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 장애유형별 이해, 관련 법률, 장애인의 삶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과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정체성이다.

1장은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기본적 가치함양을 위한 인권의 개념, 인권의 원칙, 인권의 영역과 내용, 인권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시작점에서 강사에게 “장애”를 인권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해 줄 수 있다.

2, 3장에서는 장애를 바로 알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조기기 및 매너와 생활 속에 대중이 알고 있는 장애인을 살펴보았다. 강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정보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간접경험을 제시해 줄 수 있다.

4장에서는 장애를 학(學)으로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권익 옹호, 역량강화, 자기결정권을 알아보았다. 장애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통해 강사는 장애 개념에 대한 바른 지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5장은 장애인 관련 법률을 바로 알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과정과 관련 법제를 포괄하여 설명하였다.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의 대리옹호의 한 방향으로 강사는 법률과 같은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함양해야 한다.

6장은 편견이나 차별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강사는 노동, 교육, 일상생활, 행정·사법, 학대 등을 주제로 인권침해 사례 제시와 국가인권위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7장은 장애 감수성과 장애인정체성을 장애인 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인권의 바이블로서 장애인의 존재론적 가치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 강사가 비장애인일 경우 감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2부의 자질함양 부분에서는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자질을 살펴본다. 3부는 강사로서 필요한 기술인 교육방법에 대한 이해,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구성방법과 사전 시연과 평가 과정을 다룬다.

9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의 개념, 성취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 참여자의 발달 단계를 알아보고, 교육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다.

10장에서는 좋은 수업과 강사의 태도 및 준비과정, 실제 교육과정의 단계별 내용, 강의 점검내용 등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의 실천적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1장과 12장에서는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표정, 태도, 말투, 용모에 대한 정보와 교육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방법을 안내하였다. 강사와 교육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13장과 14장은 글꼴, 색감, 이미지, 텍스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구성 및 클라우드 사이트 안내 등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PPT를 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15장은 총정리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을 위한 통합교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공감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교육내용과 과정을 성찰하기 위한 방법과 일지작성을 안내한다.

부록에서는 교안샘플과 강의평가지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통해 강사 스스로 교안을 작성하여 피드백을 받고, 평가위원단으로부터 강의 평가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사전 시연을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통합교재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와 장애인 당사자의 연결고리로서 사명감과 책무성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옹호가로 비계(scaffolding)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가 되기 위한 자기평가와 자기성찰

장애인식을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머리와 가슴으로 모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인식개선 교육을 몇 시간동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실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 과정에 참여하며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는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사회구성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는 장애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실제 변화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는 끊임없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진심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본 교재 말미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의 자기성찰을 위하여 공감과 반성적 사고를 안내하고자 한다.

### 01 / 공감(Empathy)

일상에서 우리는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내가 아닌 타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단지 타인의 행동, 관계를 통해 짐작할 내 생각에 이리이러할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겉으로는 공감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각하는 세상을 오롯하게 인식할 수 없다.

“공감(empathy)”은 미학심리학자인 비쉴(Vischer)가 독일어 ‘Einfühlen’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ein(안에)’과 ‘fühlen(느낀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들어가서 느끼

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영어표기는 티치너(Tichner)가 희랍어인 'empathia'로 번역하면서 "Empathy"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의미도 유사하게 'en(안)과 'pathos(고통/열정)의 합성어로 '안에서 느끼는 고통과 열정'을 뜻한다(박성희, 2010).

공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공감하는 과정에 놓여있는 것이지 진심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감학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감은 도덕성에 기초한다.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일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게 되었다. 첫째, 도덕적 행동은 전염성이 있다. 타인의 도덕적 행동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도덕적 행동과 타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타인의 도덕적 행동과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은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성찰 없이는 도덕적 행동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도덕적 행동을 실행할 실질적 확률은 개인의 종교나 정치적 취향과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타인의 좋은 행동은 나의 행복지수를 올리지만, 내가 직접 시현한 도덕적 행동은 내 삶에 목표의식을 만들어준다(김대식, 2015).

도덕적 행동의 기원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타인을 인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장애를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라 아니라 여럿일 때, 종교나 정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직접 관입되어 있을 때 장애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교육을 넘어서서 장애에 대한 정체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변화를 위해 이러한 이론과 실제 삶을 매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것과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는 그 과정에 깊이 관여된 사람으로서 타인의 도덕적 행동과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주제인 성찰과정이 필요하다.

## 02 /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

Dewey는 사고를 수준에 따라 단순하게 떠오르는 사고, 상상, 근거에 따른 믿음을 통한 사고로 높은 수준의 사고로 구별하였다. 반성적 사고(reflection thinking)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로 ‘어떤 믿음이나 지식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으로, 반성적 사고가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라 하였다(서재천, 2016에서 재인용). 장애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장애라는 개념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을 통해 근거에 기반 한 이론을 통해 재해석하여, 장애와 관련된 이론이나 지식 체계를 현실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Dewey(1916)는 “이론은 실천에서 파생되며 실천에 적용되는 한에서 가치를 가지며, 이론과 실천의 괴리는 사회적 계층분열을 반영하고 영속시킨다”고 하였다(Dewey, 1916/2012, p. 11-13). 어원적 의미로 이론(theory)은 희랍어로 theoria로 ‘보는 것/아는 것’이고, 실천(practice)은 praxis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행하는 것’이다. 또, Dewey(1916)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사회적 계층분열을 반영하며 그것을 영속시킨다”고 하였다. 위의 두 문장은 이론과 실재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회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론과 실천이 상호 연결되어,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는 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적용하면 ‘강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교육 참여자가 이해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사라지도록 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성적 사고는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등, 딜레마 과정을 통해 얻게 된다. 반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대로 성찰을 통한 반성 없이 기술주의나 전문주의로 실천만을 강조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 중의 앎(knowing in practice), 실천의 앎(knowing of practice)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본 교재에서 반성적 사고를 다루는 이유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의 전달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실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인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하드웨어가 탑재되더라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변화가 발생하는 소프트웨어가 가동되어야 이론과 실천이 가치로올 수 있다. 즉, 제도라는 하드웨어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의 사고가 편견과 차별을 깨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가동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이라는 소프트웨어는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 서로가 생각, 마음, 몸 모두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장애 유형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강사는 공감하는 자세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장애에 대한 이론 따로, 실천 따로 괴리된다면 Dewey의 말처럼 사회는 장애인 사회와 비장애인 사회로 분열되어 지속되는 일이 발생한다.

Dewey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살펴보면 5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Dewey, 1910/2011). 첫째, 어려움을 느끼기, 둘째, 문제를 한 지점에 위치시키고 정의하기, 셋째,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넷째, 그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논증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관찰하고 실험하여 제안된 것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은 것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장애 인식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머리와 가슴으로 모두 느끼면서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며 예측된 결과의 실행여부를 보는 것이다.

공감과 반성적 사고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의 가족은 일상의 삶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차별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감정적인 동정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감을 통해 인권이라는 가치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은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장애에 대한 이해, 인권, 법률이라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실천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성찰일지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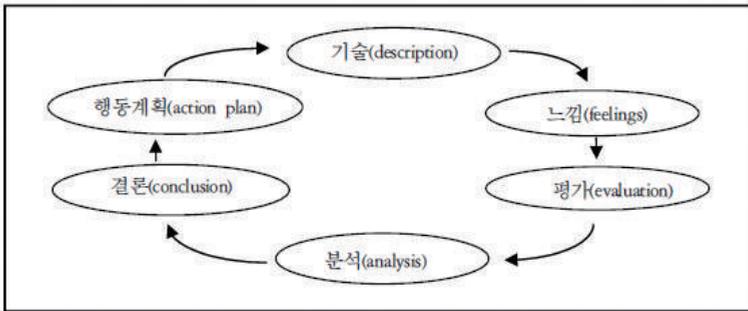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처럼 교육에 한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러 차별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차별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차별은 사회나 주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당사자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차별, 큰 차별은 없다.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행하도록 제도와 하였다(장애인복지법, 2015).

기존에 행해 온 장애인 인권이나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권 안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시간을 때우는 형식,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특정사안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과잉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왔다고 지적되었다(유영복, 2015).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위와 같은 오류를 개선하고 형식이 아닌 사회변화를 위하여 반성적 사고에 기반 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자기성찰을 위하여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후 자신의 서비스를 반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도 자신의 소통과정을 돌아볼 수 있다.

Boud(2001)는 실천가들이 반성적 실천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정한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을 제안할 수 있지만, 반성적 실천의 전체 과정과 기록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성적 실천 과정은 Gibbs의 모형에 따라 성찰일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특성에 맞는 질문을 구분하였고(Moon, 2004), 모형과 단계별 질문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반성적 실천과정(Gibbs's reflective cycle: Gibbs, 1988)

출처 : 최옥채 · 유영준 · 옹호중 (2014).  
 유동적 사회에 대응하는 성찰적 사회복지실천 교육론: 성찰일지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표 1〉 성찰일지의 주요 단계별 핵심질문

반성적 실천과정	주요 질문
기술 (descri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장소, 관련된 인물, 실천의 내용과 사건의 맥락, 실천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li> </ul>
느낌 (fee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건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어떠한가?</li> <li>•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했는가? (감정들의 목록)</li> </ul>
평가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시도하였나? (의도하였는가?)</li> <li>• 실천과정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었나? (의도한 것과 결과의 차이점)</li> <li>• 결과적으로 무엇이 잘 되었으며, 내가 성공적으로 한 일들은 무엇인가?</li> </ul>
분석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li> <li>• 성공여부에 기여한 점들이 무엇이었나?</li> <li>•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li> <li>•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의사결정의 경우 지식의 근거들)</li> </ul>
결과 (co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li> <li>• 어떤 대안들이 가능했었는가?</li> </ul>
계획 (action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li> <li>• 앞으로 나의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li> </ul>

출처: 최옥채 · 유영준 · 옹호중 (2014에서 재인용).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기 보다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중간자적 역할을 해야 하기에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 자료를 교육 참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강사로서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이후에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과정을 막연히 떠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성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찰 일지〉

내 용	
교육일시 및 장소	0000년 00월 00일 00시 ~ 00시 00 초등학교
교육참여자	0학년 00명
교육 내용	도입 인사 나누기, 주의 집중하기
	전개 활용한 교안의 주요 내용
	마무리 인사 나누기, 교육 내용 요약하기
반성적 실천과정	주요내용 교육과정에서 강사, 교육 참여자에 대한 good/bad 반응, 장소나 환경의 영향에 대한 사실적 기록
	느낌 주요 내용에 대한 강사의 생각과 느낌, 정서 기록
	평가 강사가 지각하는 교육참여자의 몰입이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기록
	분석 강사가 인식하는 교육에 대한 의미 기록
	결과 강사가 생각하는 교육 결과와 향후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 기록
계획 반성적 실천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내용 기록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교육 강사는 교육 이후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개인내적으로는 자성적 슈퍼비전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이론을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실제 장애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대식 (2015). *이상한 나라의 뇌과학*. 경기: 문학동네.  
 박성희 (2010). *공감학*. 서울: 학지사.  
 서재천 (2016).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 관한 일 고찰. *교육논총*, 53(1), 1-27.  
 유영복 (2015).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 인권강사가 바라는 장애인인권교육. 2015년 활동보고회 자료집(pp. 91-96).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  
 Boud, D. (2001). Using journal writing to enhance reflective practice.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90, 9-18.  
 Dewey, J. (2011). *하우 위 싱크* (정희욱 역). 서울: 학지사.  
 Dewey, J. (2012). *민주주의와 교육* (이흥우 역). 경기: 교육과학사. (원서출판 1916).  
 Moon, J. A. (2013). *A Handbook of Reflective and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Y: Routledge.

## 부록

- **직접 교안을 제작해 시연 및 피드백**  
황정현 (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 **평가위원단을 통한 강의 실습 및 평가**  
최혜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 한국장애인재단 소개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편찬에 힘써주신 분들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 단체 소개

## 부록 01 / 나의 강의 점검표

<input type="checkbox"/>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학습자에 대해 조사한다.
<input type="checkbox"/>	강의를 위해 교안을 작성한다.
<input type="checkbox"/>	강의 시 사용하기 편리하게 교안을 작성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미리 강의 연습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강의 연습을 할 때 녹음을 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의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강의 시 몸이 굳어 있거나 강단에 기대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쓴다.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와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input type="checkbox"/>	학습자들 앞에서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강의 시 목소리는 떨리거나 더듬지 않고 안정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상황에 따라 음성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강의를 하는 동안 학습자의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학습내용의 전달과 정리를 위해 시각자료를 이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시각자료는 단순하고 읽기 쉽고 효과적이다.
<input type="checkbox"/>	강의의 속도와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정해진 강의 시간을 지킨다.

## 부 록 0 2 / 피 드 백 기 록 표

영역	항 목	
언어적 표현	<input type="checkbox"/>	발음이 정확한가?
	<input type="checkbox"/>	말하는 속도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강약을 잘 구사하는가?
얼굴 표정	<input type="checkbox"/>	얼굴 표정은 부드러운가?
	<input type="checkbox"/>	미소를 띄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모든 학습자를 골고루 둘러보는가?
	<input type="checkbox"/>	시선은 자료와 학습자에게만 주고 있는가?
몸동작	<input type="checkbox"/>	자세는 바른가?
	<input type="checkbox"/>	몸동작이 자연스럽게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긴장하기 않고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가?
강의 진행	<input type="checkbox"/>	강의에 열의가 느껴지는가?
	<input type="checkbox"/>	강의 속도와 흐름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강의 시간 조절은 잘 하고 있는가?
강의 구성	<input type="checkbox"/>	강의에 시작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강의에 끝맺음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강의에 숨 돌릴 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강의가 호기심을 유도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부각되는가?

부록 0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자료(초등학생 대상)

	초저-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스페셜올림픽 어울림교육 프로그램(초등 저학년) <b>Lesson 1. 님은 우리, 또 다른 우리</b> <b>1차시 교수학습·과정안 [다른 모습과 틀린 모습 알기]</b>
---	----------------------------	---

관련교과	도덕, 사회	대상	통합 또는 일반학급
학습주제	다른 모습과 틀린 모습 알기	소요시간	40분
학습목표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틀린 모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학습 단계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 동기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옆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친구와 내가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li> <li>-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알아보자.</li> </ul> <p>☐ 학습문제 파악하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틀린 모습의 차이를 알 수 있다.</div>	5'	<p>◆ PPT자료</p> <p>◆ 학습문제 게시</p>
전개	<p>☐ 학습 활동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안내한다.</li> </ul> <p>&lt;활동 1&gt; 미운 아기오리 동화 보기 &lt;활동 2&gt; 활동지를 통하여 서로 다른 것 찾기</p> <p>☐ &lt;활동 1&gt; 미운 아기오리 동화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운아기오리 동화를 읽어 봅시다. (www.naver.com - 주니어네이버 - 미운아기오리)</li> <li>- 동화를 읽으며 생각해봅시다.</li> <li>- 아기오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li> <li>- 미운아기오리와 다른 가족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li> <li>- 외모가 다르고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미운아기오리처럼 미워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li> <li>- 미운아기 오리의 외모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은 틀린 행동일까요?</li> </ul> <p>☐ &lt;활동 2&gt; 활동지를 통하여 서로 다른 것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를 통하여 서로 다른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li> <li>- 우리 주변에 내가 미워했던 친구가 있는지 알아봅시다.</li> <li>- 누구나 조금 잘하는 것이 있고 조금 못하는 것이 있는데 찾아봅시다.</li> </ul>	30'	<p>◆ 학습활동 안내 게시</p> <p>◆ <a href="http://study.ir.naver.com/donghwa/view.nhn?donghwaNo=1105&amp;categoryId=2">http://study.ir.naver.com/donghwa/view.nhn?donghwaNo=1105&amp;categoryId=2</a></p> <p>◆ 동화시청하기</p> <p>◆ 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li> <li>- 다리를 다쳐서 잘 걷지 못하는 친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li> <li>-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행동은 틀린 행동이 아니므로 다른 친구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주변의 사례를 더 들어 줄 수 있다.</li> </ul>
정리	<p>▶ <b>학습정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미운아기오리 동화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일까요?</li> <li>- 나와 다른 친구를 만나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li> <li>-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고 나와 조금 다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li> </ul> <p>▶ <b>과제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관련 다문화 이해를 위한 과제로 학년특색인 중국어 교육 관련 중국문화 중 하나인 등 만들기와 세계전통의상 종이접기 자료를 위한 준비물을 선생님이 배부하겠습니다. 예쁜 등과 전통의상을 만들어 오도록 합시다.</li> </ul> <p>▶ <b>차시예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시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 자료</li> <li>◆ 무늬 없는 흰 등, 세계전통 의상 종이 접기 재료, 색연필, 사인펜, 물감 등</li> </ul>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지식	서로 다른 것과 서로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관찰	수업 중
이해	미운아기오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가?	관찰	수업 중
태도	자신과 다른 친구를 대할 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가?	관찰, 자기 평가	수업 중

자료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이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 장애이해교육 | 어울림 프로그램 <http://edu.nise.go.kr/jsp/lesionsee>

부록 0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자료(고등학생 대상)

	고등-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스페셜올림픽 어울림교육 프로그램(고등학교) <b>Lesson 1. 도전이런?</b> <b>1차시 교수학습·과정안 [평등한 권리 인식]</b>
---	------------------------	--

교과	사회과	대상	고등부	지도 교사	
학습 주제	평등한 권리 인식			차시	1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과 선입견 등 부정적인 견해에 관한 인식개선</li> <li>🔴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가치</li> </ul>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input type="checkbox"/> 동기부여 ‘저능아(바보)’에 대한 자신의 경험 말하기 편협한 행동, 차별, 선입견에 대해 토의하기	10분	
전개		<input type="checkbox"/> 교육내용 - 스페셜 올림픽 관련 영상 시청하기( <a href="http://www.specialolympics.org">http://www.specialolympics.org</a> ) - 소에런 팔럼보(Soeren Palumbo)의 연설을 통해 편견과 선입견의 병폐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학습 ( <a href="http://www.specialolympics.org/video.aspx?id=6066&amp;terms=soeren+palumbo">http://www.specialolympics.org/video.aspx?id=6066&amp;terms=soeren+palumbo</a> ) -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함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와 책임, 해결책에 대한 토의 -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 학생들이 편협한 행동이나 차별의 피해자, 목격자 혹은 가해자였던 때를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 학교와, 공동체에 선입견과 편협이 존재한다고 말하겠는가? •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협함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 학교와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 편협과 선입견이 역사를 뒤흔들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 역사를 변화시킨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했나? • 사람들이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차별 받거나 홀대 당했나? • 이 사건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나? • 이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30분	- 동영상 - 멀티미디어 기자재   - 색인카드 - 필기도구 - 활동소품

	<p>- 소애런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다음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p> <p>‘그 십대들이 올리비아와 모르는 사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이 왜 올리비아를 조롱했다고 생각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의 영향</li> <li>• 불안감</li> <li>• 공포심</li> <li>• 낯설음</li> <li>• 무지</li> <li>• 경쟁심</li> <li>• 편안함에 대한 욕구</li> <li>• 교육의 부족</li> </ul> <p>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p> <p>- 전반적으로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함이나 선입견에 대한 문제와 책임, 해결책에 대해 토론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li> <li>• 학생들은 자기들이 문제의 일부라기보다 해결책의 일부라 된다고 생각하는가?</li> </ul> <p>- 모듬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자기 세대들의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이 좀 더 포용력이 넓어지도록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li> <li>• 예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li> </ul> <p>- 테리 폭스(<a href="http://www.terryfox.org">http://www.terryfox.org</a>)에 대해 연구하고 어떻게 이 젊은이가 활동과 참여의 모델이 되었으며 어떻게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묘사하는 잡지나 신문 기사를 쓰도록 독려한다.</p> <p>- 뉴욕의 평범한 학생으로 힘들고 보잘것없이 시작하여 세계적인 명사의 반열에 오른 스페셜올림픽 선수 로레타 클레이본에 대해 배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레이본 선수의 이야기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훌륭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 나중에 보호시설에서 지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스페셜올림픽 이후, 그녀는 장거리 육상선수가 되었고 그 이후로 뛰기를 멈추지 않았다. 선수 경력 동안 그녀는 25회에 걸친 마라톤 경기를 소화했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두 번이나 100위 안에 입상했다. 여성 스포츠인 명예의 전당에</li> </ul>	
--	---	--

		<p>그녀의 이름이 올랐고 세계 육상 잡지는 그녀를 4반세기 만의 선수로 선정했다. 클레이본은 4개 국어를 할 줄 알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적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안은 영예였다. 그녀의 생애는 디즈니 영화 &lt;로레타 클레이본 스토리&gt;로 만들어졌으며, 1996년에 그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아더애쉬상을 수상했다. <a href="http://www.lorettaclaiborne.com">http://www.lorettaclaiborne.com</a></p> <p><b>□ 중점지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권리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결론 내린다.</li> <li>- 옳은 것, 특히 친구의 편에 서는 것이 주는 어려움에 대해 고찰한다.</li> <li>- 학교, 공동체 및 사회 전체적으로 현재와 과거의 배타적이고 편협한 행동을 확인하고 깊이 검토한다.</li> <li>- 배타적이고 편협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li> <li>- 편협한 행동을 해결하는 법을 인식한다.</li> <li>- 지적 장애인에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li> </ul>		
정리		<p><b>□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견과 선입견의 병폐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개선되었는가?</li> <li>-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함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와 책임, 해결책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가?</li> <li>- 장애인들에 대한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는가?</li> </ul> <p><b>□ 정리하기 및 차시예고</b></p>	10분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이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 장애이해교육 | 어울림 프로그램 <http://edu.nise.go.kr/jsp/lesionsee>

## 부록 05 / 장애인 인식개선 공동 수업안

## 장애학생 인정하기

장애인 인식개선 공동수업 지도안	
앞서	수업안에 제시된 기승전결의 단계는 흐름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각 단계를 한 차시의 수업으로 전개해도 좋으며 전체를 한 차시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담당선생님께서 보시고 첨삭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기	<b>다름 인식하기; 도형그리기</b> - 교사가 똑같이 불러주는 도형(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 - 학생들 모두가 다른 형태의 조합된 도형을 그린 것을 서로 비교하여 각 개인에게는 저마다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장애도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임을 설명한다.
승	<b>장애인의 특성 찾기</b> (학교에 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다면,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지도 교사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수업전개에 함께 참여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 장애인이 지니는 특성 중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한다. - 여러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러한 장애들이 장애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 해 본다.
전	<b>겪어보고 이야기하기; 모둠활동하기</b> - 모둠별로 선택한 상황극의 설정처럼 충분히 그 입장이 되어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 각 모둠별로 상황에 따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모둠의 토의결과를 발표한다. - 전체 모둠의 각각 다른 상황들을 들어보고, 더 논의가 필요한 토론거리를 찾아 전체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한다. ( '병기', '민성', '상수' 의 상황에 따른 추가 토론이 가능하다.)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전체토론으로 붙여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펼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토론 분위기를 유도한다.)
결	<b>정리하기</b> - 활동자료 '문장찾기 퍼즐' 을 이용해 장애학생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재확인한다. - 읽기자료를 읽으면서 활동을 정리한다.
비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시나리오> 참조

## 장애인 인식개선 수업안(시나리오)

### I. 다름 인식하기(起)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다른 점이 존재함을 인식한다.  
→ 준비물: 백지 1장, 연필

도 형 그 리 기	장애의 개념을 안다.	(백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오늘은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나눠준 종이에다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을 그려 보세요” 교사는 천천히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를 불러준다. (각 도형들을 다 그린 다음에 다음도형을 불러주도록 한다.)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네모를 그려보세요.” 하고 모두 그리면 서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들어보이게 한다. 교사는 몇몇 다른 형태를 지적하며 소개한다. “보세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른 형태의 도형을 그렸어요.” “선생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크기, 다른 구도와 모양으로 그렸지요, 왜 그랬을까요?”  <b>학생들 대답</b> “네,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남과는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시인데도 다른 모양을 그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농구를 잘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글을 아주 잘 쓰는 친구도 있어요.” “다들 서로서로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고, 세상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능력에 있어서만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차이가 있듯이, 차이는 다름일 뿐 틀린 것은 아니예요.”
-----------------------	-------------------	---

### II. 장애의 특성 찾아보기(承)

여러 능력의 장애인을 소개하고 그 특성을 차이로서 이해한다.  
→ 준비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수화영상이나 점자, 혹은 맹인안내견, 휠체어나 의수족  
등의 사진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특 성 찾 기	장애인 지니는 차이와 특성을 알아 본다.	“그렇다면 장애인에는 어떤 어떤 장애인이 있을까요?”  <b>학생들 대답: #\$\$%^#@%#</b>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듣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또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인 등이 있어요.” “또 다른 장애인이 있을까요?”  <b>학생들 대답</b>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정서장애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	---------------------------------------	--

특 성 찾 기	<p><b>장애인이 지니는 차이와 특성을 알아 본다.</b></p>
------------------	---------------------------------------

**학생들 대답**  
 (교사는 몇몇 학생들을 발표를 시켜보고 자세한 특성들을 알려준다.)  
 [시각장애인: 책을 읽는 능력, 길을 건너는 능력, 식사를 할 때의 골라먹는 능력, 지도를 보는 능력...]  
 ▷ 점자나 안내견의 도움으로 해결 (또는 장애를 해소) 할 수 있음  
 [청각장애인: 노래하는 능력,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 대화를 하거나 귓속말을 하는 능력,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 보청기나 수화, 구화를 익혀 해결 (또는 장애를 해소) 할 수 있음  
 [지체장애인: 외출하는 능력, 몇 가지 운동능력, 달아나는 능력...]  
 ▷ 휠체어나 의족 등으로 해결 (또는 장애를 해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능력,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  
 ▷ 더 자세하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해결 (또는 장애를 해소) 할 수 있음  
 [정서장애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기분을 추측하는 능력,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능력...]  
 ▷ 칭찬과 격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의 훈련으로 해결 (또는 장애를 해소) 할 수 있음

(교사는 각 장애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에, 듣고 말하지 못하기에, 아이큐가 낮기 때문에 그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기에, 대화가 곤란하기에, 학습하는데 조금 더 느리기에 장애인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 III. 꺾어보고 이야기하기(轉)

장애인의 역할이 되어 토론하여 보고 장애인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 준비물: 활동자료 ‘상황극 쪽지’, 기록지(처음에 사용했던 도형그리기 백지 사용가능),  
 (상으로 줄 사탕이나 abc초콜렛)

상 황 되 어 보 기	<p>장애인이 지니는 차이와 특성을 알아 본다.</p>
----------------------------	--------------------------------

“자 그러면 모둠별로 한명씩 나와서 여기 있는 쪽지를 뽑도록 하세요.”  
 (각 쪽지에는 각기 다른 상황설정과 토의과제가 적혀있다.)  
 “모둠별로 가져간 쪽지에는 간단한 상황과 토의과제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제별로 토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모둠별 토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교환되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사탕이나 abc초콜렛 등을 준비해 가장 잘 발표한 모둠에는 상으로 주겠다는 등의 방법을 써서 토의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발표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다.)  
 “여러분 모둠토의를 마쳤으면 이제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대표가 자기 모둠의 상황을 큰소리로 읽고 난 다음에 모둠원들의 토의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세요.”

**학생들 발표**  
 (교사는 각 모둠토의의 결과 발표를 다른 모둠원들도 잘 듣도록 정숙시키고, 칠판에 발표 내용들을 간단히 기록한다.)

[기분을 표현하는 말들: 슬프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외롭다, 가슴 아프다, 절망스럽다, 서럽다, 처량하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캄캄하다, 가엾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모욕당한 느낌이다, 가슴이 찢어진다, 혼자인 느낌이다, 허전하다, 좌절감을 느낀다, 안타깝다, 소외감을 느낀다, 속이 썩는다, 한스럽다]  
 “예, 잘 들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기분들이었지요?”

의견 공유하기	토의 결과를 공유하고	(교사는 다른 모둠과 다른 의견이 나온 모둠의 결과를 한 번 더 언급해주고, 특히 병기, 상수, 민성이의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한다.) [병기: 병기의 상황은 충분한 토론거리로 삼을 만 하다. 전체학생들에게도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각자가 병기의 입장이라면 다시 태어나겠는지, 아니면 환생을 포기할 것인지를 제시하게 하고 포기한다면 왜 그럴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도록 유도한다.]
	더 논의할 꺼리를 찾아 본다.	<b>학생들 발표</b> [상수: 상수가 더 위협적으로 변한다든가 문제행동이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 이유는 과연 상수 본인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 때문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고, 또 상수같은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해준다.] <b>학생들 발표</b> [민성: 민성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계속해서 박탈당하게 된다면 민성이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게 될 것이며, 학습자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b>학생들 발표</b> “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은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놀리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보다 싸움을 못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똑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비록 어떤 이가 나와는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편견을 버리고 누구와도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세요” 학생들 대답: (큰소리로) 예~

#### IV. 정리하기(結)

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 준비물: 활동자료 ‘숨은 문장 찾기’, 읽기자료 ‘엄마, 그건 바로 나였어요.’

문장 찾기 퍼즐 읽기 자료로 정리	장애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재확인 하고 정리 한다.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퍼즐 게임을 해보도록 해요.” “활동자료 중에 ‘숨은 문장 찾기’가 있지요? 거기에는 6개의 문장이 숨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숨어있나 한 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 ‘잘못해도 칭찬하며 격려해요’, ‘천천히 쉬운 말로 이야기해요’, ‘놀리지 않아요’, ‘길 잃은 친구를 도와주세요’, ‘힐끗힐끗 보지 않아요’, ‘먼저 인사해요’ ] “누가 제일 먼저 찾아 보겠습니다.” (6개를 먼저 찾은 학생은 손들게 하고, 5명 이상이 찾으면 그 중에서 한 두명이 6개의 문장을 읽도록 한다. 혹시 시간이 지나도 문장을 모두 찾지 못하면 4~5개의 문장을 찾은 학생부터 발표하게 하고 나머지 문장은 교사가 찾아서 읽어주도록 한다. ( ‘천천히 쉬운말로 이야기해요’ 는 대각선으로 배열되어 있음))
		<b>학생들 발표: (위의 숨은 문장)</b>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이야기를 읽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읽기자료 ‘엄마 그건 바로 나였어요’를 읽어주고 끝낸다. 이 자료는 교사가 읽어줄 수도 있고 유인물로 배부해 학생들이 읽게 할 수도 있다.)

## 상황극 - 토론자료

<b>상황</b>	해련이와 수진, 소영 셋이 정미를 보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해련 : 애들아, 정미 집이 많이 어렵다며? - 소영 : 어, 나도 얘기 들었어. 그래서 준비물 못 챙겨오는 경우가 많다더라. - 수진 : 어머 몰랐네... 어떻게 하니... 너무 안됐다... - 해련 : 그러게 말이야. 내가 다 사 줄 수도 없고... - 수진 : 너무 불쌍하다. - 정미 : (안 듣는척하고 태연하게 있지만, 다 듣고 있다.)
<b>토의과제</b>	여러분이 정미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b>상황</b>	병기는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게 되어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만났는데... - 옥황상제: 내가 너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겠다. - 병기: 옥황상제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 옥황상제: 너는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하지만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 병기: 예?
<b>토의과제</b>	여러분이 병기라면 어떤 마음이며, 또 어떻게 할까요?
<b>상황</b>	현주가 집에 가고 있는 길..... 어떤 아이들이 현주를 힐끔힐끔 보고 있다. - 현주 : (혼자생각) 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재들이 왜 쳐다보는 거지?(자신의 옷매무새를 살펴보며) 옷에 뭐가 묻었나? 아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나? 이상하다.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저렇게 힐끔힐끔 보는 거야?
<b>토의과제</b>	여러분이 현주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b>상황</b>	학교에서 상수는 집중도 못하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 자주 돌아다닌다. 이상한 과성을 지르기도 하여 지금까지 친구도 하나 없다. 쉬는 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상수 주변에 모여들어 흥내를 내며 놀린다. 그러면 상수는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험한 욕설도 한다. 이제는 놀리지 않던 아이들도 상수만 보면 멀리 피하고 수근덕거린다.
<b>토의과제</b>	앞으로 상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b>상황</b>	<p>소희는 색맹이다. 나영이와 소희, 근영이는 배낭을 메고 봄나들이를 갔다. 들판과 산숲마다 알록달록 봄꽃들이 만발하였는데...</p> <p>- 나영 : 아~ 정말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쁜 색이 있을까? - 근영 : 그러게 말야. - 나영 : 역시 꽃은 봄에 피는 게 가장 아름답다니까. 그렇지 소희야? - 소희 : .....</p>
<b>토의과제</b>	소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b>상황</b>	<p>민성이는 정신지체 학생으로 때로 학습도움반에서 공부를 한다. 국어시간이 되었다. 선생님은 민성이의 번호를 부르며,</p> <p>- 선생님 : 그래 니가 36쪽 한 번 읽어보자. - 인철 : 선생님! 민성이 학습도움반이에요.</p> <p>민성이는 그말을 듣고 혼자 생각했다. - 민성 : (나도 글은 읽을 수 있는데...)</p>
<b>토의과제</b>	여러분이 민성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숨은 문장 찾기 - 활동자료

발췌: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 2003.2.

### ♠♠ 느리게 배우는 우리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요?

하	막	강	마	환	장	니	탕	자	힐	사	잘
천	먼	저	인	사	해	요	하	언	끗	이	못
군	천	수	던	리	홍	콩	섭	만	힐	애	해
애	영	히	산	강	래	한	자	훈	끗	선	도
표	독	찬	쉬	끼	거	캥	여	우	보	명	칭
찰	하	나	한	운	고	말	지	늑	지	타	찬
늑	터	컹	룩	아	말	림	대	방	얹	살	하
허	컹	호	얼	훈	루	로	콧	크	아	장	며
터	겨	삼	래	를	머	국	이	멍	요	코	격
놀	리	지	얹	아	요	닭	표	야	터	마	려
노	구	어	고	령	지	고	국	암	기	컹	해
황	말	악	돌	범	송	지	던	펑	장	해	요
길	잃	은	친	구	를	도	와	주	세	요	요

---



---



---



---



---



---



---

## 엄마, 그건 바로 나였어요. - 읽기자료

미국 샌디에고 교외의 큰 저택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예요. 저 지금 돌아왔어요."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의 목소리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이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빌어 온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거렸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몹시 다쳤어요. 하지만 딱하게도 그 친구는 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무렴, 그래라. 당분간은 우리와 같이 살자꾸나. 지금 어디 있니. 빨리 오거라."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당분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친구와 떨어질 수 없다며 늘 함께 살겠다고 했다. 아들의 억지에 못 이긴 어머니는 할 수 없이 1년쯤 같이 살자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그 친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친구는 몹시 불쌍한 친구예요. 외눈에, 외팔에,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몇 년만의 통화였지만 성급한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했다.

"얘야, 너는 너무 감상적이구나. 넌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왔어. 그 친구는 결국 너의 짐이 될 거야."

"짐이 된다고요?" 아들은 어머니가 채 말을 잇기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다.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들의 연락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군 본부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왔다. 아들이 샌디에고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내용이였다.

집으로 아들의 시체가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그만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아들은 외눈에, 외팔에, 외다리였던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 장애는 남의 일이나 이웃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교육 최종 평가서

- 사업명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교육
- 일자 : 0000, 00, 00

평가자 :

평가내용		구분					교육생:					교육생:					교육생: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론 (25)	출석 및 교육 참여도	5	10	15	20	25	5	10	15	20	25	5	10	15	20	25	5	10	15	20	25
실기 (50)	주제 전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육내용 전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육자료 내용(PPT)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전체 발표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전체 교육 진행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용모단정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비언어적 능력 (제스처, 표정, 시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목소리 톤 조절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장애이해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교육마무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실습 (25)	교육참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총점(100)																					
Feedback																					

## 한국장애인재단 소개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는 다름입니다  
다름은 또 다른 힘입니다  
장애는 힘입니다



미션

사람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든다

비전

다름이 차별로 되지 않게, 가능성을 이어주는 한국장애인재단

주요원칙

장애감수성

투명성

진정성

현장성

전문성

**장애감수성** '장애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장애를 수용하며 존중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투명성** 공익재단으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합니다.

**진정성**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이 전달되는 진정성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성** 장애인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소통하며,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겠습니다.

**전문성** 전문 모금·배분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해 나가는 공익재단이 되겠습니다.

## 한국장애인재단 소개

한국장애인재단은 사람중심의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는, '다름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핵심목표

**Harmony**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Empowerment**  
장애인 삶의  
행복한 변화

**Raising donation**  
나눔 문화 확산과  
가치 공유

**Barrier free**  
장애인 자립기반  
환경 조성

### 윤리헌장

- 01 우리는 재단의 사명과 목표를 숙지하고 재단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02 우리는 시민의 자발적 기부에 기반하여 모금하며 기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기부자의 뜻을 존중한다.
- 03 우리는 배분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노력하며 배분대상자를 존중한다.
- 04 우리는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함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임직원 모두가 재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05 우리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다짐

- 하나.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하나. 나눔을 희망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하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 하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 하나.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편찬에 힘써주신 분들

### 1. 편찬위원

권 선 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이 채 식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이 인 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최 혜 영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센터장
성 명 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황 정 현	서울원효초등학교	특수교사
김 성 남	(주)샘스토리	대표이사
최 미 영	휴먼마인드연구소	대표
윤 삼 호	장애인지식정보 공동체	정책실장
이 석 구	유엔장애인인권권리 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 2. 감수위원

조 흥 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승 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 단체 소개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 ■ 1주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파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 2주제 : 당사자 참여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장애특성과 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1주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5단체)

- 단체명 : 사)한국장애인연맹(DPI)
- 사업명 :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단체명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업명 :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 단체명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 사업명 : 장애인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단체명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명 :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제도화 사업
- 단체명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업명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사업

### 2주제 : 당사자 참여 인식개선사업 (5단체)

- 단체명 :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업명 : 장애체험을 통한 지역사회인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단체명 :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업명 :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만들기 프로젝트 “다함께 차차차”
- 단체명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협회광명시지회
- 사업명 : 당사자참여 인식개선사업
- 단체명 :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 사업명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장애인인식개선 낭독회 “내 얘기를 들어 줄래?”
- 단체명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
- 사업명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과 공감지수 100℃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편찬일** 2016년 6월 17일 (2쇄)

**펴낸이** 이성규

**펴낸곳** (재)한국장애인재단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 (순화동, 바비영3)  
Tel\_ 02)6399-6233, 6234 Fax\_ 02)6399-6238  
E-mail\_ herbnanum@herbnanum.org  
<http://www.herbnanum.org>

**후원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5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Tel\_ 02)6262-3000 Fax\_ 02)6262-3180  
E-mail\_ webmaster@chest.or.kr  
<http://www.chest.or.kr>

**ISBN** 979-11-86957-04-2 (93330)

**인쇄처** 동아출판인쇄사 ☎ (055)246-7271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 친화적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1주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파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2주제 : 당사자 참여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장애특성과 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최:  한국장애인재단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www.herbnum.org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 통합교재

 한국장애인재단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 (순화동, 바비엡3)

Tel\_ 02)6399-6233, 6234 Fax\_ 02)6399-6238

E-mail\_ herbnum@herbnum.org

www.herbnum.org

